##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 • 통제에 관한 연구

김 도 승

## 재정법제 연구 11-15-(5)

##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 통제에 관한 연구

김 도 승

#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관리• 통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Mandatory Spending in the Public Finance Law

연구자 : 김도승(부연구위원)

Kim, Do-Seung
2011. 10. 31.

## 요 약 문

## I．배경 및 목적

$\square$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 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의무지출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
$\square$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
$\square$ 특히，의무지출은 정부에서 그 지출여부를 통제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므로 무분별한 확대시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주 요 위협 요인이 됨
$\square$ 이에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과 현황， 의무지출이 가지는 재정행정법적 함의를 살펴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의 관리•통제를 위한 제 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함

## ․ 주요 내용

$\square$ 「이자지출」과「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며，2011년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 \%$ (144조 8,761억원)
$\square$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의무지출사업 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적 개 선이 필요함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 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 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PAYGO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자와 흑자를 숨 가쁘게 넘나 들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재정준칙 혹은 규율의 일환 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제도로 알려져 있음

○ 80 년대 말까지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 정부는 재 정 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 으며, 그 중 재량지출의 상한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을 정 하였던 예산집행법은 대표적인 입법적 노력
$\square$ 기존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순 소득이전 목 적사업"이란 사업의 시행(단순히 현금 등의 지원)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되어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한 사업으로 한 정적 해석함이 바람직

## III. 기대효과

$\square$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 구체적 구분 기준, 의무지출 의 재정법적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학화. 객관 화를 위한 토대 마련
$\square$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PAYGO 준칙의 도입 문제를 검토함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의 필요에 즉응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주제어 : 국가재정법, 수입지출귱형( PAYGO )준칙, 세입세출균형, 재정적자, 의무지출, 예산집행법, 예비타당성 조사, 복지 지출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Under the law of public finance, mandatory spending and the optional must be reported separately from the management plan of public finance in 2012. The criterion of the mandatory spending, however, is not clear enough.
$\square$ In a situation where the financial deficit has exacerbated, a measure to curtail spending is a primary need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d finance. To this end, a fiscal discipline, a legal regulation pertaining to fiscal management, is required.
$\square$ Especially because the mandatory spending is an expenditure, the execution of which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it could be an element of risk for the soundness of public finance when it were abused without sufficient caution.
$\square$ In this context, this report is devoted to examine the involvement in the law of public finance of the concept, the status of mandatory spending, and then to demonstrate how to build a desirable mechanism fo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mandatory spending so that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is obtained.

## П. Summary of Content

$\square$ Mandatory spending constitutes of the "interest expense" and the "expenditure the execution of which is provided by the legislation and whose amount is determined by legislation or by regulation. In 2011, this expense was $46.8 \%$ of total expenditure. (144 trillion 876 billion 1 hundred million won)
$\squa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YGO rules system as a control mechanism in the legislation on the mandatory spending. The institution of the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appropriateness should be improved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existing enterprises of mandatory spending.
$\square$ PAYGO rule means to ensure, "when proposing a new legislation which includes an increase in legal expenditure or decrease in tax revenue, a corresponding legislation which increases tax revenue or decreases other legal expenditures must be simultaneously imposed to offset its impact on financial balance"

O PAYGO is known to have played a central role as part of the U.S. fiscal discipline or rule, amidst the dynamic changes between surplus and deficit,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ince the late 1980s.

O Having been through extreme fiscal deficit until the late 1980s, the U.S. government concentrated efforts to secure the national fiscal soundness. Chief among these efforts, the Budget Enforcement Act
formed the PAYGO principle in mandatory spending, and set spending caps in descretionary spending
$\squar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mandatory spending enterprises,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he enterprises of simple transmission of resource' should be limited for those whose examination of the program results is not useful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put in effect means systematically its completion of the program objective

## II. Expected Outcomes

$\square$ By analyzing the concepts of 'mandatory spending' and 'descretionary spending', the specific criteria and the implication of mandatory spending in the law of public finance, establish the base scien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the national budget.
$\square$ By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doption of the PAYGO rules on the legislation of the mandatory spending, this is to set a normative foundation on which policies will be made as a prompt response for medium/long term fiscal soundness securement in Korea.

2 Key Words : national finance law, revenue and spending balance (PAYGO)rules, revenue and spending balance, financial deficit, mandatory spending, Budget Enforcement Act,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appropriateness, spending on welfare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제 2 장 의무지출의 의의 ..... 23
제 1 절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 23

1. 논의 배경 ..... 23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필요성 ..... 25
3.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 ..... 30
제 2 절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 분석 ..... 32
4. 개 요 ..... 32
5.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 32
6. 미국의 의무지출 최근 현황과 증감 추이 ..... 34
7. 미국 의무지출의 특성 ..... 41
8. 의무지출에 대한 시각 ..... 44
9.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무지출 통제 간의 상관성 ..... 45
10. 시사점 ..... 51
제 3 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기준 ..... 53
11. 고려사항 ..... 53
12. 의무지출의 유형 및 구분기준 ..... 56
13.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59
14. 재량지출의 유형 및 구분 기준 ..... 60
15. 기타 고려 사항 ..... 63
제4 절 의무지출의 관리 - 통제 필요성 ..... 64
1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재정운용상 실익 ..... 64
17.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의무지출의 위험성 ..... 65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67
제 1 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 67
18. 2011 년 의무지출 예산 개요 ..... 67
19. 2011 년 의무지출 예산 총괄 ..... 68
제 2 절 지출 유형별 분석 ..... 74
20. 부처별 재정사업 분석 개관 ..... 74
21. 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국내법 분야) ..... 103
22. 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국제법 분야) ..... 117
23.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재량지출이 혼재된 사례 ..... 125
24. 법률상 임의지출이나 시행령에서 의무화된 사례 ..... 192
제 4 장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 233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 233
제 2 절 의무지출 입법과 수입지출균형 준칙 ..... 234
25.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의 의의 ..... 234
26. PAYGO 준칙의 성과와 한계 ..... 244
제 3 절 PAYGO 준칙의 도입 가능성 ..... 248
27. PAYGO 준칙의 재정법적 의의 ..... 248
28. PAYGO 준칙과 복지재정 ..... 250
제4 절 PAYGO 준칙의 헌법적 한계 ..... 252
29. 논의의 배경 ..... 252
30.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53
31. 미국의 사회적 기본권 ..... 266
32. 검 토 ..... 269
제 5 장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 273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 273
제 2 절 복지지출과 예비타당성 조사 ..... 275
33.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 ..... 275
34. 대상요건 ..... 277
35. 선정방법 및 절차 ..... 282
36. 수행체계 ..... 285
37. 분석방법 ..... 286
제 3 절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 289
3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판단 ..... 289
39.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291
40.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여부 해석의 주체 및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판단 ..... 292
41.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타당성 재조사 시행 ..... 292
42. 기 타 ..... 293
제 6 장 결 론 ..... 295
참 고 문 헌 ..... 299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현대국가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적 • 인적 전제 조건에 대 한 실질적 필요를 인류의 보편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통해 대부분 충당한다. 금전을 획득하고 투입하는 작용이 없다면 오늘날의 사회국가, 급부국가는 전혀 기능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며, 우리가 상 정할 수 있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금전의 국가, 즉 '재정국가'이다. 재 정은 '정부의 조세, 지출 및 여타의 예산활동'으로 국가의 존속에 필 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재정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 제의 안정화라는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 }^{1)}$ 따라서 한 국가가 지속적으 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불확정한 기간 동안에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부담액(현재 의 국가채무 + 미래 지출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현재가치 로 환산한 총수입으로 감당하여야 한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래의 지출증가와 국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 할 수 있도록 장래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의 재정은 1949 년 총재정의 $60 \%$ 를 차입에 의존한 적자재정을 편성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재정을 운용하다가 1987년을 기점으 로 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 }^{2}$ ) 지난세기 한국의 재정은 국가. 사회적 과제 해결과 정부의 정책목표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1970년대 및 80 년대에는 경제개발과 국방력의 강화에, 1997년 IMF외환위기시에는 경제적인 시련의 극복에 큰 역할을 하여

[^0]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9년 기준 359.6 조원으로 GDP대비 $33.8 \%$ 를 차지하는 등 재정 건전 성 확보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201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2010.11)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33.8\%)은 G20 국 가 평균( $75.1 \%$ )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비중이 GDP대비 $6.9 \%$ 로 OECD 평균 $20.5 \%$ 에 미치지 목하여 아직 사회보장지출이 본 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 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의 실현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의 경우 향후 고령화의 진전, 양극화해소,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보장, 통일을 위한 지출소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의 운용이 매우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세입기반의 확대와 총지출에 대한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3)
3) 이미 OECD 비교대상국들은 상당수준의 복지수준을 달성하고 있고, 재정규모 및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여전히 국가운영에 있 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대한 우 려 등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재정'의 실현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획재정부 가 지난 9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재정적자를 내년에 14조3000억 원으로 줄이고 2013년엔 2000억 원의 소폭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도 2013 년 균형예산 달성에 초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0 \sim 4$ 세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증액, FTA 후속 대책 등 현안을 주도해 나가면서 균형재정 목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치•사회 적으로 복지 재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복지 등 소위 의무적 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필요성 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복지지출은 관련 입법에 따라 지출이 의무화되 는 의무지출의 형태를 보이는 바, 이는 한번 늘어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의무적 지출에 대해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자는 취지로 2010 년 5월 17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재 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제7조제2항), 의무지출을 법상 개념으로 명시하였다.4) 즉, 현행 국

[^1]가재정법은 의무지출에 대하여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출의 근거법령이 이처럼 의무지출로 규정된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복지지출이다. 현재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 예산 안 분석보고서」에서 의무지출을 분석•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관련 대 정부 질의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 정의 규정을 기초로 의무지 출과 재량지출의 구분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 출의 현황을 분석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 및 재정 규율의 확 보를 위해 과연 재정관리제도에서 의무지출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방안과 기 존 의무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의무지출은 법상 지출의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 출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지출 규모에 대한 재정당국(행정부)의 재량 여지가 거의 없는 성격을 지니는 바, 의무지출의 증가는 자칫 재정운 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재정적자의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일찍이 국가재정관리의 일환으로 재 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각기 상이한 절차와 통제 장치를 강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특히 의무지출이 총지출의 3 분의 2 가량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의무 지출(직접지출)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리예산처 (OMB)와 의회예산처가 해당 사업을 정하여(최종적으로는 예산위원회) 예산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속도 감안시 의무지출에 대한 구분•관리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향후 의무•재량지출 구분은 재정규율에도 영향을 주고, 재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장기 재정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에 대하여 "재 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개념을 토대로 의무•재량지출 구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 바, 재정사업의 다양한 근거 법규정의 형 태를 포괄하고, 각 개별 유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지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예컨대,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나, 해당 지출의 성격상 법령에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 등에 따르는 경우, 해당 지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근거 법률은 임 의규정 형태이나 타 관련 법률에서 해당 지출을 포괄적으로 의무화하 고 있는 경우, 정부의 조정여지가 없는 계약상 연차요소(예: 최소수입 보장제도, BTL 임차료, PSO 보상 등), 법규정 형식과 사업의 내용 및 실질집행을 각각 기준으로 할 때 지출구분이 달라지는 경우, 국가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국가간 협정이나 국제기구 가입에 따 라 발생하는 의무분담금•기여금•사업분담금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쟁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별 기준이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사 례를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분석 - 제시하였다.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의무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무 지출은 가능한 엄격하게 최소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무지출 의 개념을 현행 국가재정법상 엄격히 해석할 경우, 기존 사실상 의무 지출로 관리되어 온 경직성 지출은 재량지출로 포함되어 현행 재량지 출의 일정비율 구조조정 방식은 부처의 재량지출을 과도하게 제약하 는 문제도 우려된다. 따라서 재량지출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구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5) 이처럼 의무지출의 구분 기 준을 설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상의 여러 쟁점과 맞물리는 다분히 법정 책적인 사항으로 여러 측면의 검토를 요한다.

의무•재량지출을 법상 구분하는 것은 2012년에 처음으로 시행되게 되는 바, 의무지출의 명시적인 인정 및 구분 운용이 국가재정운용 현 상 및 관련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의무지출의 무분별한 증 대, 의무지출로 평가된 지출에 대한 통제 불능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 성 악화 우려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의해 지출되 는 경비로서 2000년대 이후 기초노령연금신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등 복지관련 정책의 확대 및 복지대상과 범위의 증가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예산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통제•관리•계획기능으로 구분되는데, 의무지출 경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출경비로 예산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는데 제약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과 재량지 출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분에 따른 통제장치에 대한 사항이 전무한 바, 이에 대한 법제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밝히 고, 제 2 장에서는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를 조명해보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과 구분 필요성, 분류의 대상이 되는 지출의 범위, 구 체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며 주요국 사례로서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을
5) 현행 국가재정법상 개념은 의무지출 이외의 모든 지출이 재량지출이며 별도 세부 구분은 없다.

분석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2011년도 총지출을 기준으로 의 무지출과 재량지출의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의무지출 판단 기준의 구 체적 적용을 통해 유형별 의무지출 사례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 부 처별로 기존 경직성 지출로 관리되어 온 다양한 사업을 현행 국가재정 법상 의무지출 개념으로 검증하고, 그 법적 판단 구조를 제시한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의무지출의 적정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한다.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장치로 이해되어 온 수입지출 균형준칙(이른바 PAYGO 준칙)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무지출 입법통제 에는 유효하지만,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관리 내지 구조조정에 는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4장에서는 새로운 의무지출 입 법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PAYGO 준칙의 도입 방안을 다루고 이어 서 제 5 장에서 기존 의무지출 사업 중 대표적인 유형인 복지지출에 대 한 적정관리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으로 제 5 장에서는 결론으로 연구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과 법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2011년 총지출예산에 대 한 세부 분석 조사,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연구원, 한 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등 관련 기관 및 학 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 긴밀한 의견 교류를 통해 연구내용의 실 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포함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향후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 다. 향후 의무•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재정운용 현상 및 제도의 변화 를 보다 거시적으로 조망해 보고, 예산절차에 있어 의무•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국회와 행정부간 기능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 2 장 의무지출의 의의

## 제 1 절 의무지출의 재정법적 의의

## 1．논의 배경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국가부도위기로까지 치 닫는가 하면 유럽 등 선진국은 국가부채 누적으로 재정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 핵심의제 로 논의되고 있다．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33.8 \%)$ 은 G20 국가 평균（ $75.1 \%$ ）보다는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 무나 빠르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의 실현이 주 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도 2007년 시행된 국가 재정법에 따라 중기적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법적 구속력도 없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 제성장률•총지출•총수입 등의 주요 전망치가 거의 매년 수정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즉， 2004년 중기계획상 2006년의 성장률은 $8 \%$ 대로 전망했지만 실적치는 $5 \%$ 였고，2006년 중기계획상 2008년 성장률은 $7.4 \%$ 였지만 실제는 $5 \%$ 에 그쳤다．전망은 틀리게 마련이라지만 정부 재정의 중기적인 가늠 자 역할을 하는 이런 수치가 자주 바뀌는 건 재정운용의 실효성과 예 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

6）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도승， r 국가재정건 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 2010 ；신해룡，「예산개혁론」，세명서관， 2011 참조．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관리가 관건인 바, 향후 우리나 라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출통제 및 관리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 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재정 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 적 규율, 즉 '재정규율(Fiscal Rule)'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의무적 지출에 대해 보다 신중한 관 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주로 복지지출이 해당되는 의무지출 부분의 재정위험은 장기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재정위험에 대응하여 의무지출의 관리 -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의 확 대 요인으로 일찍이 의무지출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감축을 위해 정 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반적으로 의무지출이라 함은 법 률에 지출의 근거와 규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결과 예산은 단 지 법률의 조항에 따라 확정된 계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이른다.7) 즉, 지출의 근거 및 요건이 근거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지출규모 결정에 있어 예산편성권자의 재 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출을 말한다. 의무지출에 대응한 개념으 로 재량지출이 있는데, 이는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 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이러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신뢰성 있는 수치를 제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이외에도 향후

[^2]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하 는 재정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주 목하고, 의무지출을 재량지출과는 별개로 추계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치로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수입지출 균형 준칙(PAYGO Rules)"을 적용하고, 한편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항목의 상한을 두고 통제하는 "지출상한제(Spending Caps)"를 적용함으로써 재정준칙의 준 거로써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의 증 가속도와 규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그 출발점이라 하겠다.

##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필요성

의무지출의 기본과제는 이미 법률로 결정된 사업의 ‘미래비용을 추 계’하는 것이고, 재량지출의 기본과제는 법률에 직접적인 지출 의무가 없으나 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의 지출수준을 결정’ 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 산이 편성•심의되고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주로 소관 상임 위원회가 심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경우 법 과 예산은 연계되어 있고 국회는 법률조항을 통해 정부에 지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편성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지출에 있어 재량인 경우 해당 조항을 통해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 실제 예산사업의 반영여부나 실시시기는 정부가 결 정하게 된다. 의무지출은 법률의 변경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으나，재량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에 따 라서 증감의 영향 받게 된다．지출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의무지 출은 중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심지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0 년에서 70년까지도 예측을 하며，그 결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 용하게 활용된다．하지만，재량지출은 예측년도가 길지 않으며 시계를 크게 확장하여 추계하여도 활용성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운용은 재정추계를 객관화•과학화 한 다는 측면뿐만 아니라，향후 5 개년 동안 총지출•총수입•국가채무 등 총량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재정지출 확대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의무지출의 통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의 과학화． 객관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8）또한 의무지출 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이른바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9）과「재 정소요점검（Scorekeeping）」10）등 향후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8）「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기획재정위원회 수 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10．4，39면．
9）＂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경제，총수입，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의 의회예산처 $(\mathrm{CBO})$ 와 관리예산처 $(\mathrm{OMB})$ 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각 지출 및 지출항목별로，예산연도를 포함한 10 년을 추계범위로 기준선 전망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치로 본다면，기준선 전망은 5 년간 국가재정 운용계획 실효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준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앞의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40 면．
10）＂재정소요점검（scorekeeping）＂은 기존의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 준선 전망）와 당해 회기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 요를 합산한 것이다．이는 미국 의회예산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결과 또 는 세출위원회의 세출법안 심사 결과가 예산결의안에서 미리 정해진 재원배분 한도 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PAYGO 중 의회규칙으로 서 PAYGO의 운용시 의사진행상 이의제기（point of order）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 니며 미국 의회예산 과정에서＇재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

과제로 제기되는 다양한 재정분석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 중 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재정기준선 전망은 장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는 방식의 하나로 현 재의 법과 정책이 향후에도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가정 하에 수입，지출，재정적자，국가채무 등의 재정 지표를 예측하는 것이 다．즉，기준선이란 이미 성립된 법（현행법）에 기초하여 예산권한，지 출（직접지출과 재량지출），수입，그리고 재정수지의 현연도 수준을 기 준으로하여 예산연도와 후속 연도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한다．11）따라 서 기준선은 미래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중립적이다．기준선은 5년 혹 은 10 년후의 재정여건 즉，여유재원 혹은 부족재원의 상황을 보여주 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혹은 심의권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수입 및 지 출의 변화를 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그런데 의무지출과 재량 지출은 지출의 성립근거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5년 내지 10 년의 전 망을 시행하는 경우에 방법이 서로 차이가 있다．즉，의무지출은 현행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상황을 고려하 여 추계가 된다．재량지출의 경우에는 과거 년도의 지출 수준과 추세， 새로운 재정소요，경상경제성장율，물가상승률 등과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예측한다．요컨대，국가재정운용계획

[^3]으로 구체화된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평가•분석하는 중요한 도구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회차원의 중기 재정전망은 필수적이라 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법안비용추계는 ‘의무지출'과 후술하는 '경직성 재량지출’만을 추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임의성 재량지출은 제외한다. 임의성 재량 지출은 내용이 추상적, 선언적, 포괄적이어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 고 재정당국의 재량적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무와 재량지출의 구분은 법률안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되어 왔던 우리나라 재정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대 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인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하 였다. 아직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속 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 복지재정의 성숙도 심화,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정소요, 세수기반 약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전 망에 대해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태 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 지금부터라도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노력 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본격적인 재 정준칙의 도입에 앞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이후 재정관리를 위한 내용적 내실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10년 뜨겹게 논의되었다.12) 그 결 과로 2010 년 5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
12) 그 대표적인 사례로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을 수 있다.

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재정수입 증가율 및 근거,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의 증감 등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13) 이에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 2012년 중기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의무지출은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와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재량 지출과는 다른 재정소요의 추계방식이 적용되는데, 과거와 같이 재정 규모증가율을 구분 없이 제시하는 것 보다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증가율을 각각 추계하는 것은 중장기 재정 규모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자, 국 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처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재정지출 증가의 유형별 원 인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 후 재정지출의 통제의 어려움은 주로 의무지출의 증가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함으로써 지출의 원인별로 재정지출 증가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 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3) 그 외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분석보 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수정예산 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매년 회계연도 개 시 90 일 전까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 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개정 국가재 정법에 대한 상세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2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 3.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의 개념

현행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 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 출"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의2호).

국가재정법 외에 헌법과 법률에서 의무지출•재량지출을 정의하거 나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른바 준예 산에 대해 규정한 헌법 제54조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 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 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 해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무엇이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 전에도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운용지침 에서 의무적 지출을 "법령 등에 지출의무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혜대상, 사업물량과 단가 등을 축소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비" 로 정의하고, 인건비, 기본경비, 교부금, 채무상환,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소득보전지출, 균특회계사업, 기타 법정경비 등을 예시하였으며,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 지출이 아닌 경 비로서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었다. ${ }^{14)}$ 그러나 이는 주로 재량적 지출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이며,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 정의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발전된 재정관리제도의 기초15)를 의
14) 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09. 10 참조.
1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도입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 개념 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미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무지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지출이 의무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 당 지출이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1 차적인 판 단기준이 될 것이며,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규정은 통상 그 지출여부 를 의무화하지 않는 입법 관행을 고려할 때 법률 규정의 문언해석으 로 상당부분 판단이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의무•재량지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중간지대(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계약이행을 위한 BTL
(Build Transfer Lease) ${ }^{16}$ ) 지급금 등)가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세 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이에 국가재정법도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의 2 호).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운용이 향후 재정운용의 과학화 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의무지출의 관리 및 통제제도의 마련으로 이어 진다고 할 때, 이러한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 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의에 의하 여 최종적인 지출구분이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을 거 시적•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자원배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 출의 통제, 의회 예산심의의 합리화, 국가채무 통제를 위한 기초 자료 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면서, 의회 세출위원회와 의회예산처(CBO) 및 관리예산처 $(\mathrm{OMB})$ 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4]
## 제 2 절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 분석

## 1. 개 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적 정의만으로는 모든 재정지출을 명확 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서 두 개념의 정의와는 별도로 분류기준 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국가재정법은 의무지출에 대하여 "재정 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 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 한 실정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별기준 및 현황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일찍 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재정지출을 구분하고, 각 지출 유형별 관 리•통제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무지출 관 리 기준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의 국가재 정법상 개념정의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미국 의회예산처 $(\mathrm{CBO})$ 에서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이자지출(Net Interest)로 크게 구 분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수권위원회의 수권법(authorizing acts)에 의해 예산수권이 발생하며, 지출규모도 세출위원회17)의 세출승인법과 관계
17) 세출위원회는 미국 상임위원회 중 가장 큰 위원회이다. 상원의 경우, 상원의원 29 명으로 구성되는데, 예산안 편성권자와 심사권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심성 지출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등 지출에 대한 결정권

없이 수권법에 따라 결정된다. 재량지출은 수권위원회가 예산수권(budget authority)을 세출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지출규모가 매년 결정되는 12 개 세출승인법(appropriations acts)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이다. 이자 지출은 의무지출의 일부이지만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크기와 관련 되어 중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별도 구분하여 계산한다. ${ }^{18)}$

요컨대, 의무지출은 매년 세출위원회의 지출 승인과 관계없이 수권 위원회의 항구적인 법규(authorizing legislation)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 이다. 의회예산처 $(\mathrm{CBO})$ 에서는 의무지출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지출의 성질에 따라 보장지출(entitlement), 순이자지출(net interest), 비 보장지출(non entitlement)로 구분한다. 프로그램별로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노인의료보험(Medicare), 조소득층의료보조(Medicaid), 상계수 입(Offsetting Receipts), 기타지출(Other Spending) 등으로 구분한다.

반면 재량지출은 매년 세출승인법을 제정하는 예산 과정을 통하여 의회가 부여하는 지출권한에 의한 항목과 금액이 정해지는 지출을 말 한다. 재량지출은 크게 국방(Defense)과 비국방(Non defense)으로 구분 된다. 구체적으로 국방(defense), 교통(transportation), 국립공원(national parks), 법 집행(law enforcement), 재난 구조(disaster relief), 해외원조(foreign aid) 등으로 나뉜다.

미국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게 된 이유는 의무지출이 재 정적자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as-you-go Rule"을 적용하였다. "pay-as-you-go"는 주로 PAYGO(페이고)로 불리며, 기준선 을 넘는 의무지출의 증가는 반드시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의 감소 또 는 수입의 증가로 상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9) 재량지출에

[^5]대해서는 지출한도(spending cap)를 설정하여 규제하였다.
지출한도는 재량적 사업의 예산수권과지출에 관해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에서 정한 상한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세출위원회 는 이를 초과하는 예산권한을 배정할 수 없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일차적 구분 기준은 예산집행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구분된다. 즉, 예산집행법은 세출위원회 소관 모든 계정(accounts)에 대하여 재량 (discretionary), 보장지출(appropriated entitlements), 의무(mandatories)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량(discretionary)으로 분류되면 재량지출이 며, 보장지출(appropriated entitlements)이나 의무(mandatories)로 분류되 면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예산집행법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최종적으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에서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에 어떤 지출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기준의 핵심은 그 구분 결정이 관련 기관들(미 의회 예산위원회, $\mathrm{OMB}, \mathrm{CBO}$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다.

## 3. 미국의 의무지출 최근 현황과 증감 추이

미국의 의무지출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조9천억 달러로, 이는 연방정부의 총재정지출(약 3조 4천억 달러) 중 $55 \%$ 에 해당하는 규모 이다. 의회예산처 $(\mathrm{CBO})$ 에 따르면 2011년 예상되는 의무지출규모는 전

[^6]년도에 비해 2 천억 달러가 증가한 2 조 1 천억 달러로, 연방정부 총지출 의 예상액인 3 조 7 천억 달러 중 $56 \%$ 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 \%$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향후 2021년까지 총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규모는 최근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2018년 은 $56.4 \%, 2021$ 년은 $58 \%$ 로 추산되고 있다.
아래 표는 기준선 내 주요 연도별 연방 재정지출의 추정치를 정리 한 것이다.
[표 1] 기준선 내 주요 연도별 연방 재정지출 추정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8 | 2020 | 2021 |
| :---: | :---: | :---: | :---: | :---: | :---: | :---: | :---: | :---: |
| 1. 의무지출 |  |  |  |  |  |  |  |  |
| 사회보장 | 701 | 727 | 761 | 799 | 842 | 1,059 | 1,196 | 1,267 |
| 노인의료보험 | 520 | 572 | 566 | 610 | 645 | 806 | 949 | 1,021 |
| 저소득층의료 보장 | 273 | 274 | 264 | 278 | 329 | 474 | 544 | 587 |
| 기타 | 600 | 726 | 657 | 641 | 616 | 701 | 767 | 796 |
| 상 계수입 | -184 | -191 | -211 | -222 | -230 | -285 | -317 | -338 |
| 소 계 | 1,910 | 2,108 | 2,038 | 2,106 | 2,203 | 2,757 | 3,138 | 3,333 |
| 2. 재량지출 |  |  |  |  |  |  |  |  |
| 방위 | 689 | 712 | 710 | 725 | 738 | 801 | 848 | 869 |
| 비방위 | 660 | 663 | 643 | 638 | 640 | 680 | 714 | 731 |
| 소 계 | 1,349 | 1,375 | 1,352 | 1,364 | 1,378 | 1,482 | 1,562 | 1,600 |
| 3. 이자지출 | 197 | 225 | 264 | 325 | 394 | 646 | 751 | 792 |
| 총 계 | 3,456 | 3,708 | 3,655 | 3,794 | 3,975 | 4,885 | 5,451 | 5,726 |
|  |  |  |  |  |  |  |  |  |
| GDP 대비 각 지출의 비율 |  |  |  |  |  |  |  |  |
| 1. 의무지출 |  |  |  |  |  |  |  |  |
| 사회보장 | 4.8 | 4.8 | 4.9 | 4.9 | 4.9 | 5.1 | 5.2 | 5.3 |
| 노인의료보험 | 3.6 | 3.8 | 3.6 | 3.7 | 3.7 | 3.9 | 4.2 | 4.3 |


| 연 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8 | 2020 | 2021 |
| :--- | :---: | :---: | :---: | :---: | :---: | :---: | :---: | :---: |
| 저소득층의료 <br> 보장 | 1.9 | 1.8 | 1.7 | 1.7 | 1.9 | 2.3 | 2.4 | 2.5 |
| 기타 | 4.1 | 4.8 | 4.2 | 3.9 | 3.6 | 3.3 | 3.4 | 3.3 |
| 상계수입 | -1.3 | -1.3 | -1.3 | -1.4 | -1.3 | -1.4 | -1.4 | -1.4 |
| 소 계 | 13.2 | 14.0 | 13.0 | 12.8 | 12.8 | 13.2 | 13.8 | 14.0 |
| 2. 재량지출 |  |  |  |  |  |  |  |  |
| 방위부문 | 4.7 | 4.7 | 4.5 | 4.4 | 4.3 | 3.8 | 3.7 | 3.6 |
| 비방위부문 | 4.5 | 4.4 | 4.1 | 3.9 | 3.7 | 3.3 | 3.1 | 3.1 |
| 소 계 | 9.3 | 9.1 | 8.6 | 8.3 | 8.0 | 7.1 | 6.8 | 6.7 |
| 3. 이자지출 | 1.4 | 1.5 | 1.7 | 2.0 | 2.3 | 3.1 | 3.3 | 3.3 |
| 총 계 | 23.8 | 24.7 | 23.3 | 23.1 | 23.0 | 23.3 | 23.9 | 24.0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January 2011
[표 2] 실제 평균재정지출 증가율 및 미국 의회예산처 추정 증가율
(단위: \%)

|  | 실제 발생 |  | 추 정 |  |  |
| :--- | :---: | :---: | :---: | :---: | :---: |
|  | $2000-2009$ | 2010 | 2011 | 2012 | $2013-2021$ |
| 1. 의무지출 | 8.8 | -8.8 | 10.4 | -3.3 | 5.6 |
| 사회보장 | 5.8 | 3.4 | 3.8 | 4.6 | 5.8 |
| 노인의료보험 | 9.1 | 4.3 | 9.8 | -1.0 | 6.8 |
| 저소득층의료 <br> 보장 | 8.8 | 8.7 | 0.6 | -3.6 | 9.3 |
| 기타 | 13.0 | -37.5 | 28.7 | -16.5 | 0.3 |
| 2. 재량지출 | 8.0 | 9.0 | 1.9 | -1.7 | 1.9 |
| 방위부문 | 9.1 | 4.9 | 3.3 | -0.3 | 2.3 |
| 비방위부문 | 6.9 | 13.7 | 0.5 | -3.1 | 1.4 |
| 3. 이자지출 | -2.0 | 5.4 | 14.1 | 17.5 | 13.0 |
| 총지출 | 7.5 | -1.8 | 7.3 | -1.4 | 5.1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January 2011

이와 같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에 관한 최근의 실제수치와 향후 10 년의 기간 동안의 전망치는 $50 \sim 60 \%$ 대 수준에서 보합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찰범위를 1960년대 초로 확장하였을 경 우에는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62 년 의무지출은 재정지출에서 $25 \%$ 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13년 후인 1975년에는 45\%의 비중을 보였다. 아래 표는 1962년부터 연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의 비중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그림 1] 총 연방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의 변화추이


출처: Thomas L. Hungerford,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3, 2005.

지금까지 의무지출 총액에 관한 추세와 전망치를 분석하였고, 이하 에서는 의무지출의 세부부문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2010년 현재 지출액 기준으로 의무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항목은 사회보장( $37 \%$ )과 노인의료보험( $23 \%$ ) 부문이다. 20 ) 이러한 추 이는 2021년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1962 년부터 의무지출의 각 세부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 세를 분석한 표에 따르면 사회보장부문은 완만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의료보험과 저소득층 의료보장 부문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아래 표 참조).
[그림 2] 의무지출 대비 세부항목 비율 변화추이


출처: Thomas L. Hungerford,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3, 2005.

한편,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비중을 살펴보면, 2009 년은 $14.9 \%, 2010$ 년은 이보다 하락한 $13.2 \%$ 로 조사된다. 반면, 2011년 은 전년도에 비해 다시 소폭 증가한 $14.0 \%$ 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의
20) CBO,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 March 2011, 11면.

무지출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법도 입법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은 경제규 모가 확대되고 실업수당과 같은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감 소함에 따라 대략 $13 \%$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의회예산처 $(\mathrm{CBO})$ 는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의료비용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다 시 $14.0 \%$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대상기간을 넓혀보자면, 지난 과거 10 년간 $G D P$ 대비 의무지출은 평균 $11.2 \%$ 대였고, 향후 40 년 동안은 $9.9 \%$ 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 }^{21)}$

GDP 대비 의무지출비중의 과거 수치는 다음과 같다. 1962 년은 $4 \%$ 중 반대를 보이고 있으나, 1968년~1974년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후 1974 년 이후부터는 의무지출비중은 $9 \sim 11 \%$ 사이에서 보합세를 보여 왔다.
[그림 3] 국내총생산 대비 의무지출 비율 변화추이


출처: Thomas L. Hungerford,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CRS Report for Congress, September 13, 2005.
21) 상세는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Chapter 3을 참조.

따라서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62년 이후 GDP 대비 의무지 출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부항목별 지출변화추이와 전체 총액의 변화추이와 상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둘의 움직임은 반드시 같지 않다. 사회보장, 노인의료 보험, 저소득층의료보장부문은 의료비(health care costs)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0년 GDP의 9.9\% 수준에서 2021년 $12 \%$ 수준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나, 소득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은 2010년 3\% 수준에서 2021 년에는 $1.3 \%$ 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부문과 달리 소 득보장부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 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수급대상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 일부 세액공제 환급제도를 축소하는 법이 입법되어 시행될 예정이 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의무지출의 그 외 나머지 세부 부문 은 2010년 GDP의 $0.2 \%$ 수준에서 2021 년 $0.7 \%$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미래의 재정지출을 예측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회예산처 $(\mathrm{CBO})$ 의 의무지출의 추이에 대한 예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것인가? 향후 우리나 라의 의무지출의 추이를 예측하는데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이하에서 이에 관해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의회예산처 $(\mathrm{CBO})$ 는 향후 현행법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기본 적인 가정을 한다. 다시 말해 가장 최근의 예산에 관한 의회의 판단 이 기준선(baseline) ${ }^{22}$ ) 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치를 추산하
2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준선(Baseline)이란 장래의 재정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예측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기초한 후속연도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 재 10 년이 기준선으로 채택되어 있다. '1985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 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250조(c)(5)에 따르면 "기준선이 라는 용어는 새로운 예산권한, 지출, 수입, 그리고 흑자 또는 적자의 현재연도 수준 의 예산연도와 그 후속연도에 대한 추계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려져 있다. 기준선 에 따른 전망은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미국은 기준선 전망

였다. 또한 10 년 이내에 종료 기한이 도래할 의무지출 관련 프로그램 의 대부분은 연장될 것으로 간주하였고, 특히 '1997년 균형 예산법, (Balanced Budget Act of 1997) 이전의 프로그램들로서 그 지출규모가 5 천만 달러보다 큰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 였다. 1997년 이후 도입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소멸시효 가 연장된다고 보지 않고, 대신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프로그램 단위별로 그 지속성을 검토한다.

한편, 의회예산처 $(\mathrm{CBO})$ 의 기준선은 의료수가를 통제할 수 있을 정 도로 노인의료보험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제한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법 하에서의 의료수가는 2012년 1월 약 $28 \%$ 정도 감 소할 예정이고 그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의회예산처(CBO) 는 전망하고 있으나, 만약 장래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계획된 의료수가 의 감소를 중단시킬 경우 기준선 내에서 노인의료보험 예상 지출액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의료수가 지급률이 현재 수준과 같이 2021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10 년에 걸친 노인 의료보험 지출액은 기준선 동안 약 2,500 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4. 미국 의무지출의 특성

미국의 의회예산처 $(\mathrm{CBO})$ 에 의해 재정지출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이자지출(Net Interest)로 크게 구분되고 있으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정의에 대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재량지출 과 의무지출의 개념은 의회의 예산절차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재량지출의 규모는 세출위원회(The House

[^7]Appropriation Committee)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출위원회는 세출예산법 (Appropriation Act)을 심사하는 주관기관이다. 한편, 세출예산법은 세출 예산법안(Appropriation Bill)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결정된다.

의무지출은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에 근거, 수권법(Authorization $\mathrm{Act})$ 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된다. 다시 말해, 의무지출은 수권 법에 따라 지출이 결정되는 것으로 세출위원회의 지출 승인과는 관계 가 없다.

재량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의무 지출은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 한 변동성 측면에서 재량지출에 비해 중장기 예측이 가능하고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재량지출보다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의 일부에 해당하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출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한다. 아래 표 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이자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표 3] 미국의 의무지출, 재량지출, 이자지출의 비교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 | :---: | :---: |
| 의무지출 | 매년 의회의 지출 승인과 <br> 관계없이 항구적인 <br> 법규(authorizing legislation)에 <br> 의해 결정되는 지출 | Social Security, Medicare, <br> Medicaid, Income support, <br> Other Retirement and Disability, <br> Other Programs, Offsetting Receipts |
| 재량지출 | 매년 세출승인법(appropriation <br> act)을 제정하는 예산 과정을 <br> 통하여 의 회가 부여하는 <br> 지출권한에 의한 항목과 금액이 <br> 정해지는 지출 | Defense, Non defense <br> (국가적 필요, 기 관의 <br> 임무와 사업에 따라 <br> 기능별로 분류) |


| 구 분 | 내 용 | 예 시 |
| :---: | :---: | :---: |
| 의무지출의 일부이지만 <br>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의 출기와 <br> 관련되어 중요한 지출이기 <br> 때문에 별도 구분되며, <br> 국가채무의 크기와 구성 및 <br> 재정적자 또는 흑자 그리고 <br> 시장 이자율에 의해 결정 | Net interest |  |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7 to 2016」, 2006. 1

의무지출은 몇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 다. 지출의 성격에 따라 보장지출(entitlement), 순이자지출(net interest), 비보장지출(non-entitl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구분할 때 는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저소득층의료보장, 소득보장, 퇴직자장애 인보조,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표 4]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프로그램별 의무지출 세부항목

| 구 분 | 세부 항목 |
| :---: | :--- |
| 사회보장 <br>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
| 노인의료보험 <br> (Medicare) | 노인의료보험(Medicare) |
| 저소득층의료보장 |  |
| (Medicaid) | 저소득층의료보장(Medicaid) |
| 소득보장 <br> (Income Security) | 소득보전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br> 근로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br> (Earned income and child tax credit) <br> 실업보조(Unemployment compensation) <br>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s) |


| 구 분 | 세부 항목 |
| :---: | :--- |
|  | 가족부양(Family support) <br> 소아영양(Child nutrition) <br> 수양자녀 및 입양보조(Foster care) |
| 퇴직자 장애인 보조 <br> (Other Retirement and <br> Disability) | 연방공무원인건비(Federal civilian) <br> 군인(Military) <br> 재향군인(Veterans) <br> 기타(Other) |
|  | 상푹금융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br> 퇴역군인 의료보장(Tricare for Life) <br> 학비융자금(Student loans) <br> 방송통신 전파서비스(Universal Service Fund) <br> 주어린이건강프로그램(SCHIP) <br> 사회봉사(Social services) <br> 수해보험(Flood insurance) <br> 기타(Other) |
| 기타(Other Programs) |  |

## 5. 의무지출에 대한 시각

의무지출은 재량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는 견해가 지 배적이다. ${ }^{23)}$ 의무지출의 통제성과 관련하여 의무지출의 본질적인 속성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는 의무지출이 수권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므로, 지출의 증감에 변동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을 고려한 것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법률의 개정이 없는 한 의무지출

[^8]의 규모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실체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 규모를 변경시킬 수는 있으나, 재량지출에 비해 절차적 측면에서 용 이하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량지출에 비해 통제가 쉽지 않다.

다음은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연 방재정지출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이나 혜택수준을 변경하거나 재량지출에 대한 책정액 자체를 감소시 킬 수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 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지 출에 관한 프로그램의 존속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쉬운 방안으 로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의회가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다음 회계 연도에 그 갱신을 결의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 해당 프로그램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에 따른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 의 어려움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 또는 사회보장 혜택의 추가적인 수 요와 같은 요인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요인들이 해당 프로그램들의 추가적인 지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다. 현실적으로는 보건비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저소 득층의료보장 세 부문에 대한 지출은 세수입과 GDP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세 부문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사실상 통제에 서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24)도 있는 실정이다.

## 6.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무지출 통제 간의 상관성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무지출 통제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우선 의무지출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24) Rudolph G. Penner, Julianna Koch, "How Much Federal Spending Is Uncontrollable?", TAX NOTES, July 16, 2007.
(1) 의무지출의 증가 요소

미국의 의무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크게 수급자격이 되는 인구 의 수준, 의료서비스 비용, 경제의 변화, 그리고 주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인 구

대부분의 의무지출 프로그램들은 나이, 소득, 가족형태 등에 따라 수급 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예산처 $(\mathrm{CBO})$ 의 기준선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는 인구의 변화가 된다. 예컨대, 노인 의료보험에 대한 지출을 추정하는데 있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고려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의회예산처 $(\mathrm{CBO})$ 는 노인의료보험의 수급 인원을 2010년 4천5백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6천만 명에 이를 것이 라는 구체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관련 비용을 산출한다.

인구 수준은 연방재정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에 대한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 다.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은 2010년에 전년 대비 3.4퍼센트가 증 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유족보험과 장애보험의 수급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 까닭이다.25) 2011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베이비부머(baby boomers)가 노인•유족보험의 수급혜택을 받을 자격이 됨으로써 혜당 혜택을 받는 인원은 매해 $3 \%$ 정도(2010년 4천4백만 명에서 2021년에 는 5 천 9 백만 명) 증가할 것으로 의회예산처 $(\mathrm{CBO})$ 는 추정하고 있다. 장 애보험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10년 기준으로 약 천만 명에 달할 것 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5 \%$ 가 증가한 수치이다.
25)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인•유족보험(Old-age survivors Insurance)과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로 구성된다.
2) 1 인당 의료비용의 증가

의료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인구 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 기는 하나, 1 인당 의료비용 역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논 의의 실익은 1 인당 의료비용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인구 의 변화추이로 의료서비스 지출비용의 합리적인 추산이 어렵다는데 있다.

구체적인 미국의 1 인당 의료비용을 살펴보면 예컨대, 노인의료보험 의 경우 수급인원은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약 3분의 1 이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되고, 해당 보험수급자 1 인당 지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 분의 1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0년 대비 2021년의 관련 비용은 수급인원의 증가율에 더하여 1 인당 지출액의 증가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출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1 인당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액 자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 }^{26)}$ 의회 예산처 $(\mathrm{CBO})$ 는 2011 년 ~ 2021년 동안 달러화 기준으로 노인의료보험 에 대한 지출액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퍼센트에서 $4.3 \%$ 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인당 의료비용의 상승은 저소득층의료보장 부문에 있어서의 지출의 증가를 유발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1 인당 의료비용의 증가는 현행법 하에서 보 건지출의 지속적으로 증가를 유발시킨다. 과거 수십 년간 1 인당 의료 비용의 증가율은 1 인당 GDP 의 증가율을 초과하여 왔는데, 이러한 현 상을 초과비용증가(excess cost growth)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컨대, 1985
26) 이를 ‘명목지출’과 '실질지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명목지출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배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고 실질지출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난 뒤의 금액을 말한다.

년부터 2008년 사이의 세부부문별 초과비용증가를 살펴보면, 노인의료 보험의 경우 $1.5 \%$ p, 저소득층의료보장은 $1.2 \% \mathrm{p}$ 로 확인된다. ${ }^{27)}$
3) 경제환경의 변화

의무지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생산성(productivity)과 GDP의 성장, 물가와 임금의 변화, 그리고 그 밖의 경제요소들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의 수급대상자와 현행법 하 에서 보장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의회예산처 $(\mathrm{CBO})$ 의 기준선 예산의 추정은 이러한 경제상 황의 예측치에 기반하게 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 의무지출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산하게 되는데, 이는 일부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생계비 조정(cost-of-living-adjustments; COLAs) ${ }^{28)}$ 을 적은 폭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는 일부 의무지출 부문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2010 년과 2011년 사회보장부문의 급여수급산정에 있어 COLAs를 배제한 것을 들 수 있다.
4) 주정부의 의무지출비

의무지출 프로그램 중 저소득층의료보장과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 로 펀드를 조성29)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연방정부가 자금을 대는 구조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27) 상세는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Long-Term Budget Outlook, June 2010, revised August 2010, Chapter 2를 참조.
28) 물가상승은 실질적인 혜택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감소되는 혜택 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비를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29) 이를 매칭펀드(matching fund)라고 부른다.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 나아가 총지출 규모는 주정부가 얼마의 자금 을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 의무지출의 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달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결국 의무지출의 통제 가능성 여부는 이러한 의무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통제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의회예산처 $(\mathrm{CBO})$ 가 제시하는 의무지출의 감소를 통한 재 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30)}$

첫째, 수당이나 연금 등에 적용되는 물가연동방식을 현재와 다르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가와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의무지출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인덱스(index)나 조정수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 식을 현재와 다르게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매해 측정 된 소비자물가의 변동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의 채용을 통해 의무지출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 복리효과를 감안하였을 때 당해 방안이 유 발하는 의무지출 감소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커지게 된다.

둘째, 수당이나 연금 등의 수급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정한 수급대상자에게 혜택이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은 인 구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수당 또 는 연금 등의 수급대상자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매칭 펀드의 경우 연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선 직접적으로 연방정부의 의무지출 규모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줄어든 비용만큼 주정부의 부 담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경우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30) CBO,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 March 2011, 17~18면.

재정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종국적으로 관련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큰 세 가지 틀을 기초로 의회예산처 $(\mathrm{CBO})$ 는 32 개의 각 프로 그램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31)

미국의 재정적자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원칙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가장 집중적으로 통제를 가하여야 할 부문 은 앞서 살펴본 세부항목의 증감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와 향후 의무지출의 상승추세는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의료보장 세 부문에 의해 주도되어 왔 고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의료보건 지출과 같은 고령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재정적자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32) 사 회보장지출은 현재 $G D P$ 대비 $4.8 \%$ 수준에서 2035 년에 이르러서는 $6.2 \%$ 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노인의료보험이나 저소득층의료보장 과 같은 연방보건지출은 현재 GDP 대비 $5.5 \%$ 에서 2035 년에는 $10.9 \%$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2050 년에는 사회보장과 의료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세입을 완전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러한 전망에 대한 근거로 첫째, 세입과 재량지출은 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 둘째, 1 인당 의료보건지출 의 증가율은 1 인당 GDP 증가율보다 클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만 약 1 인당 의료보건지출 증가율이 1 인당 GDP 증가율과 같다면, CRS 는 미국의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1) 구체적인 방안은 CBO,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 CBO, March 2011, 18면 이하를 참조.
32) Marc Labonte, Reducing the Budget Deficit: Policy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22, 2011, 12면.

## 7.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 의무 지출의 범주를 결정하고 있다. 즉,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개념적, 이 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필요나 정책적 고려를 통해 구분되고 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영 국의 경우, 명문화된 구분기준이나 통제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 정당국의 필요에 의해 행정부 내부에서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구분• 관리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된 것이다. ${ }^{33)}$
재정적자는 국민저축을 감소시키고 민간투자와 경제성장을 저해한 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적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 규모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의 경우 레 이건 전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한 작은 정부와 감세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한 재정적자는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주요
33) 영국의 총지출은 크게 재량지출(부처별 지출상한: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 )과 의무지출(단년도 관리지출: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로 나뉜다. DEL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상한액을 설정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항목별로 상한액을 설정한 것인데, 재량지출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부처의 사업비 성격의 지출이다. AME 는 의무지출에 상응하는 법정지출의 성격을 가지는데, 경제상황 변 화에 따라 그 지출규모가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확정적 수준으로 다년간 통제하 기 어려운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지출(AME)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적으로 결정되 므로 정확한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량지출(DEL)은 각 부처마다 3 년간의 한 도를 설정하고 광범위한 이월이 인정하되 한도 미준수시 다음번 재량지출을 감액 한다. 일반적으로 총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의무지출(AME)의 예측하여 차감 후 재량지출(DEL) 규모를 설정하는데, 종합지출계획서(SR: Spending Review)를 통해 2 년마다 향후 3 년간의 지출에 대해 계획하고 통제한다. 의무지출(AME)은 가변적이 고 수용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고정된 중장기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장이나 경제상황의 영향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운 성격의 지출은 AME로 분류되어 매년 2회 점검•조정한다. AME는 사회보장지출(social security benefits),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달 지출, 이자 그리고 EU기관에 대한 납부 등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복지부분지출이다. 상세는 김성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비교법 조사",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10-12-4, 2010 참조.

정책 목표는 재정적자의 감축이었을 정도였다. 이후 2001년 IT버블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사태(subprime mortgage financial crisis),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재 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여러 정책안을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미국의 재정적자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 을 것으로 보지 않는 경제전문가들이 많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마련된 자구안이 현실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는 대목이라 고 아니 할 수 없다. 결국 미국과 같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도 달하기 전 미리 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가 파악되기 시작한 1962 년에는 미국의 연방재 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25 \%$ 정도 수준이었으나, 50 년 이 지난 2010 년 현재 약 $55 \%$ 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은 향후 10 년 동안은 소폭으 로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3년에서 2021년 동안의 의무 지출 평균 증가율 역시 전체 재정지출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수치들은 재량지출에 비해 의무지출이 가지는 상대적 경 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의회예산처 $(\mathrm{CBO})$ 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무지출을 감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의무지출이 가지는 전반적인 속성을 고려한 일 반적인 원칙의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각 하위 부문들을 구성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의 지출을 줄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의무지출만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세원의 확대와 재량

지출의 감소 또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의회예산처 $(\mathrm{CBO})$ 와 CRS 모 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그리고 세원의 증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간에 의무지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없을뿐더러, 의무지출의 급격한 감소가 야기할 부작용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 제 3 절 의무지출과 재량지줄 구분 기준

## 1. 고려사항

(1) 분류의 대상이 되는 지출 범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분류에 관한 논의에 앞서 그 전제로 논의의 대상인 재정지출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문제이다. 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의 범주로는 통합재정과 총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정부 통합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포함(중앙재정+지방재 정+지방교육재정)한 통합재정으로 IMF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국민경 제에서 일반정부의 재정활동이 차지하는 규모를 나타낸다.34) 중앙정
34)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합산 후에 각 재정간 이전거래(예 : 지방교부 금 등 중앙 $\rightarrow$ 지방 전출재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일반정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다음과 같다. 1)중앙재정 :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8개), 기금(51개) / 금 융성기금 및 외평기금 제외, 2)지방재정 : 일반회계(246개), 특별회계(2,144개), 기금 ( 2,236 개), 3 )지방교육재정 : 교육특별회계(16개)

2009년도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
(단위: 십억원)

| 구 분 | 중앙재정 | 지방재정 | 지방교육재정 | 학 계 |
| :---: | ---: | ---: | ---: | ---: |
| 수 입 $(\mathrm{A})$ | 246,319 | 66,836 | 1,865 | 315,020 |
| 경상수입 | 243,787 | 65,126 | 1,566 | 310,480 |
| 자본수입 | 2,532 | 1,710 | 298 | 4,540 |
| 지출 및 순융자 (B) | 174,802 | 137,888 | 39,980 | 352,670 |
| 경상지출 | 138,098 | 66,131 | 34,130 | 238,359 |
| 자본지출 | 19,952 | 70,439 | 5,825 | 96,216 |
| 순융 자 | 16,751 | 1,319 | 25 | 18,095 |
| 통합재정수지 (A-B) | 71,518 | $\triangle 71,052$ | $\Delta 38,115$ | $\Delta 37,650$ |

부의 경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일부 기금이 포함된다. 지출의 경제적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지출, 자본지출과 순융자가 포 함된다.

총지출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개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 2011년 총지출 규모는 약 309조원 537억원으로 예산 216.3조원, 기금 92.7조원이다. 지출의 경제적 성질별로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및 융자지출을 포괄한 다. 따라서 중앙정부 기준으로 통합재정과 총지출의 차이는 융자지출 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은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 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고려한다. 즉, 예산•기금 등 정부의 지출규모 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의미한다. 반면 에 총지출은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규모를 뜻하 며 융자수입을 차감하지 않아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규모가 크다.
통합재정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규모 파악 및 관리가 용이하고, 총지출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금 액으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분류와의 일관성 유 지와 통계분류의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총지출 을 기준으로 하고자 분류하고자 한다. 분석의 편의상 기관별 범주도 중앙정부 부문에 국한하기로 한다. 그러나 향후 재정 지출별 실질적 인 규모의 명확한 파악 및 기준선 전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통합재 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에서는 통합재정을 기 준으로 기준선 전망을 시행하고 있다. ${ }^{35)}$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하면 재량지출의 성격이 강한 융자부문의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 보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35)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08, 372면.
(2) 의무지출 범위의 최소화 필요성

의무지출은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므로 범위 확대 시 구조조정이 어려워 재정건전성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 회보장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상 의무지출 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무지출로 명시적으로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는 물론 관련기관 에서도 재정당국에서 조정할수 없는 보장된 지출로 인식할 것이며, 이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더욱 더 위축시킬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 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의무지출 개념만 있을 뿐, 미국의 수입지출균 형 준칙(PAYGO)와 같은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의 무지출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때문에 법률과 하위규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지출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해당지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무지출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약 등에 근거한 지출의 경우에도 국회의 비준을 받은 경우만을 근거로 인정하는 등 인정범위 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경직성 재량지출' 개념의 필요성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량지출의 개념을 의무지출 이외의 모든 지출 로 상정하고 별다른 세부 유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제기한 이유로 의무지출의 범위를 직접적인 법률상 의무화 중심으로 엄격 해석하여 최소화할 경우 정부에서 통제불가능한 재정지출이 과 도하게 재량지출로 분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부처에 대해 배정하는 총액에서 재량지출의 $10 \%$ 를 구조조정(삭감)하 도록 하는 현행 예산안 구성 방식하에서는 경직성지출의 비중이 높은

부처는 다른 재량지출을 과도하게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예 컨대，국방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무기도입 등을 위한 다년계약의 이행을 위한 지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게 되는데，이는 계약이행을 위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지출규모 조정이 어려움에도 기준상 재량지출로 편 성되어 재정당국이 요구하는 $10 \%$ 구조조정 규모에 포함하게 된다．때 문에 실재 재량지출이 상당부분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재량지출의 경우 이를 재정운용 실무상 의무지출과 동일 하게 취급되는 경직성 지출과 그 외의 일반적 재량지출인 임의지출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예산편성기준상의 $10 \%$ 구조조정 대상은 임의지 출에 한정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의무지출의 유형 및 구분기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필요성，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법 제7조제 2 항 제 4 의 2 호와 제 4 의 3 호에 따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기본 개념
의무지출은 「이자지출」과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법령 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다．${ }^{36)}$

따라서 의무지출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직접 그 지출이 의무 화되어 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정부의 재량이 없는 지출이다．의무지 출은 그 지출의 규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져 지출규모에 대한 정부의 재량이 매우 제한된 지출이다．

36）국가재정법 제 7 조제 2 항
4의2．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 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2) "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국내법 분야)

의무지출의 구분기준으로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는 지출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 규정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따라 서 법률에서는 지출여부가 임의사항이나 동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 칙에서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지출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의무지출 해당 여부는 해당 지출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근거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해당 지출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판단한다. 예컨 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입징수권자이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 임한 경우(예: 대기환경보전법 제 35 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제41조 등에 따른 배출부과금), 해당 법률 규정은 주로 임의규정의 형태를 보 인다("‥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이고, 지 방재정법 제 21 조 제 2 항에 따라 국가의 비용부담이 의무화되어 있으므 로 해당 지출에 대한 법률상 지출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세입징수 비용교부금은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행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국가재정 의 과학적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의무지출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해당지출 수급자에 대한 권리보호와는 별개 문제임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지출 수급자의 "급부청구권" 인정여부를 의 무지출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요컨대, 의무지출은 정부가 재량으 로 해당 지출을 실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지출의 근거 법률에 대 한 개정(의무 $\Rightarrow$ 재량)이 필요한 지출이다. ${ }^{37)}$
37)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에서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기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의무지출 사업을 정의하면 ‘재정지출 사업 중 지출의무,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가 법령에 명시된 사업’이다. 여기서 명시 적 지출의무란 법률에 "국가 등은 ~ 하여야 한다" 또는 "국가 등은 ~ 한다" 등과
（3）＂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국제법 분야）

해당지출의 의무화 근거로서＂법률＂에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를 포함한다．
지출의 근거가 되는「조약」은 헌법 제6조 제 1 항에 따라 국회 동의 를 거쳐 체결•공포된 조약을 의미한다．따라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조약（헌법에 특별히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간의 단순한 행 정협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조약，예컨대 Visa협정，문화교류 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 등）은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발생하는 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 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지니는 규범을 말한다．즉，성문의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예：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 원칙 등），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은 아니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는 조약（유엔헌장의 일부，포로에관한제네바협정，집단학살금지 협정，부 전조약 등）등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학 계의 일반적 해석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즉，일반적 규 범력이 인정된 조약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우리나 라가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하 지 않고 있다．이러한 입장에서＇강제노동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105 호 조약＇，＇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등은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9]「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관련 규정에서 직접적으 로 지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기여금이나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임의성 지출은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관련 규정에서 해당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이상 외교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량여 지가 거의 없다는 비법률적 사정만으로는 의무지출로 판단할 수 없다．

3．＂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무지출은 그 규모가 법률과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이다．그런 데，원칙적으로 지출규모는 법령에서 명시되어야 하나 사업의 성격， 법적 정비 미비 등에 따라 시행규칙，총리령，부령，훈령 및 고시 등 으로 정한 경우에도 의무지출로 봄이 의무지출의 구분 취지나 우리의 입법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즉，의무지출은 지출 의무가 법률에서 그 지출규모가 하위규정（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이다．아울러 하위규정에는 대법원 규 칙，헌법재판소 규칙 등을 포함한다．국선변호인보수（대법원 규칙），국 선대리인보수（헌법재판소 규칙）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컨대 의무지출의 규모는 당해 법률 또는 하위규정에서 지출금액 을 규정하는 경우，하위규정에서 지출규모를 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률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나，해당 지출의 성격상 법령에 규모 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그 대강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지출규모 를 법원이나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판단 등에 따르는 경우에도 의무지 출로 판단한다．

그리고 국제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의 의무지출 여부에 대한 판 단은 조약 등이 국내법령체계와 같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지 않는 국

제법의 특성상＂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따라서 법률에 준하는 조약 등에 서 지출의무가 발생하고，당해 지출규모가 관련 회의결과서나 선언문， 협약（MOU）등에 나타나면 이는 의무지출로 판단할 수 있다．

## 4．재량지출의 유형 및 구분 기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필요성，취지 등을 고려하여 국가재정 법 제 7 조제 2 항 제 4 의 3 호에 따른 재량지출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기본 개념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을 제외한 그 밖의 지출을 의미하고，38）여타 세 부 유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및 운용상의 문제점，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재량 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지출의 특 성상 정부의 재량 여지가 매우 적은 「경직성 지출」과 그 밖의 일반적 인 재량지출인 「임의지출」로 구분함이 타당하며 이하에서는 그 기준 을 제시한다．
（2）재량지출의 경직성 판단 기준
1）법률상 임의지출이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특정지출이 법률상 임의사항이나，시행령에서 당해 지출을 의무화하 고 있는 경우에는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예컨대，앞에서 살펴본 신

38）국가재정법은 재량지출의 정의를 제 7 조제 2 항에서＂ 4 의 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고용촉진장려금은 법적 근거인 고용보험법에서 지출을 임의사항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경직성 지출로 볼 것이다. 또한 포괄적인 사항(개괄적인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법률상 단지 지출근거를 두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특정 지출(사업비, 수당, 급여, 기타 사회보장지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

이처럼 법률상 임의사항이나 시행령 이하에서 지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재량지출은 향후 지출의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고려대상이 되는 쟁점사항으로 그 현황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 3 장 의무지출 현황에서 상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2) 계약이행을 위한 지출

계약이행, 국가간 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한 지출은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 정부의 조정여지가 없는 계약상 연차요소(민간•차관 원금 상환, 최소수입보장제도(MRG),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임차료, 국 고채무부담행위 등)는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 또한 임의사항인 조약 이나 비강제적인 국가간 약속(MOU, 선언문 등)을 근거로한 지출이 외교, 국방, 국제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경직 성 지출로 분류한다.
3)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출

청사유지비, 전산운용경비 등 기관유지 경비 또는 치안•소방•징 세•식품안전•법 집행 등을 위한 경비와 같이 새로운 제도나 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가 아닌 국가 기본 임무 수행을 위한 경비는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 다만, 그 경비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분 류한다.
4) 공무원 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교보 험료 등), 법정 복지지출(건강보험지원), 기타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용 은 재량지출로서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의무지출 개 념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인건비 산정의 주요 기준인 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에서 결정되며, 임금수준은 정부의 의지 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총인건비 산정시 공무원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정원 직제에 의하여 정해지고, 더욱이 봉급인상분 은 재정의 상황, 소비자물가상승률, 사기업체 인금인상분 등을 고려하 여 기획재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시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 로 현행 국가재정법 정의상 의무지출로 판단하기 보다는 재량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 여, 국고대여학자금융자 등 제반 경비는 그 법률 문구상 지출이 의무 화되어 있지만, 이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적으로 연동되는 지출이므 로 인건비와 함께 재량지출로 판단한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 사회보 장급여 등은 국가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이고 지출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재량이 매우 제한적인 바, 경직성 지출로 분류한다.39)
5) 정책적 고려

기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한 주요 정책사업 또는 재해복구 등 국가재난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은 경직성 지출로 분류할 수 있
39)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건비는 일단 재량지출로 분류하면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직성 경비의 전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른바 준의무지출 로 보면서도 공무원연금은 의무지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건비와 연동되는 연금,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다시 의무지출로 판단하고 있어 기준상 혼선을 초래하 고 있다. 참고로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율은 $55 \%$ 를 넘어 선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 예산안 중점 분석 $\mathrm{II}_{\lrcorner}, 2010.11,7$ 면 참조.

다. 그렇지만 수급자 내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비법률적 요소는 경 직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5. 기타 고려 사항

(1) 혼재된 사업의 개별판단

사업의 성격이 의무지출, 재량지출이 혼재된 경우에는 세부사업 내 지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가능한 구분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1)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와 관련하여 전직대통령연금(전직대통령예우법 제 4조), 유족연금(법 제5조) 등은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지출규모를 법정하고 있어 의무지출이나, 그밖의 예우(제6조)에 관한 지출은 법률 상 임의규정으로 재량지출이다. 그리고 (2)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금(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제7조), 의료지원금(법 제8조) 등은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지출규모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의무지출이나, 생활지원금(법 제9조)는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재량지출 이다.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예•결산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 지출 사업의 산출내역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지출 대상으로만 편성 되어야 하며, 재량지출 대상은 별도의 사업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실재로 다수의 사업예산에서 의무지출사업 내용에 상당부분 재 량사업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를 요 한다.
(2) 유형이 불분명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분

모든 재정지출은 본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본 기준에 따른 확정이 불분명한 경우(특히, 재량지출의 경직성 여부)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종결정하도록 한다.

## 제 4 절 의무지출의 관리 - 통제 필요성

## 1.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의 재정운용상 실익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추구의 근본적 수단인 예산의 우선분배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예산이 부 족하거나 또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의무지출을 위한 예산집 행을 우선시하고, 그 여분으로 재량지출을 위한 예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의무지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여서라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재량지출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예산 한도 내에서 전용 가능할 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또는 추경의 편성 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지출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시 사업을 축소하여야 하는 결론이 이른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의무지 출과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지출심사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유익한 구분이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가재정 건전화와 함께 재정지출의 생 산성 제고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의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지출의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무지출을 적정 관리 - 통제하는 것은 예산 심의의 부담을 경감하 고, 관련 부처의 합리적 예산요구를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 출의 과다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본 의무지출의 위험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복지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이에 대한 관 리•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지부문 재정사업의 위험은 장기적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도 의 초기 도입 또는 기존 제도의 변경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소요에 대 한 엄격한 추계•검증이 필요하다. 복지부문의 의무지출은 제도(즉, 해당 의무지출) 도입 이후 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량지출에 비하여 하방경직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출통제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특히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하향식(Top-down) 예산제도하에 서는 부처의 총한도 내에서 여타 사업의 예산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의무지출은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추경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이 보 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부처가 예산요구시 비용을 과소계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난다. 이러한 측면은 결과적으로 지출의 실적치가 만성적으로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제도 등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의무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무지출을 가능케하는 입법 의 적정 통제가 필요하며, 이미 제정된 입법에 따른 의무지출은 예산 당국이나 제 3 자에 의한 의무지출 추계의 독립적 확인 절차를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제 1 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1. 2011 년 의무지출 예산 개요

의무지출이란「국가재정법」제 7 조 제 4 항 제 4 의 2 호에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7 조 제 4 의 3 호 에서 재량지출을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 측면에서 보면 의무지출은 법령에서 이미 예산 규 모가 거의 정해지므로 예산안 심의 기간 동안에 근거 법령이 제•개 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 예산 심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의무지출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보전거래(국채•차입금•차 관에 대한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간 거래),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11 개 금융성기금40) 및 외국환평형기금 사업은 제외한다.
행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사업은 총 81개 사업이며, 금 액으로는 144 조 8,761 억원이다. 2011년 정부의 총지출이 309.6 조원이 므로 의무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8 \%$ 이다. 참고로 의 무지출 전년대비 증가액이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71.4 \%$ 이다.

[^10][표 5] 2011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 2010년 <br> 예산(A) | 2011년 <br> 예산안(B) | 증가액 <br> (B-A) | 전년대비 <br> 증가율 |
| :---: | :---: | :---: | :---: | :---: |
| 총지출 | 202.8 | 309.6 | 16.8 | 5.7 |
| 의무지출 | $132.9(45.4 \%)$ | $144.9(46.8 \%)$ | 12.0 | 9.0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Pi, 2010.11,2$ 면)

## 2. 2011년 의무지출 예산 총괄

인건비의 경우에는 재량지출로 분류되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직 성 경비의 전형인 점을 감안할 때, 의무지출과 함께 다루어질 수 있 다. 인건비 예산은 2010년 24조 1,425억원에서 2011년 25조 4,706억원 으로 전년대비 1조 3,281억원 증가하였다. 그리고 인건비와 의무지출 을 합한 금액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 년의 경우 $53.6 \%$ 에 서 2011년에는 $55 \%$ 로 $1.4 \%$ 포인트 상승하였다. 참고로 의무지출과 인 건비 합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13.3 조원으로써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 액 16.8 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2 \%$ 이다. ${ }^{41)}$
41) 의무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각 부처 2010 예산사업 세부자료를 본 보고서의 의무 지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는바,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약 6~7조원 증가하였다(2011년 총지출 대비 $49.1 \%$ ). 그러나 국회의 분석대상 사업과 기획재정 부로부터 입수한 세부자료간의 사업명, 예산항목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의무지 출 총량에 대한 비교자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본 절에서는 국회예 산정책처의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의무지출사업의 유형과 법적 분석구조를 제시하 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표 6] 2011년 부처별 의무지출 예산안 현황

| 부 처 | 세부사업 명 | 2010 예산 | $2011$ <br> 예산안 | 증가액 | 전년대비 증가율 | 회계구분 |
| :---: | :---: | :---: | :---: | :---: | :---: | :---: |
| 1.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 사업. 78개 사업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고용 } \\ & \text { 노동부 } \end{aligned}$ | 산재보험급여 | 3,780,612 | 3,854,820 | 74,208 | 2.0 | 산재보험기금 |
|  | 구직급여 | 3,366,028 | 3,368,034 | 2,006 | 0.1 | 고용보험기금 |
|  | 모성보호육아지원 | 336,003 | 411,051 | 75,048 | 22.3 |  |
|  | 취업촉진수당 | 156,176 | 214,604 | 58,428 | 37.4 |  |
|  | 반환금 | 89,283 | 104,610 | 15,327 | 17.2 | 산재보험기금 |
|  | 진폐위로금지급 | 62,975 | 49,497 | $\triangle 13,478$ | $\triangle 21.4$ | 에너지 <br> 특별회계 |
|  | 국제기구협력지 <br> 원(ILO 분담금) | 8,833 | 9,530 | 697 | 7.9 | 일반회계 |
|  | 반환금 지급 | 2,708 | 8,133 | 5,425 | 200.3 | 임금채권 <br> 보장기금 |
|  | 부담금 반환금 | 4,732 | 4,980 | 248 | 5.2 | 장애인고용 <br> 기금 |
| 교육 <br> 과학 <br> 기술부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32,297,958 | 35,306,062 | 3,008,104 | 9.3 | 일반회계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 1,818,745 | 1,790,822 | $\triangle 27,923$ | $\triangle 1.5$ | 사립학교 <br> 교직원 <br> 연금기금 |
|  | - 연금급여 | 1,423,937 | 1,423,937 | 0 | 0.0 |  |
|  | - 퇴직수당 급여 | 361,377 | 322,210 | $\triangle 29,167$ | $\triangle 8.1$ |  |
|  | - 재해보상급여 | 33,431 | 34,675 | 1,244 | 3.7 |  |
| $\begin{gathered} \text { 국가 } \\ \text { 보훈처 } \end{gathered}$ | 보상금 | 1,892,552 | 1,961,778 | 69,236 | 3.7 | 일반회계 |
|  | 참전명예수당 | 237,968 | 253,400 | 15,432 | 6.5 |  |
|  | 6.25 자녀수당 | 138,911 | 164,537 | 25,626 | 18,4 |  |
|  | 간호수당 | 65,265 | 65,469 | 204 | 0.3 |  |
|  | 사립대수업료 등 보조 | 64,712 | 62,369 | $\triangle 2,343$ | $\triangle 3.6$ |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부 처 | 세부사업 명 | 2010 예산 | $2011$ <br> 예산안 | 증가액 | 전년대비 증가율 | 회계구분 |
| :---: | :---: | :---: | :---: | :---: | :---: | :---: |
|  | 무공영예수당 | 55,858 | 54,000 | $\triangle 1,858$ | $\triangle 3.3$ |  |
|  | 재해보상금 | 7,487 | 11,000 | 3,513 | 46.9 |  |
|  | 사망일시금 | 5,234 | 5,800 | 566 | 10.8 |  |
|  | 보철구 지급 | 5,004 | 5,454 | 450 | 9.0 |  |
|  | 수업료 등 <br> 국비지원 | 3,803 | 3,189 | $\triangle 614$ | $\triangle 16.1$ |  |
| 국방부 | $\begin{aligned} & \text { 군인연금 } \\ & \text { (연금정책) } \end{aligned}$ | 2,106,321 | 2,351,628 | 245,307 | 11.6 | 군인연금기금 |
|  | 주한미군방위비 <br> 분담금 | 790,400 | 732,531 | $\triangle 57,869$ | $\triangle 7.3$ | 일반회계 |
|  | 민간보상 | 58,839 | 57,978 | $\triangle 861$ | $\triangle 1.5$ |  |
|  | 기타파병활동 | 22,485 | 16,417 | $\triangle 6,068$ | $\triangle 27.0$ |  |
| 국세청 | 납세조합법정 교부금 | 1,850 | 1,758 | $\triangle 92$ | $\triangle 5.0$ | 일반회계 |
| 국토 <br> 해양부 | $\begin{aligned} & \text { 주택금융신용 } \\ & \text { 보증기금출연 } \end{aligned}$ | 112,000 | 117,600 | 5,600 | 5.0 | 국민주택기금 |
|  | 하천편입토지보상 | 30,000 | 20,000 | $\triangle 10,000$ | $\triangle 33.3$ | 일반회계 |
|  | UN ESCAP 분담금 | 12 | 13 | 1 | 8.3 |  |
| $\begin{gathered} \text { 금융 } \\ \text { 위원회 } \end{gathered}$ | 농어가목돈 마련 저축장려기금출연 | 65,200 | 63,700 | $\triangle 1,500$ | $\triangle 2.3$ | 일반회계 |
| 기획 <br> 재정부 | 복권기금 수익금 법정배분금 | 125,027 | 184,533 | 595 | 47.6 | 복권기금 |
|  | WCO 분담금 | 634 | 338 | $\triangle 296$ | $\triangle 46.7$ | 일반회계 |
| 농림 <br> 수산 <br> 식품부 | 쌀소득보전고정 직불 | 665,000 | 619,500 | $\triangle 45,500$ | $\triangle 6.8$ | 농특회계 |
|  | 수입양곡대 | 288,268 | 299,525 | 11,257 | 3.9 | 양특회계 |

제 1 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 부 처 | 세부사업 명 | 2010 예산 | $\begin{gathered} 2011 \\ \text { 예산안 } \end{gathered}$ | 증가액 | 전년대비 증가율 | 회계구분 |
| :---: | :---: | :---: | :---: | :---: | :---: | :---: |
|  | 살처분보상금 | 50,000 | 50,000 | 0 | 0.0 | 농특회계 |
|  | 비료계정적자보전 | 91,000 | 45,731 | $\triangle 45,269$ | $\triangle 49.7$ |  |
|  | 국제기구분담금 지 원 | 19,673 | 19,672 | $\triangle 1$ | $\triangle 0.0$ | 일반회계 |
| 법무부 | 국가배상금지급 | 9,000 | 9,300 | 300 | 3.3 | 일반회계 |
|  |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구조금 | 3,961 | 4,080 | 119 | 3.0 |  |
| $\begin{gathered} \text { 보건 } \\ \text { 복지부 } \end{gathered}$ | 노령연금 <br> 급여지원 | 6,869,907 | 8,197,710 | 1,327,803 | 19.3 | 국민연금기금 |
|  |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일반회계) | 3,798,385 | 4,079,422 | 281,037 | 7.4 | 일반회계 |
|  | 의료급여경상보조 <br> (기초생활보장급여) | 3,499,540 | 3,671,814 | 172,274 | 4.9 | 일반회계 |
|  | 기초노령연금지급 | 2,723,630 | 2,825,258 | 101,628 | 3.7 | 일반회계 |
|  | 생계급여(기초 생활보장급여) | 2,449,192 | 2,445,969 | $\triangle 3,223$ | $\triangle 0.1$ | 일반회계 |
|  | 0~4세아 보육료 지원(영유아보 육료지원) | 1,368,880 | 1,734,401 | 365,521 | 26,7 | 일반회계 |
|  | 건강보험 가입자 <br> 지원 (국민건강 증진기금) | 1,063,062 | 1,063,062 | 0 | 0.0 | 국민건강 증진기금 |
|  | $\begin{aligned} & \text { 유족연금 } \\ & \text { 급여지급 } \end{aligned}$ | 986,748 | 1,056,800 | 70,052 | 7.1 | 국민연금기금 |
|  | 반환일시금 지급 | 784,374 | 656,900 | $\triangle 127,474$ | $\triangle 16.3$ | 국민연금기금 |
|  | 주거급여(기초 생활보장급여) | 562,824 | 598,655 | 35,831 | 6.4 | 일반회계 |
|  | 공교국가부담금 <br> 보험료 | 520,574 | 567,324 | 46,750 | 9.0 | 일반회계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부 처 | 세부사업 명 | 2010 예산 | 2011 <br> 예산안 | 증가액 | 전년대비 <br> 증가율 | 회계구분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지원 | 332,318 | 388,311 | 55,993 | 16.8 | 일반회계 |
|  | 장애연금 | 376,384 | 370.900 | $\triangle 5,484$ | $\triangle 1.5$ | 국민연금기금 |
|  | $\begin{aligned} & \text { 교육급여(기초 } \\ & \text { 생활보장급여) } \end{aligned}$ | 120,406 | 129,865 | 9,459 | 7.9 | 일반회계 |
|  |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 121,753 | 101,168 | $\triangle 20,585$ | $\triangle 16.9$ | 일반회계 |
|  |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영유 아보육료지원) | 46,271 | 43,735 | $\triangle 2,536$ | $\triangle 5.5$ | 일반회계 |
|  | 노인장기요양 <br> 보험 공교 <br> 국가분담금 | 30,974 | 41,462 | 10,488 | 33.9 | 일반회계 |
|  |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비용 (국가 의료급여부담금) | 24,330 | 29,591 | 5,261 | 21.5 | 일반회계 |
|  |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 15,350 | 15,350 | 0 | 0.0 | 일반회계 |
|  | 국제협력관리 <br> (WHO 분담금) | 14,775 | 12,071 | $\triangle 2,704$ | $\triangle 18.3$ | 일반회계 |
|  | 의사상자지원 | 5,925 | 5,332 | $\triangle 593$ | $\triangle 10.0$ | 일반회계 |
| 여성 <br> 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 | 1,128 | 1,095 | $\triangle 33$ | $\triangle 2.9$ | 일반회계 |
| 중앙선 <br> 거관리 <br> 위원회 | 정당보조금 | 68,713 | 33,412 | $\triangle 35,301$ | $\triangle 51.4$ | 일반회계 |
|  | 재외선거대책비 | 1,750 | 18,975 | 17,225 | 984.3 | 일반회계 |
| 지식 <br> 경제부 | 폐광대책비 | 89,936 | 1,685 | $\triangle 88,251$ | $\triangle 98.1$ | 에너지 <br> 특별회계 |
|  | 아시아생산성 <br> 기구분담금 | 0 | 1,374 | 4,374 | 0 | 일반회계 |

제 1 절 2011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개관

| 부 처 | 세부사업 명 | 2010 예산 | $\begin{gathered} 2011 \\ \text { 예산안 } \end{gathered}$ | 증가액 | 전년대비 증가율 | 회계구분 |
| :---: | :---: | :---: | :---: | :---: | :---: | :---: |
| 책임운 영기관 | 책임운영기관 건강보험부담금 | 3,626 | 4,241 | 615 | 17.0 | 책임운영기 <br> 관 특별회계 |
| 통일부 | 납북피해자지원 | 4,364 | 1,733 | $\triangle 2,631$ | $\triangle 60.3$ | 일반회계 |
| 행정 <br> 안전부 | 지방교부금 | 27,391,951 | 30,216,142 | 2,824,191 | 10.3 | 일 반회계 |
|  | 퇴직 급여 | 7,256,839 | 8,041,941 | 785,102 | 10.8 | 공무원연금 |
|  | 퇴직수당 | 1,282,470 | 1,054,790 | $\triangle 227,680$ | $\triangle 17.8$ | 공무원연금 |
|  | 대여학자금융자 | 774.735 | 737.177 | $\triangle 37,558$ | $\triangle 4.8$ | 공무원연금 |
|  | 재해보상급여 | 102,794 | 106,913 | 4,119 | 4.0 | 공무원연금 |
|  | 일제강 제동원 피해자지원 (위로금) | 80,476 | 81,531 | 1,055 | 1.3 | 일반회계 |
|  | 민주화운동보상 <br> 지원단운영 <br> (보상금) | 5,278 | 6,852 | 1,574 | 29.8 | 일반회계 |

2. 이자상환: 3 개 사업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이자상환 | 20,779,014 | 23,556,668 | 2,777,654 | 13.4 | 공공자금관리 기금/공무원연 금기금/국민주 택기금/근로복 지진흥기금/중 소기업진흥및 창업기반기금 |
| :---: | :---: |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농림 } \\ \text { 수산 } \\ \text { 식품부 } \end{gathered}$ | 농기계차관환 <br> 차손(OECF차관 <br> 차손보전) | 3,057 | 3,005 | 502 | 14.3 | 농어촌구조 <br> 개선 특별회계 |
| 기획 <br> 재정부 | 차관정산 | 500 | 500 | 0 | 0.0 | 공공자금 <br> 관리기금 |
| 합계 | 81개 사업 | 132,870,419 | 144,876,083 | 9.0\% | 12,005,664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II, 2010.11, 3면)

2011년 의무지출 전체 사업 81개 중에서 2010년 예산에 비하여 증 가한 사업은 총 47 개이며 증가액은 12 조 7,751 억원이다. 예산이 감소 한 사업은 총 29 개 사업이며 감소액은 7,695억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5 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회 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 7조 2,562억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하였고, 20 개 사업 1,944 억원이 감소하였다. 1 개 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특별 회계 7개 사업 중 2 개 사업 119 억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하였고, 4개 사업 1,477 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기금의 경우 24 개 사업 중 16 개 사업 5 조 5,071 억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5 개 사업 4,274 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42)

## 제 2 절 지출 유형별 분석

## 1. 부처별 재정사업 분석 개관

이상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부처별로 기 존 경직성 지출로 분류되어 온 재정사업을 세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참고로 이하의 표는 2010년 각 부처 예산사업 중 기존 경직성 지출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온 사업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법률의 개정, 사업폐지 등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특 히, 국제관계에서 지출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의무지출 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는 당해 협약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 사업은 판단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무지출•재량지 출의 구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 다양한 적용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 며, 전체 의무지출 사업의 망라적인 총괄 현황으로 인용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2)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mathrm{II}_{」}, 2010.11,7$ 면.
[표 7] 부처별 재정사업 의무지출 여부 분석 결과표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행정 안전부 | 지방교부금 | $\bigcirc$ | o지출의무 및 금액 법정 -지방교부세법 제4조 |
|  |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 구분 | o 지출의무 및 지출규모 법정 <br> -전직대통령연금: O (전직대통령예우법 제4조) <br> -유족연금: O (법 제 5 조) <br>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그밖의 예우: $\times$ (제 6 조: 법률상 임의규정) |
|  | 민주화운동 보상 <br> 지원단 운영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br> -보상금: O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제7조) <br> -의료지원금: O (법 제 8 조) <br>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생활지원금: $\times$ (법 제 9 조: 법률상 임의규정) |
|  | 일제강제동원 조사지원 <br> 위원회운영 <br> (보상금) | $\bigcirc$ | $\begin{array}{\|l} \hline \text { o지출의무 및 금액 법정 } \\ \text {-사망위로금(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지원특별 } \\ \text { 법 제4조제1호) } \\ \text {-미수금 지원금(법 제5조) } \\ \text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 \\ \text {-부상위로금(법 제4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 \\ \text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금액 시행령 } \\ \text {-의료지원금(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 • 제24조) } \end{array}$ |
| 행정 안전부 (공무원 연금 공단) | 퇴직급여 | 인건비 | -공무원연금법 제 25 조, 제 42 조, 제 46 조 |
|  | 퇴직수당 | 인건비 | -공무원연금법 제 25 조, 제 42 조, 제 61 조의 2 |
|  | 재해보상급여 | 인건비 | -공무원연금법 제 25 조, 제 34 조, 제 42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41 조, 제 41 조의 2 , 제 51 조, 제 56 조 |
|  | 대여학자금융자 | 인건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2조 |
| 통일부 | 납북피해자 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br> -정착금: 납북피해자보상법 제 8 조, 동법시행령 제 8 조 -피해위로금: 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 10 조 <br> - 보상금: 법 제 10 조, 동법시행령 제 11 조 • 제 12 조 -의료지원금: 법 제 11 조, 동법시행령 제 14 조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 <br> 정착금 지급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정착금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 21 조제 1 항 <br> －보로금（報勞金）：법 제21조제2항 |
| 국세청 | 납세조합법정 <br> 교부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br>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소득세법 제169조， 동법시행령 제221조 |
| 기획 재정부 （일반 회계） | 국제금융기구 <br> 출연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금액 시행령 <br>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1조 <br> 의 2 |
|  | WCO 분담금 | $\bigcirc$ |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CCC 협약） 제 12 조（a）항，（b）항 |
| 기획 <br> 재정부 <br> （복권 <br> 기금） | 지방자치단체지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6호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6 호 |
|  | 제주도개 발사업 특별회계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b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 조제 7 호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7 호 |
|  |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지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23 조제 10 호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10 호 |
|  | 사회복지공동 <br> 모금회지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8호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8 호 |
|  |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지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9호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9 호 |
| 기획 <br> 재정부 <br> （대외협 <br> 력 기금） | ADB （아시아개발 은행）미래탄소 펀드 출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금액 시행령 <br> －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 제2조제1항，동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5 항제 11 호 |
| 조달청 | 건강보험료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보건 } \\ \text { 복지부 } \end{gathered}$ | 생계급여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 복지부장관) <br> -수급권자(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 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생계급여: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 제 8 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5조) <br>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차상위계층(수급권자 외 소득금액이 대통령령 이 하인자)생계급여: $\times$ (동법 제 7 조제 3 항 ) |
|  | 주거급여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 복지부장관) <br> -수급권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  | 교육급여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 복지부장관) <br> -수급권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 조, 동법시행령 제 16 조, 시행규칙 제 16 조 |
|  | 해산장제급여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 복지부장관) <br> -수급권자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3 조, 동법시행규칙 제 17 조 <br> -수급권자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 조,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 |
|  | 의료급여경상보조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br>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제 10 조, 동법시행령 제 13 조 |
|  | 긴급복지지원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긴급복지지원법 |
|  | 자활사업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창업지 원,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 15 조, 동법시행령 제 17 조~제 21 조의 2 ) : × -자활지원(자활사업, 디딤돌사업, 자활센터운영(법 제 15 조의 2 , 제 16 조), 자활공동체(법 제 18 조) 등) : $\times$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자활소득공제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자활소득공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동법시 행규칙 제2조） <br> ※자활소득공제는 공제가 일정한 요건에서 마치 급 여처럼 사후 공제액이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로 지출구분에 포함 |
|  | 장애수당 | 구분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일반）장애수당 ：$\times$（장애인복지법 제 49 조제 1 항본문）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br> －생계급여수급 장애인：O（법 제49조제 1 항단서，동법 시행령 제 30 조） |
|  | 장애인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장애인연금： O （장애인연금법 제 5 조～제 7 조，시행령 <br> 제 2 조 제 4 조） |
|  | 의사상자 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의사상자보상금： O （의사상자예우지원법 제 8 조，제 9 조 $)$ <br> －의사상자의료급여： O （의사상자예우지원 법 제 11 조 ， <br> 의료급여법） <br> －의사상자교육급여： O （의사상자예우지원법 제 12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br> －의사상자장제급여： O （의사상자예우지원법 제 14 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영유아보육료지원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보육비용（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O （영유아보육법 제34조） <br> －무상보육특례（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 O （영유아보육법 제 35 조，동법시행령 제 22 조，제 23 조）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보육서비스이용권：$\times$（영유아보육법 제 34 조의 3 ）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보육시설 미이용 <br> 아동 양육지원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 보육수당: $\times$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  | 기초노령연금지급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 기초노령연금: O (기초노령연금법 제 3 조, 제 5 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5 조, 제 16 조) |
|  |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업운영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br>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 액) :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  | 차상위계층 지원 | $\times$ | o법률상 지출의무 근거 없음 <br>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당해 연도 보험료 예 상수입액의 100 분의 14 에 상당하는 금액) : O(국민 건강보험법 제92조) |
|  | 공교국가 부담금 보험료 | 인건비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br> - 공무원보험료국가부담금(소속기관(국가 또는 지자 <br> 체)이 $50 \%$ 부담) : O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 2 호) <br> - 교직원보험료국가분담금(국가가 $20 \%$ 부담) |
|  | 국립공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나주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목포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서울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부곡병원 <br>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의료원 건강보험 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재활원 건강 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국립춘천병원 건강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보건 <br> 복지부 <br> (국민 <br> 건강 <br> 증진 <br> 기금) | 부담금환급금 <br> 지원(국민건강 <br> 증진기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금: O (국민건강증진법 제 23조) <br> ※담배중 궐련 20개비당 354 원의 (국민건강 증진)부 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출담배 천재지변 훼 손, 반출담배 재반입시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 는 환급되는 것(지방세법 제63조제 1 항제 1 호 및 제2호)과 마찬가지로 이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도 환급됨(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 |
|  | 건강보험가입자 <br> 지원(국민건강 <br> 증진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금(한시특례): O(국민건강증 진법 부칙 제 2 조) <br>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2011년 12월 31일한) |
| 보건 <br> 복지부 <br> (국민 <br> 연금 <br> 기금) | 노령연금 급여지 급(국민연금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노령연금: O (국민연금법 제61조) |
|  | 장애연금 급여지 급(국민연금기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 장애연금: O (국민연금법 제67조) |
|  | 유족연금 급여지 급(국민연금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 유족연금: O (국민연금법 제72조) |
|  | 반환일시금지급 (국민연금기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 반환일시금: O (국민연금법 제77조) <br> - 사망일시금: O (국민연금법 제 80 조) |
| $\begin{gathered} \text { 보건 } \\ \text { 복지부 } \end{gathered}$ | 국제협력관리 | $\bigcirc$ | o 세계보건기구헌장 제7조, 제56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환경부 | 건강보험부담금 | 인건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br> - 공무원보험료국가부담금(소속기관(국가 또는 지자 <br> 체)이 $50 \%$ 부담) : O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 2 호) |
|  | 세입징수비용 <br> 교부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지방재정법 제 21 조제 2 항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위임시 경비교부 의무) <br> - 배출부과금: $O$ (대기환경보전법 제 35 조) <br> - 배출부과금: O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제 41 조) <br> - 수질개선부담금: O (먹는물관리법 제 31 조) <br> - 생태계보전협력금: O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br> - 폐기물부담금: O (자원재활용촉진법 제 12 조) <br> - 재활용부과금: $O$ (자원재활용촉진법 제 19 조) |
|  | 생태계보전 <br> 협력금반환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 $\times$ (자연환경보전법 제 50 조) |
|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강화 | $\times$ |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 4 조 제 4 항, 제 5 항, 제 22 조 제 2 항 <br> - 교토의정서 |
| $\begin{gathered} \text { 고용 } \\ \text { 노동부 } \\ \text { (자원 } \\ \text { 사업 } \\ \text { 특별 } \\ \text { 회계) } \end{gathered}$ | 진폐위로금 지급 <br> (광업분진)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진폐위로금: O (진폐근로자보호법 제 24 조, 제 25 조) |
|  | 건강진단 <br> (광업분진)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이직자건강진단비: O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 11 조 • 제 13 조 • 제 15 조) <br> ※다만, 건강진단비 중 '이직자건강진단비'는 지급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외 채용시 진단비 (법 제 10 조), 정기 진단비(법 제 11 조), 임시건강 진 단비(법 제 12 조)는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지급주체가 사업자임 |
| 고용 노동부 <br> (고용 <br> 보험 <br> 기금) | 고용유지지원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용유지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1 조) ※동법시행령(제19조)에서 의무화 |
|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신규고용촉진장려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3 조) ※동법시행령(제 26 조)에서 의무화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중소기업고용 } \\ & \text { 창출지원금 } \end{aligned}$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0 조) ※동법시행령(제 13 조, 제 16 조)에서 의무화 |
|  | 고용안정지원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용안정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1 조) <br> ※동법시행령(제 13 조, 제 14 조, 제 16 조, 제 22 조)에서 의무화 |
|  | 건설근로자고용 보험관리지원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4조) <br> ※동법시행령(제32조)에서 의무화 |
|  | 건설근로자퇴직 <br> 공제부금지원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4조) |
|  | 지역고용촉진 <br> 지원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지역고용촉진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시행령(제 24 조)에서 의무화 |
|  | 사업주능력개발 지원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7 조) |
|  | 근로자능력개발 <br> 지원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9 조) |
|  | 전직실업자취업 훈련지원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9 조 $)$ |
|  | 구직급여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직급여: O(고용보험법 제 40 조) |
|  | 취업촉진수당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기재취업수당: $O$ (고용보험법 제64조) -직업능력개발수당: O (고용보험법 제65조)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광역구직활동비: $\times$ (고용보험법 제66조) -조기재취업수당: $\times$ (고용보험법 제67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실업급여반환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과오납금 충당후 반환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 <br> 보험법 제23조) <br> ※ 과오납금 반환 |
|  | 고용안정 • 직업 능력개발반환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오납금 충당후 반환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23조) ※과오납금 반환 |
|  | 임신 - 출산후 <br> 계속고용지원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3 조) <br> ※동법시행령(제29조)에서 ‘임신•출산후 계속고 용지원금' 의무화 |
|  | 육아휴직장려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3 조) <br> ※동법시행령(제 30 조)에서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br>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의무화 |
|  | 직장보육시설지원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 직장보육시설지원: $\times$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 원법 제22조, 고용보험법 제26조) |
|  | 모성보호육아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육아휴직급여: O(고용보험법 제70조) -산전후휴가급여: O (고용보험법 제75조) |
|  |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3 조) <br> ※동법시행령(제 25 조)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무화 |
|  | $\begin{aligned} & \text { 임금피크제보전 } \\ & \text { 수당 } \end{aligned}$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고령자등고용촉진지원금: $\times$ (고용보험법 제 23 조) ※동법시행령(제28조)에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의무화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고용 } \\ \text { 노동부 } \\ \text { (산재 } \\ \text { 보험 } \\ \text { 기금) } \end{gathered}$ | 산재보험급여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요양급여: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br> -휴업급여: O (법 제52조) <br> -장해급여: O (법 제57조) <br> -간병급여: O (법 제61조) <br> -유족급여: O (법 제62조) <br> -상병보상연금: O (법 제66조) <br> -장의비: O (법 제 71 조) <br> -직업재활급여: O (법 제 72 조~제 75 조) |
|  | 산재보험료 반환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충당후 반환금: 고용보험및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br> ※ 과오납금 반환 |
| 고용 <br> 노동부 <br> (장애인 <br> 고용 <br> 촉진및 <br> 직업 <br> 재활 <br> 기금) | 장애인고용 <br> 장려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장애인고용장려금: $\times$ (장애인고용촉진법 제 30 조) |
|  | 부담금반환금 <br> (장애인고용 <br> 부담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장애인고용부담금 과오납금 충당후 반환금: 장애인 <br> 고용촉진법 제34조) <br> ※ 과오납금 반환 |
| 고용 <br> 노동부 <br> (임금 <br> 채권 <br> 보장 <br> 기금) | 체당금지급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체불임금대지급: O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  | 반환금 지급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담금과오납금반환: O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과오납금 반환 |
| $\begin{gathered} \hline \text { 고용 } \\ \text { 노동부 } \end{gathered}$ | 국제기구협력지원 | $\bigcirc$ | o 국회비준 및 의무화 <br> - ILO 헌장 제 13 조 |
| 기상청 | WMO 국가분담금 | $\bigcirc$ | o 국회비준 및 의무화 <br> - WMO 협약 제24조 <br> - WMO 총회 $(15$ 차, 2007$)$ 결의안 40 <br> - WMO 집행위원회(62차, 2010) 결의안 22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교육 <br> 과학 <br> 기술부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 o 지출의무 및 금액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  | 중앙과학관 건강 보험부담금(손익 계정)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과천과학관 건강 보험부담금(손익 계정)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연금급여 |  | -연금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제 42 조 (공무원연금법 준용) |
|  | 재해보상급여 |  | -재해보상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33 조, 제 42 조 |
|  | 퇴직수당급여 |  | -퇴직수당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제42조 |
|  | 국고대여학자금 융자 |  | -교직원복지증진위탁사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 조의 3 , 동법시행령 제 96 조제 1 호(학자금대여사업 의 국가부담 명시) |
|  | 국제핵융합실험로 <br> (ITER) 공동개발 <br> 사업 (일반회계) | $\times$ | o 국내법 및 비의무 <br>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 구개발사업의 추진) (1) <br>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 14 조(국제협력의 촉진) o 국회비준 및 비의무 <br> - 조약 제 1884 호 제 8 조(국제핵융합실험로 기구의 자 <br> 원) 1항 - 가,나,다 <br> o 하위규정 의무화 <br>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 규정 제4조(예산지원 등) |
|  | 국제핵융합실험 로(ITER) 공동개 발사업 (원기금) | $\times$ | o 국내법 및 비의무 <br>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 구개발사업의 추진) (1) 항 |
| $\begin{gathered} \text { 국가 } \\ \text { 보훈처 } \end{gathered}$ | 보상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독립유공자보상금: O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2 조) <br> -국가유공자보상금: O (국가유공자예우법 제 12 조) |
|  | 간호수당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유공자간호수당: O(국가유공자예우법 제 15 조)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소관 <br> 부처 | 사업명 | 의무 지출 <br>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
| :--- |
| -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 $\times$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
| 14 조) |
|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times$ (국가유공자예우법 제 |
| 14조) |


| 소관 <br> 부처 | 사업명 | 의무 지출 <br>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민영교통시설 <br> 이용보조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독립유공자 수송시설이용지원금: $\times$ (독립유공자예 <br> 우법 제22조) <br> -국가유공자 수송시설이용지원금: $\times$ (국가유공자예 <br> 우법 제66조) <br>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수송시설이용지원금: $\times(5.18$ <br> 민주유공자예우법 제58조) <br> $-ㅌ ㅡ ㄱ ㅅ ㅜ ㅇ ㅣ ㅁ ㅁ ㅜ ㅅ ㅜ ㅎ ㅐ ㅇ ㅈ ㅏ ~ ㅅ ㅜ ㅅ ㅗ ㅇ ㅅ ㅣ ㅅ ㅓ ㄹ ㅇ ㅣ ㅇ ㅛ ㅇ ㅈ ㅣ ㅇ ㅝ ㄴ ㄱ ㅡ ㅁ: ~$$\times($ 특수임무 |  |
| 수행자지원법 제73조) |  |  |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 -특수임무수행자 진료위탁비: O (특수임무수행자지 원법 제32조•제33조) <br>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위탁비: O (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제7조) <br> -제대군인 진료위탁비:O(제대군인지원법 제20조) |
|  | 보훈병 원진료 (감면진료)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독립유공자유족 - 가족 의료비 감면: O(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7조) <br> -국가유공자등 의료비 감면: O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1조•제42조, 동법시행령 제64조) <br>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등 의료비 감면: $\mathrm{O}(5.18$ 민주 유공자예우법 제33조•제34조) <br> -특수임무수행자등 의료비 감면: O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제 32 조 • 제 33 조) <br>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O (엽제후유의증환자지 원 법 제7조) <br> 토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기타 (가족 • 유족 등) 의료비 감면은 없음 |
|  | 보철구지급 | 구분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비: O(국가유공자예우법 제 43조의2) <br>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지급비: $\times$ ( 5.18 민주유 공자예우법 제 35 조) <br> -특수임무수행자 보철구지급비: $\times$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제34조) |
|  | 고엽제환자검진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비: O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지원법 제30조) |
|  | 재대군인 수업료 보조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제대군인 입학금 • 수업료감면: $\times$ (제대군인지원법 제19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국가유공자 LPG <br> 차량지원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국가유공자 LPG 차량지원: $\times$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 별회계법 제 5 조, 동법시행령 제 3 조) |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보상금: O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2 조) <br> -사망일시금: O (독립유공자예우법 제13조)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생활조정수당: $\times$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4 조) <br> -교육지원: $\times$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5 조) <br> -취업지원: $\times$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6 조) <br> -생업지원: $\times$ (독립유공자예우법 제 16 조의 2 ) |
|  | 국가유공자등대부 | 구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장기저리대부: O(국가유공자예우법 제 46조) <br>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기저리대부: $\times$ ( 5.18 민주유 공자예우법 제 33 조•제 39 조) <br> -특수임무수행자 장기저리대부: $\times$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법 제 38 조) <br> -제대군인 장기저리대부: $\times$ (제대군인지원법 제 21 조) |
| 금융 <br> 위원회 | 농어가목돈 마련 <br> 저축 장려기금출연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출연금: O <br>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제7조) |
| 문화 <br> 체육 관광부 | 체육인복지사업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기력향상연구연금: O <br>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 동법시행령 제 15 조) <br> -지도자장려금: O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 동법시 행령 제 15 조) <br> -원로체육인 생활보조금: O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 동법시행령 제 15 조) |
|  | 장애체육인 <br> 복지사업 |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경기력향상연구연금: O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 동법시행령 제 15 조)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 －지도자장려금： O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동법시 행령 제 15 조） <br> －원로체육인 생활보조금： O （국민체육진흥법 제 14 조， 동법시행령 제 15 조） |
|  | 관광외교역량강화 | $\bigcirc$ | －세계관광기구（UNWTO）규정 가입비준 동의안 ‘예 산과 지출＇제 25 조 $1,2,3,5$ 항 <br> －관광진흥법 47 조（관광정보 활용 등） <br>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1），（2） |
| 여성 <br> 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 구분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지원：O <br>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법 제 2 조 • 제 4 조， 동법시행령 제 5 조） <br>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br>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br> 3．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br> 4．간병인 지원 <br> －국적회복지원（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법 11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16 조의 2 ） <br> 띠기타 기념사업（제11조）등은 재량지출임（확인 • 구분 필요） |
| 방송 <br> 통신 <br> 위원회 | UN ESCAP ICT 개발센터지원 | $\bigcirc$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발을 위한 정보 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위한 행정 및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 제 1 조，제 11 조의 $1 \cdot 2$ 항， 제 12 조，제 16 조 |
|  | 국제기구부담금 | $\times$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4（파견근무） <br> －공무원임용령 제 41 조（파견근무） |
| 문화 <br> 재청 | 문화재국제교류 | $\times$ | o 세계유산보호협약 분담금 <br>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 16 조 |
|  |  | $\times$ | o 무형유산보호협약 분담금 <br> －무형유산보호협약 제26조 <br> （기금에 대한 당사국의 분담금） |
|  |  | $\bigcirc$ | o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ICCROM）분담금 <br>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br> （ICCROM）규약 제 2조 5항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times$ | o세계자연보전연맹 분담금 <br> - 세계자연유산보전연맹IUCN 규약(Statues) 제12조 <br>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22 조 ~ 25 조 |
|  |  | $\times$ | o 북한고구려고분 보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br> - 한국-유네스코 간 신탁기금 합의서 |
|  |  | $\times$ | o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 <br> - 세계유산보호 신탁기금 |
| 지식 <br> 경제부 | 건강보험부담금 (우특) | 인건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공무원보험료국가부담금(소속기관(국가 또는 지자 체)이 $50 \%$ 부담) : O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 2 호) |
|  | 주파수회수 및 <br> 재배치 손실보상 <br> (정진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파수회수및재배치 손실보상: O(전파법 제7조, 동 법시행령 제 8 조•제 9 조 •제 10 조•제 101 조) ※손실보상 |
|  | 발전소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전력기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times$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 10 조, 동법시행령 제 11 조 • 제 18 조•제 19 조 - 제 24 조 • 제 25 조) <br> ㄸ경직성 지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 특별지원사업 (전력기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times$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 10 조, 동법시행령 제 11 조 • 제 18 조 • 제 22 조•제 24 조 - 제 25 조) <br> ■경직성 지출(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
|  | 국제기구분담금 | $\bigcirc$ | o 국제미터협약 <br> - 국제미터협약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부속규칙 제 6조 |
|  |  | $\bigcirc$ | o국제법정계량기구 재정규칙 <br> - 재정규칙 제 3 조(FINANCIAL PROVISIONS) |
|  |  | $\times$ | o국제 납 - 아연 연구그롭 절차규정 <br> - 국제 납 - 아연 연구그룹 절차규정 제9조 |
|  |  | $\times$ | o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 <br>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 Section 4 - Financial Obligations of Members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bigcirc$ | o섬유수출개도국기구 협정 <br> (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br> - 국제섬유의류기구 설립약정 제 13 조(예산), <br> 제14조(자발적 기여금) |
|  |  | $\bigcirc$ | OOECD 조선잡업반예산분담계획 <br> - OECD조산잡업반예산분담계획 Article 9, Article 20-2 |
|  |  | $\bigcirc$ | o국제사탕기구(ISO) 협정 <br> - 국제사탕기구(ISO) 협정 제7장 재정-제 28 조(경비), 제 24 조(운영예산의 채택 및 회원국의 분담금), 제 26 조(분담금의 지불) |
|  | 에너지국제기구 분담금(예특) | $\bigcirc$ | o 국제에너지협정(IEP) <br> - 국제에너지협정(IEP) 제64조(FINANCIAL <br> ARRANGEMENTS) |
|  |  | $\times$ | o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 규정집 <br> - CCOP 분담금에 관한 규정 9.1 <br> (Member Country Contributions) |
|  |  | $\bigcirc$ | o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설립규정 <br>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설립규정 Article XII <br> The budget A,B,C |
|  | 우정사업해외 활동(우특) | $\times$ | oUPU <br> - 만국우편연합조약(2008 UPU 제네바총회 조약) 제 4 장 재정 제 128 조 (연합경비의 책정과 규제) 8-13항 |
|  |  | $\times$ | oAPPU <br> - APPU (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총칙) 제 4 장 재정 제 116 조(분담등급) 1,2 , 제 117 조(연합의 예산과 회계) 6 |
|  |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지원 (전력기금) |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신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지원: $\times$ (전기사업법 제 48 조 • 제49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0 조) |
| 특허청 | 국제핵융합 <br> 실험로공동개발 <br> (전력기금) |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times$ (핵융합에너지개 발진흥법 제 8 조, 동법시행령 제9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건강보험부담금 | 인건비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 시행규칙 -공무원보험료국가부담금(소속기관(국가 또는 지자 체)이 $50 \%$ 부담) : O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2호) 투공무원 인건비, 연금, 부조금, 보험금 등> "국가 기능유지" 경비로서 재량지출(경직성 지출) |
|  | WIPO 의무분담금 | $\times$ | - WIPO 설립협약 제 11 조(재정) 제 4 항 |
| 국토 <br> 해양부 | 공익서비스 (PSO)보상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철도공익서비스보상: O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 32 조•제 33 조, 동법시행령 제 40 조) |
|  | 하천편입토지보상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O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 조치법 제 2 조 • 제 3 조•제 6 조) <br> ※손실보상 / 2013년 12월 31일 청구권 소멸. |
|  | 연안화물선 <br> 유류비보조 <br> (에특)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지원사업: $\times$ (에너지 및 지원 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
|  | 건강보험부담금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공무원연금 부담금 |  | -공무원연금법 제19조 |
|  | 건강보험금 (대산청)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재건축초과 <br> 이익자본이전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br> -재건축초과이익 지방자치단체지원금: O (재건축초 과이익환수법 제4조) <br> 툭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의 100 분의 50 , 지 자체별 일부 조정(동시행령 제3조) |
|  |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출연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times$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56조제2항) |
| $\begin{gathered} \text { 농림 } \\ \text { 수산 } \\ \text { 식품부 } \end{gathered}$ | 쌀소득보전고정 직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br>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O(쌀소득보전법 제4조• <br> 제 5 조•제 6 조•제 9 조•제 10 조) <br> 또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 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고려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경영이양직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WTO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생산자 지원 ：$\times$（세계무 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제 12 조에서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의무화 |
|  | 조건불리지역직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WTO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생산자 지원：$\times$（세계무 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제 32 조에서 ‘조건불리보조금’ 의무화 |
|  | 경관보전직불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WTO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생산자 지원：$\times$（세계무 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제 39 조에서 ‘경관보전보조금＇지급 의무화 |
|  | 친환경농업직불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times$（친환경농업육성 법 제19조） <br> 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제 22 조에서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의무화 |
|  | 농어민건강 연금보험료 | $\times$ | o법률상 지출 임의규정 <br> －농어민건강연금보혐료 지원：$\times$（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br>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O （쌀소득보전법 제 11 조） 티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 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고려 |
|  | FAO （유엔식량농 업기구）：국제연 합식량농업기구 헌장 | $\times$ | － FAO （유엔식량농업기구）헌장 제18조 예산과 분담 금 2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IFAD (국 제농업 개발기금) : 국제 농업개발기금설 립협정 | $\times$ | -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제 10 절 운영예산 |
|  | WFP (세계식량 기구) | $\times$ | - 61 년 UN 총회 결의 1714호 I 의 8 |
|  | AARDO(아프리 카아시아농업개 발기구)-아프리 카-아세아농촌재 건기구헌장 | $\bigcirc$ | - AARDO 헌장 제8조 1항 |
|  | OIE (국제수역사 무국) : 파리소재 국제수역사무국 창설에관한국제 협정 | $\times$ | - OIE 협정 부속서(정관) 제11조 <br> - OIE 조직규정 제 14 조(재원) |
|  | UPOV(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 : 식물신품종보호 를위한국제협약 | $\times$ | - UPOV 91 협약 제 29 조 재정 제 2 항(분담금: 단위), 제 3 항(분담금: 각 회원의 몫) 가, 나 |
|  | IGC(국제곡물이 <br> 사회) : 곡물무역 협약 | $\times$ | - 곡물무역협약 제 21 조 재정 1 |
|  | ITPGRFA(식물유 전자원조약) : 식 량 및 농업을 위 한 식물유전자원 에 관한 국제조약 | $\times$ | - FAO (식물유전자원조약) 제 18 조(재원) 3 , 4항 -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 |
|  | FAO 한국협회 | $\times$ | **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분담금아님 <br> -UN/FAO 총회 의결사항(1951년, 23/51) <br> -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1970. 7. 9. 대통령령 제 5178호) 제3조(보조대상) (1). 17. FAO 사업조성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 - '98 기획예산위원회의 "보조단체 경영혁신작업 검 토" 결과 "FAO 한국협회는 국제기구(UN/FAO)와의 협약사항 이행사업임을 확인하고 위탁사업에 대해 적정 소요예산 지원"토록 결정 |
|  | AARDO 극동지역 사무소 : 극동지역 사무소설치에 관 한 협정 | $\times$ | - 극동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협정 제 5 조의 2 |
|  | APPPC(아태지역 식물보호 기구) | $\times$ | - APPPC 협정문 제11조 |
|  | IPPC(국제식물보 호협약) | $\times$ | - 신탁기금 제공 |
|  | IDF (국제낙농연맹) | $\times$ | - IDF 정관 제4조 4항 |
|  | WCPFC (중서부태 평양수산위원회) | $\bigcirc$ |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약 제 18 조 |
|  | IATTC(전미열대 참치위원회) | $\times$ | - 전미열대참치위원회 설립협약 재정규정 제3조 6항 |
|  | ICCAT(대서양참 치보존위원회) | $\times$ | - 대서양참치보존을 위한 협약 제 10 조 |
|  | IOTC(인도양참 치보존위원회) | $\times$ | - 인도양참치위원회 설립협정 제 13 조 |
|  | CCSBT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 | $\times$ | -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 제 11 조 |
|  | IWC(국제포경 위원회) | $\bigcirc$ | - 국제포경규제협약 D E F |
|  | NAFO(북서대서 양수산기구) | $\bigcirc$ | - 북서대서양수산기구 협약 제 16 조 |
|  | NPAFC(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 | $\bigcirc$ |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협약 제8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13.수입양곡대 | $\bigcirc$ | - 쌀협상 이행계획서LX-대한민국 <br> 제1부 : 최혜국대우 관세 <br> 제 1 장 : 농산물 <br> 제 1 부 B : 할당관세 |
| 산림청 | 1.건강보험부담금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2. 공무원연금 부담금 |  | -공무원연금법 제19조 |
| 국방부 | 1.건강보험부담금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2.건강보험부담금 (국방홍보원)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3.건강보험부담금 (국군인쇄창)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4.민간보상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br>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O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제 6조, 동법시행령 제 12 조) <br> $-10 \cdot 27$ 법난 피해자 상이보상: $\mathrm{O}(10 \cdot 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법 제 5 조, 동법시행령 제 10 조) <br> -삼청교육피해자 유족보상: O (삼청교육피해자보상 법 제4조) <br> -삼청교육피해자 상이보상: O (삼청교육피해자보상 법 제5조) |
|  | 5.퇴직급여 | 인건비 | -군인연금법 제6조 • 제 10 조 • 제 18 조 |
|  | 6.퇴직수당 |  | -군인연금법 제 30 조의 4 |
|  | 7.재해보상급여 |  | -군인연금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5조•제66조• 제66조의 $2 \cdot$ 제67조 |
|  | 8.군간부 전세자금 대부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군간부전세자금 대부: $\times$ (군인복지기금법 제 6 조제 4 호 $)$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에서 "군인에 대한 대부"를 기금의 용도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것으 로 군간부전세자금대부의 직접 지출의무가 발생 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군인복지기본법」 제9 조에서 군인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제공 의무화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9．학자금 대부 | $\times$ | o 법률상 지출 임의규정（직접 지출근거 $\times$ ） <br> －학자금 대부：$\times$（군인복지기금법 제 6 조제 4 호） <br>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제4호에서＂군인에 대한 <br> 대부＂를 기금의 용도로 적시하고 있으나，이것으 <br> 로 학자금대출대부의 직접 지출의무가 발생한다 <br> 고 볼 수 없음 |
|  | 12．주한미군 인건비 | $\bigcirc$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 |
|  | 13．군사시설개선 | $\bigcirc$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 정 제 5 조 |
|  | 14．연합방위력 증강 | $\bigcirc$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 5 조 |
|  | 15．군수지원 | $\bigcirc$ |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 정 제 5 조 |
|  | 17．기타파병활동 | $\bigcirc$ | －해외파병 국회동의안 |
|  | 18．PKO파병 | $\bigcirc$ | －해외파병 국회동의안 |
|  | 19．연합토지관리 계획（LPP） | $\times$ |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
| 병무청 | 1．건강보험 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방위 <br> 사업청 | 1．건강보험 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대법원 | 1．국선변호료지원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법원규칙 <br> －국선변호인보수：O（형사소송비용법 제8조，「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  | 2．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법원규칙 <br> －가족관계등록사무비용： O （가족관계등록법 제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 3．건강보험 부담금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4．연금부담금 지원 |  | －공무원연금법 제19조 |
| 헌법 재판소 | 1．국선대리인보수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지출규모 헌법재판소 규칙 <br> －국선대리인보수：O（헌법재판소법 제70조，${ }^{\text {r헌법재 }}$ 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중앙 <br> 선관위 | 1. 정당보조금 | $\bigcirc$ | o 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당보조금: O (정치자금법 제 25 조) |
| 법무부 | 1.형사보상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구금보상금: O (형사보상법 제4조) |
|  | 2. 범죄피해구조금 | $\bigcirc$ | o지출의무 법정, 지출규모 법률 및 시행령 <br> -형사피해 구조금: O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16 조) |
| 경찰청 | 1.면허단건강 보험부담금 | 인건비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2.경찰병원건강 보험부담금 |  | -건강보험법 제67조 |
|  | 3. 공무원연금 부담금(경찰 병원) |  | -공무원연금법 제 19 조 |
| 외교 통상부 | 유엔 헌장 | $\bigcirc$ | - 유엔헌장 제17조 1,2 |
|  | 유엔평화유지 <br> 활동분담 (PKO) | $\bigcirc$ | - 유엔헌장 제 17 조 <br> - PKO 분담금 관련 총회 유엔 결의안 규정 |
|  | $\begin{aligned} & \text { 국제연합공업개발 } \\ & \text { 기구 (UNIDO) } \end{aligned}$ | $\bigcirc$ | - UNIDO 헌장 Article 15(Assessed contributions) 1, 2 |
|  | 국제해양법 재판소 | $\bigcirc$ |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9조 (재판소의 경비) 1 |
|  | 경제협력개발 <br> 기구 분담금 | $\bigcirc$ |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 20 조 1,2 <br> - 대한민국에 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 가입초청협정 <br>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무수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 수락의 일반선언 1,7 |
|  | OECD 철강위원회 및 개발센터 | $\bigcirc$ |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20조 1,2 <br> - 대한민국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 가입초청협정 <br>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무수락에 관 한 대한민국 정부의 선언문 수락의 일반선언 $1,6,7$ |
|  | OECD 교육연구 혁신센터 | $\bigcirc$ | -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BD INNIVATION GOVERNING BOARD의 제56차 회의 내용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비엔나협약 신탁 기금 - 오존층 보 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 $\times$ | - Decision VCVIII/3: Vienna Convention Trust Fund for Financing Activities on Research and Systematic Observations Relevant to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
|  | 사막방지협약 | $\times$ | -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Article 20(Financial resources) 1, Article 21(Financial mechanisms) |
|  | 아시아•아프리카 <br> 법률 자문위원회 | $\bigcirc$ | - 위원회 규칙 10. 재정 (1),(2),(3) <br> - Statutes of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STATUTES OF THE COMMITTEE Article 6 |
|  | 오존층 파괴물질 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 $\times$ |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Montreal, 16 September 1987) Article 13(Financial Provisions) 1, 2 |
|  | 콜롬보플랜 부담금 | $\bigcirc$ | - 콜롬보계획 기술협력 이사회 헌장 <br> B. 기구 11,13 |
|  | 콜롬보 플랜 기술 교육 대학 | $\times$ | - 기술교육대학 MOU <br> - PARTICIPATION 5, 6 <br> - BASIC OPERATING COSTS 26, 27 |
|  | 남극 해양생물 <br> 보전위원회 | $\times$ |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ARTICLE XI X, 3 . |
|  | 국제해저기구 | $\bigcirc$ | - 국제해양법에관한협정 <br> -제2관 총회 제 160 조(권한과 임무) 2(e) <br> -제 6 관 해저기구의 재정 제 171 조(해저기구의 자금) |
|  | 세계민간항공기구 | $\bigcirc$ | -ICAO 협약 CHAPTER XII FINANCE Article 61 (Budget and apportionment of expenses) |
|  | 남극조약사무국 <br> 분담금 | $\times$ | - 남극조약사무국 Measure 1(2003) Secretariat of the Antarctic Treaty Article 4(Budget) 3. |
|  | 재한유엔기념 묘지위원회 | O | - 재한국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 제 1 조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  | -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ometary in Korea Regulation 6-1, 부속서 B |
|  | 유엔본부건물 개축계획 | $\times$ | - 유엔헌장 제 17 조 <br> - 유엔본부 개축 계획(Capital Management Plan) 총회 결의문 |
|  | 국제해사기구 | $\bigcirc$ | - IMO 협약 9장 39-42조 |
|  | 국제원자력기구 | $\bigcirc$ | - 국제원자력기구협약 제 5 조(총회) B, E, 제 14 조(재 정) $\mathrm{A}, \mathrm{H}$ |
|  | 화학무기금지기구 | $\bigcirc$ | -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 협약 제8조(기 구) I . 일반 규정 7 |
|  | 포괄적 핵실험 금지 | $\bigcirc$ |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제2조(기 구) I . 일반규정 9 |
|  | 바세나르체제 | $\times$ | - 바세나르체제 기본문서 VII. Meetings and Administration 1, 2 <br> - 2009 바세나르체제 총회 결정사항 |
|  | 생물무기금지 <br> 협약당사국회의 | $\times$ |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 12 조 <br> - 2009년 당사국회의 |
|  | 특정재래식무기 당 <br> 사국총회 및 지뢰 <br> 의정서 준비회의 | $\bigcirc$ | - CCW(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협약 Article 8(Review and amendments) 1.(a) - 2009년 당사국총회 |
|  | NPT 평가회의 - 핵 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 $\bigcirc$ |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8조 (3) <br> - 2010년 NPT 평가회의 Financial arrangements 25. |
|  | 국제이주기구 | $\times$ | - 국제이주기구 규정 CHAPTER VIII - FINANCE Article 25 1, 2, 3 |
|  | 국제형사재판소 | $\bigcirc$ |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 115 조 (재판소 및 당사국총회의 기금 ) 가(당사국이 납부한 산정 된 분담금), 제 117 조 (분담금의 산정) |
|  | 국제사법통일 연구소 | $\times$ |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 규정 제 16 조 제 1 항 개정 1. |


| $\begin{aligned} & \text { 소관 } \\ & \text { 부처 } \end{aligned}$ | 사업명 | 의무 지출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헤이그국 제사 법 회의 분담금 | $\times$ |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규정 제 9 조 $1,2,3$ |
|  | 상설중재재판소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bigcirc$ |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 50 조 |
|  | 베니스 위원회 | $\times$ | -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VENECE COMMISION) <br> - RESOLUTION RES (2002) 3 ADOPTIONG THE REVISED STATUTE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Article 6, 1. |
|  | 국제사실조사 <br> 위원회 | $\times$ | - 1949년 8월 12 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 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 1 의 정서) 제 90 조 7 . |
|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times$ | - The 22nd APEC Ministerial Meeting Joint Statement 57. |
|  | 세계무역기구 | $\bigcirc$ |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7조 예 산 및 분담금 4. |
|  | 개도국간 특계 무역을 통한 협력 (GSTP) | $\times$ | - 개발도상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 및 제반 선 언문(멕시코 실행 계획(1976) <br> - 아슈라 선언(1979) <br> - 카라카스 선언(1981) <br> - STP 각료선언(1982) <br> - 뉴델리 각료선언(1985) <br> - 브라질리아 각료선언(1986) <br> - 테헤란 선언(1994) 등 <br>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 Preamble <br> Article 1(definitions) <br> - TEHRAN DECLARATION ON THE LAUNCHING OF THE SECOND ROUND OF NEGOTIATIONS WITHIN THE GSTP 6, 7 |
|  | 중앙아시아학술 연구소 | $\times$ | -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제 12 조(재 정) (가) 회원국의 분담금 |


| 소관 <br> 부처 | 사업명 | 의무 지출 <br> 여부 | 판단근거 및 쟁점 |
| :---: | :---: | :---: | :---: |
|  | 유엔교육과학 <br> 문화기구 | $\bigcirc$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 제9조（예산）2． |

2．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국내법 분야）
（1）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례

아래 사례는 해당 법률에서 지출을 의무화하고，법률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규모를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사례 1］＂제주도개발 사업특별회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 권수입금의 $35 \%$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회계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그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동법 시행령에서 100 분의 17.267 으로 정하고 있는 바，이는 법률에서 지출 의무를 정하고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정하는 의무지출에 해당된다．
［사례 2］＂생계급여＂는 전형적인 의무지출의 형태를 보이는데，생활 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생계급여가 명시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례 3］의 농림수산식품부＂쌀소득보전고정직불＂도 전형적인 의무 지출의 형태이다．즉，「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 상（形狀）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지급액 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법，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지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령（하위규정）에서 지출규모를 정하는 의무지출 입 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그 규모에 대해서도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하 도록 하고，농림수산식품부 고시（「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 금액」）를 통해 단위면적당 지급금액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진흥지역밖 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사례 1】
사업명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기획재정부）
$\square$ 사업목적
○ 복권수익금 지원을 통해 제주자치도의 관광 진흥 및 개발사업 지원
$\square$ 사업내용

| 구 분 |  |
| :---: | :--- |
| 사업기간 | 내 용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 |
| 지원조건 |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br> ㅇ 복권수입금의 $35 \%$ 중 $17.267 \%$ 를 법정배분금으로 배분 |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 1 차산업 경쟁력강화 및 소득보장사업 ：농어업인에 대한 대출 금리 이차 차액 보전사업을 위한 사업비 15,899 백만원 요구
－지원조건 및 농어업인 생산유통 안정자금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를 감안하여＇ 09 년 일반회계 $1 \%$ 반영요구
－산출기초 ：제주특별자치도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1 \%$ 수 준 반영
＊지원규모 확대 ：융자한도액 확대（5천만원 $\Rightarrow 1$ 억원）
＊지원확대 ：자격요건 완화（거주 또는 설립경과기간 6월 $\Rightarrow$ 3월）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458 백만원 요구
－산출내역 ：67，645백만원 $\times$ 지자체 부담분 $50 \%$（ 33,823 백만원） 중 20,458 백만원
$\square$ 근거 법령

| 지출의무 | 법률（O）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square$ 복권 및 복권기금법 |  |
| 제23조 제1항（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1）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 분의 35 |  |
| 는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  |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
| 지출규모 |  |
| 법률（ ）시행령（ O ）시행규칙（ ） |  |
| $\square$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br>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분비율은 다 <br> 음 각 호와 같다． <br> ＜1．6．생략＞ <br>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260조에 <br>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 분의 17.267$\quad$. |  |

【사례 2】사업명 : 생계급여(보건복지부)사업목적
○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square$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61년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규모 | 1,632 천명 (일반수급자 1,545 천명, 시설수급자 87 천명) <br> /925천 가구 |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 단체 |근거 법령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squ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급여의 종류) (1)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생 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2)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 1 항제 1 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 항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 은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4호 및 제 7 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 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 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생계급여의 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 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 1 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 게 직 접 지급한다. 다만, 제 10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 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 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게 자 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1)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한다. 다만, 수급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의 보장시설 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 여 행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제 1 항제 2 호의 주거급여가 행하 여진 것으로 본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6 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법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 일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squ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6 조(생계급여의 지급방 법) (1)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 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 일 이후인 때에 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을 지급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 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 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2. 입소일이 16 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 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 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3)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 계급여 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 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16 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이 를 지급한다.
(4)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 을 지급한다.
[사례 3]
$\square$ 사업명 : 쌀소득보전고정직불(농림수산식품부)
$\square$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square$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2001~계속 |
| 총사업비 | - 억 원 |
| 사업규모 | '11년 890천ha(62,300백만원)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br>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 98 ~' 00 년 기간동 안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실 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하면 농지의 형상 및 이행사항 기준을 점검 하여 충족하는 경우 고정직불금 지급 ○ 지자체 보조, 국고 $100 \%$ |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 - 군 - 구청장) |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 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623,000 백만원 요구

- '10년 신청면적(890,604ha, ' 10.6 월 현재)기준으로 고정직불 금 대상면적을 감안하여 ' 10 년 대비 $6.3 \%$ 감액 요구
- 산출내역 : 지급 예상면적(890천ha) $\times$ 지급단가(700천원/ha) ※ 고정직불금 단가: 700천원 $/ \mathrm{ha}$ (진흥 746 , 비진흥 597 )
$\square$ 근거 법령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 9 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1）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 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 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방 법，그 밖에 지급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O）시행규칙（O）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1）법 제9조제 1 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 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 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 여 산정한다．
（2）제 1 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제 28 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되，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3）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 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square$ 농림수산식품부 고시（「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bigcirc$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 원 $/ \mathrm{ha}\left(10,000 \mathrm{~m}^{2}\right)$
－농업진흥지역 밖：597，000원／ha（ $\left.10,000 \mathrm{~m}^{2}\right)$
부칙＜제2009－320호，2009．9．14＞
1．（시행일）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6월 25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아래의 사례는 법률에서 해당지출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아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다. [사례 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 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 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 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정부 로 하여금 고령자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재정지출) 을 강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할 뿐이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이라는 특정지출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비록 동법시행 령 제26조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재량지출과는 그 경직성 여부에서 차이점을 나타낼 뿐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재량지출)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사례 5]의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경우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서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 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지 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제 5 호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아 니하는 소득보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영이양보조금을 명 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자 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 보조금

을 지급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사 례 3]의 경우와 구분된다.

【사례 4】
$\square$ 사업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square$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 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 직 예방
$\square$ 사업내용
○ 고령자, 여성가장, 출산여성, 청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 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도모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사업 <br> 기간 | 2004년~계속 |  |  |
| 총사 <br> 업비 | 1,266억 원(09년) |  |  |
| 사업 <br> 규모 | 44천명(09년) |  |  |
| $\begin{aligned} & \text { 지원 } \\ & \text { 조건 } \end{aligned}$ | - 직접수행 |  |  |
|  | 구 분 | 지 원 대상 | 지원수준 |
|  | 청년 |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 로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29 세 이하의 자로서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알선 을 통해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최초 6월간 54만원, 이 후 6월간 36 만원(제조 업은 최초 6월간 72만 원, 이후 6월간 36 만원) |
|  | $\begin{aligned} & \text { 장기 } \\ & \text { 구직자 } \end{aligned}$ | 취업대상자 또는 장기구직자(실업기간 6월) 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사업주 | 최초 6월간 72만원, <br> 이후 6 월간 36 만원 |

근거 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squar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3 조에 따라 별표 1 에 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 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 5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 개월부터 고용 후 12 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 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 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 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 제 1 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 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 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 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3)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4) 제 1 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20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 으

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 1 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 1 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 명 이상인 경우: 30 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 명 이상 10 명 미만인 경우: 3 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 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30 (피보험자수가 1 명 이상 10 명 미만인 경우 3 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 분 의 30 이 30 명을 초과하는 경 우 30 명으로 한다)
(5)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 5】

사업명 : 경영이양직접지불(농림수산식품부)$\square$ 사업목적
ㅇ 농업경영 조기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화고,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square$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97 ~계속 |
| 총사업비 | -억원 |
| 사업규모 | '09년 8,290ha, 32,429백만원(직불금 26,888, 사업운 영비 5,541$)$$\quad 10$ 년 10,000ha, 69,884백만원(직불금 63,564, 사업운영비 6,320) |


| 구 분 | 내 용 |
| :---: | :---: |
| 지원조건 | 지원내용 <br>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 \sim 70$ 세 농업인 이 지급대상 전•답•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 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 대위탁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br> 지원단가 : 매도 • 임 대 동일하게 ha당 연 300 만원(매월 25 만 원 지급) <br> 지급기간 : 신청연령에 따라 $6 \sim 10$ 년(ha당 월 25 만원씩 분할 지급) <br> ○ 수혜자 : 농업경영 조기은퇴농업인과 전업농 등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근거 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2)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 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square$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4 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 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출규모 $\quad$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

## $\square$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6 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 28 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 • 답 • 과수원

2．「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전 • 답 • 과수원
제 7 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 12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 할 것
가．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 적 이하의 농지
나．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제 12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 8 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1）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 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 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 1 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3．법률상 의무화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국제법 분야）

（1）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사례

【사례 6】
$\square$ 사업명 ：수입양곡대（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목적
○＇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11 년도분 MMA쌀（353천톤） 의무 도입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 }^{\prime} 95 \sim$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 }^{\prime} 05$ 년 205,228톤에서 ${ }^{\prime} 14$ 년 408,700톤까지 매년 수입량 증량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square$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수입양곡대 : WTO 쌀 재협상에 따라 '11년도분 가공용 270천톤 의무 도입

- 산출 내역 : 매입물량 $\times$ 단가 $\times$ 환율 $(1,150$ 원 $)$
- 수입물량 : 270,401톤(가공용)
- 도입 가격 : 가공용 $737 \$ /$ 톤(07-09년 3개년 평균 낙찰가 기 준 가격상승율 고려, 곡종별 평균가격)

○ 민간위탁금 : WTO 쌀 재협상에 따라 '11년도분 밥쌀용 104천 톤 의무 도입 및 판매 사업비

ㅇ 수입쌀 해외시장조사비 : MMA수입쌀 매입지원을 위한 사업비 374백만원 요구
$\square$ 근거 법령
WTO 농업협정 ; UR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1) 이행계획서

이행계획서LX-대한민국
제 1 부: 최혜국대우 관세
제 1 장 : 농산물

## 제 1 부 B : 할당관세

1. 아래 표 제 3 항과 제 4 항에 명시된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2005년부터 2014년 간 매년 균등하게 증가한다.
2. 쌀에 대한 특별대우 검증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 년간 연장된다. 이행기간 5 년 차에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증을 실시한다.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5,228톤(도정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간 수 입실적에 근거하여 다음 회원국들에 게 할당된다 (국별할당)
중국 116,159 톤 (도정기준)
미국 50,076 톤 (도정기준)
태국 29,963톤 (도정기준)
호주 9,030 톤 (도정기준)

## 【사례 7】

사업명 : WCO 분담금(기획기재정부)사업목적
○ WCO (세계관세기구)회원국으로 일정 분담금 납부사업내용

| 구 분 |  |
| :---: | :--- |
| 사업기간 | '68~옝송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국고 $100 \%$ |
| 사업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근거 법령

$\square$ (개관) 관세협력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CCC 협약)

- CCC 협약 제 12 조
(a) 각 회원국은 이상회, 상설기술위원회 및 기타 이사회의 제 위원회에 대한 자국 대표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b) 이사회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규모에 따라 동 회원국이 부담한다.
(c) 이사회는 분담금액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 【사례 8】

$\square$ 사업명 : WMO 국가분담금(기상청)
$\square$ 사업목적
○ WMO 회원국으로서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의 성실한 납부를 통 한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우리나라 기상기술의 지속적 발전 도모

○ WMO 집행이사국으로서 세계기상기구(WMO) 과학기술프로그 램 등에 적극적 기여를 통해 기상기술공여국으로서 지위 강화

사업내용

| 구 분 |  |
| :---: | :--- |
| 사업기간 | 2004용 |
| 총사예엽빅 | 억원('10년까지 65억원) |
| 사업규모 |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기상청 |

$\square$ 근거 법령
$\square \mathrm{WMO}$ 협 약 제24조

- WMO 총회(15차, 2007) 결의안 40
- WMO 집행위원회(62차, 2010) 결의안 22
$\square$ 국제조약 및 협약
○ 유엔분담금 규정, WMO 와 대한민국 정부간 JPO 파견에 관한 협정체결('92)
○ WMO는 1951. 12. UN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전문기구로 가입(설립)
ㅇ 우리나라는 1956년에 68번째로 WMO 에 가입함으로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국가가 됨


## (2)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사례 9】

$\square$ 사업명 : 우정사업해외활동(지식경제부)
$\square$ 사업목적
ㅇ 만국우편연합(UPU) 등 우정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 참 여와 협력을 통한 국제우편서비스 수준 향상
$\square$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계속 |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 사업규모 |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전국 접수우체국 (3,652국)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
| 지원조건 | 직 접수행, 정액지원 |
| 사업시행주체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

$\square$ 국회비준 없음

- 만국우편연합조약(2008 UPU 제네바총회 조약) 제 4 장 재정 제 128 조(연합경 비의 책정과 규제) 8-13항
- APPU(아시아 태평양우편연합총칙) 제 4 장 재정 제 116 조(분담등급) 1,2 , 제 117조(연합의 예산과 회계) 6
$\square$ 국제조약 및 협약
○ UPU(만국우편연합)헌장 제4장 제 21 조(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금)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가. 연합의 연간 경비
나. 다음 총회의 개최 비용
2. 제 1 항에 규정된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칙의 관련 조항 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포함하는 연합의 경비는 연합회 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 택한다. 분담등급은 총칙에서 정한다.
4. 제 11 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는 연합의 경비분담을 위하여 그 국가가 위치할 분담등급을 자유롭게 정한다.

ㅇ 만국우편연합총칙 제 128 조(연합경비의 책정과 규제)
7.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회원의 지위가 수 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UPU EMS 조합 규약 제 6 조(분담등급 및 투표권)

1. EMS Unit은 EMS 총 발송 및 도착물량에 기초하여 회원분담 등급을 정하 여 공표한다. 각 분담등급별로 제5항에 정한 등급별로 다른 연간 정액회비, 교환물량에 기초한 분담금 및 투표권이 부과된다.
2. 투표권은 총회 또는 우편에 의한 공식 협의에서 행사된다.
3. 조합회원은 EMS Unit이 회원에 대하여 적정한 분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연간 발송 및 도착 EMS 물량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조합회원 우정청은 총 EMS 발송 및 도착 물량에 부합하는 분담등급에 속한다.
4.1 회원은 속한 분담등급 보다 높은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4.2 속한 등급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한 회원은 선택한 등급에 맞는 연간 최저 총금액을 납부한다. (제 5 항에 정한 해당 등급 정액회비 + 최소 물량에 기초한 분담금)
5. 2003년부터 각 분담등급별 연간 정액회비, 교환물량 기초 분담금 및 투표 권은 다음과 같다.

| 단위 | 물량 상한 <br> (천통) | 정 액회비 <br> (CHF) | $\begin{gathered} \text { 물량기초 } \\ \text { 분담금(CHF) } \end{gathered}$ |  | 총 연간 지불액 |  | 투표권 |
| :---: | :---: | :---: | :---: | :---: | :---: | :---: | :---: |
|  |  |  | 최소 | 최대 | 최소 | 최대 |  |
| 1 | 10 | 400 | 1 | 100 | 401 | 500 | 1 |
| 2 | 25 | 750 | 101 | 250 | 851 | 1,000 | 2 |
| 3 | 50 | 1,750 | 251 | 500 | 2,001 | 2,250 | 3 |
| 4 | 100 | 3,500 | 501 | 1000 | 4,001 | 4,500 | 4 |
| 5 | 250 | 7,000 | 1,001 | 2500 | 8,001 | 9,500 | 5 |
| 6 | 500 | 10,000 | 2,501 | 5000 | 12,501 | 15,000 | 6 |
| 7 | 1250 | 15,000 | 5,001 | 12500 | 20,001 | 27,500 | 10 |
| 8 | 2500 | 20,000 | 12,501 | 25000 | 32,501 | 45,000 | 14 |
| 9 | 5000 | 25,000 | 25,001 | 50000 | 50,001 | 75,000 | 18 |
| 10 | 9000 | 35,000 | 50,001 | 90000 | 85,001 | 125,000 | 22 |
| 11 | 9000+ | 50,000 | 90,001 | + | 140,001 | + | 16 |

6. 임시회원은 수입물량에만 기초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규모에 따라 연간부 담금을 조합에 납부한다.
6.1 임시회원은 상위 단위를 선 택할 수 있다.
6.2 속한 등급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한 임시회원은 선택한 등급에 맞는 연간 최저 총금액을 납부한다. (제5항에 정한 해당 등급 정액회비 + 최소 물 량에 기초한 분담금)

○ 아 • 태우편연합헌장 제 4 장 제 13 조(연합의 경비)
연합의 연간 경비는 행정과와 훈련과용으로 구분한다. 연합의 각 총회는 사 무국장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행정과에 대한 연간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 다. 행정과 경비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분담한다. 각 회원국의 경비분담단 위는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총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의 만국우편 연합 경비분담 등급을 기초로 결정한다. 훈련과의 연간 경비는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을 이용하는 국가의 직접이용비율과 여타 국가나 기구 또는 행정과 의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ㅇ 아 • 태 우편연합 총칙 제 116 조(분담등급 책정)

1. 행정과의 경비할당을 위하여 회원국은 4 개 집단으로 분류된다. 만국우편 연합 경비에 50 단위이상 $~ 50$ 단위 • 40 단위 • 35 단위 • 25 단위 및 20 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5 단위를 분담하고, 15 단위 $\cdot 10$ 단위 및 5 단위를 분담하 는 회원국은 3 단위를 분 담하며, 3 단위 및 1 단위를 분담하는 회원국은 2 단위 를 분담하고, 0.5 단위를 분 담하는 회원국은 1 단위를 분담한다. 다만, 회원국 은 해당단위 이상을 분담할 수 있다.
2. 연합을 탈퇴하거나 가입하는 국가는 탈퇴 또는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는 연 도의 행정과 경비를 분담한다.

ㅇ 아 • 태우편조합(APP Coop) 규약 제 4 조(회원분담 등급 및 투표권)

1. APP Coop 회원 자격유지에 요구되는 것은 각 회원 우정청이 회원등급을 선택하고 관련 연간 회비와 투표권을 정하는 것이다.
2. 투표권은 회원 등급별로 할당된다. 그러나 최고 20 표로 한정한다.
3. 투표권은 총회에서 행사한다.
4. 조합비와 단위별 투표권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회원등급 8 인 회원은 제 2 항을 조건으로 추가 20,000 달러 납입 마다 1 개의 투표권을 더 갖는다.

| 회원 등급 | 연간 회비(USD) | 투표권 |
| :---: | :---: | :---: |
| 1 | 500 | 1 |
| 2 | 1,000 | 2 |
| 3 | 5,000 | 3 |
| 4 | 10,000 | 4 |
| 5 | 25,000 | 6 |
| 6 | 50,000 | 8 |
| 7 | 100,000 | 12 |
| 8 | 150,000 | 16 |

5. 연체금이 없는 우정청만이 온전한 회원자격과 관련 투표권을 갖는다.

## ○ 카할라 우정연합체(Kahals Posts Group) MOU 제 6 조

6. 재정(Financing)

- 제5조 또는 개별협약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활동기금은 각 우정청이 $10 \%$ 를 분담
- KPG 활동과 관련된 회의참가비용은 해당 회원우정청이 부담


## 4. 기존 의무지출사업에 재량지출이 혼재된 사례

(1)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행정안전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이 퇴임후 전직대통령으로서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임중에 퇴임후의 생 활에 대한 걱정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금 및 예우보조금은 예년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69~계속 |
| 총사업비 | 6.99 억원( ) |
| 사업규모 | 전직대통령 2인 및 유족 1인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

3) 근거법령
(1) 전직대통령연금(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법률
제 4 조(연금) (1)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 지출규모 | 법률 $(\bullet)$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
| :---: | :---: |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 4 조（연금）（2）제 1 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보 수년 액）의 100 분의 95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square$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 조（용어의 정의）（1）「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서＂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 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
（2）법 제 5 조제 2 항에서＂ 30 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 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유족연금（의무지출）

| 지출의무 | 법률（ $\bigcirc$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 5 조（유족에 대한 연금）（1）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 분의 70 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2）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 1 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 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 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지급 대 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지출규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 5 조（유족에 대한 연금）（1）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 액의 100 분의 70 에 상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2 조（용어의 정의）（1）「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 2 항 및 제 5 조제 1 항에서＂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이라 함은 연 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연봉월액의 8.85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 한다．
（2）법 제 5 조제 2 항에서＂ 30 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 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3）그 밖의 예우（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 6 조（그 밖의 예우）（4）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 지출규모 $\quad$ 법률（ ）시행령（O）시행규칙（ ）

## 전직 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 조의 3 （사무실의 제공등）법 제 6 조제 4 항제 2 호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사무실 및 차량의 제공과 기타 운영경비의 지급
2．공무여행시 여비등의 지급
(2)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운영(행정안전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에 맞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
| :---: | :--- |
| 사업기간 | ${ }^{\prime} 00 \sim \sim^{\prime} 12$ |
| 용 |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 지원조건 | 직접 수행 |
| 사업시행주체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

3) 근거법령
(1) 보상금(의무지출)

## 지출의무 <br>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보상금)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 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 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 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 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 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 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 급한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 월실수액 또 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의 2 (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 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 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 정 - 지급할 수 있다.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 $O$ ) 시행규칙( ) |
| :--- | :---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평균임금의 적용) (1) 법 제 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 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 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2) 제 1 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 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10 조(생활비공제) 법 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 -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생 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0.31>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 10 조관련)

| 구 분 | 생활비 비율 |
| :---: | :---: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 \%$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 \%$ |

비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제11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1) 법 제 7 조제 5 항 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 표 3 과 같다.
(2) 신체장해의 부위가 2 개인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3) 신체장해의 부위가 3 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 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 개와 종 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4)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 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 14 급에 해당 하는 것이 3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 의 신체장해등급 제 13 급으로 한다.
(5)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 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 정하기 3 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 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1) 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 지급은 법 제 7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 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 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 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 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2) 의료지원금(의무지출)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의료지원금)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 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 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 장구구입에 실질 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 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br>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의료지원금) 법 제 8 조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 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 - 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 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 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 액으로 한다.

2．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 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 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 액
3．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 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기（기）지급치료비＂라 한다） 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 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 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 한다．다만，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 산서•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 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 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다만，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생활지원금（재량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생활지원금）（1）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 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 일 이상 구금된 자
2．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 7 조제 1 항제 2 호나목의 규정 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재직기간 1 년 이상인 해직자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생활지원금）（1）법 제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 상자 중 30 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 한 금액을 지급하되，그 금액은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 경 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4 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 일로 나누 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2）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 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되，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 용일 전날까지로 하고，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 월 26 일까지로 한다．다만，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 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 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정년은 55 세로 하되，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중 5 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 급 이상（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 공무원
나．「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 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 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 무원보수규정」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 호 이 상의 일반 계약직 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지방공무원 법」 제 2 조 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 조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4）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 7 조제 1 항제 2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 하여는 1 인당 480 만원을 지급한다．
（5）법 제 9 조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생계급여（보건복지부）

1）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게 부족분만큼의 생계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61년도부터~(단년도 계속사업) |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 사업규모 | 1,632 천명 (일반수급자 1,545 천명, 시설수급자 87 천명) /925천 가구 |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서울 $40 \sim 60 \%$, 그 외 70~90\%) |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3) 근거법령
(1) 수급권자 생계급여(의무지출)

지출의무
법률( ) ) 시행령( ) 시행규칙( )

## $\squ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급여의 기준등) (1)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 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 5 조(수급권자의 범위) (1)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 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3) 제 1 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 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최저생계비의 결정)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 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 정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 월 1 일까지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 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급여의 종류) (1)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 1 항제 1 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 준은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7 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 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 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생계급여의 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 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 1 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 10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 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 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 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출규모 $\quad$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bigcirc$ )

## $\squ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6 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1) 법 제9조제 2 항 본문 및 제 27 조의 2 에 따라 생 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 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회사나 우편관 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 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2) 제 1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제 2 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 1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으려 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좌로 입금받을 사 람이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장애 등 부득 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계 좌로 입금받을 사람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 결정) (1) 법 제9조제 5 항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수 급자가 사업에 참가한 달의 다음 달부터 3 개월마다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 백한 경우
5. 제 11 조제 4 항 단서 및 제 12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 사업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 및 중지 급여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 사실 및 중지 급여액을 조건부수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재개(再開)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squar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6 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 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 일 이후인 때에 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을 지급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 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입소일이 15 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2. 입소일이 16 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 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 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 분의 50
(3)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 계급여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 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16 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이 를 지급한다.
(4)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 30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 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 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 을 지급한다.
(6) 영 제6조제 1 항 후단에 따라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계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 6 조제 1 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 조(월세임차료의 지급)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수급자로서 타인의 주택을 유료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수급자 (제 10 조에 따라 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제 1 항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임차료는 법 제 6 조제 2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 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3) 삭제<2007.12.28>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생계급여의 지 급방법을 준용한다.
(2)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재량지출)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 조(급여의 종류) (3)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 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제 6 호 및 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5 조의 3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1) 법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차상위 자에 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 여건 등 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 21 조까지 및 제 21 조의 2 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제 2 항에 따른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수당(보건복지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등록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 해 필수적인 추가비용의 발생 및 근로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 서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추가비용 보전명목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기초적 수준의 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
| :---: | :--- |
| 사업기간 | 내 용 |
| '총사업비 | 2,ㄴㄴ년도계속사업 |
| 사업규모 | 536 억원('10년) |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서울 $50 \%$ 명('10년) |
| 사입시방 $70 \%$ 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3）근거법령
（1）（일 반）장애수당（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square$ 장애인복지법 |  |
| 제49조（장애수당）（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 |  |
| 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  |
|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
|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  |
| 는 제 1 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3）제 1 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 50 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 |  |
| 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  |
|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 |  |
| 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 |  |
| 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 • 기준 및 방 |  |
|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 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1）법 제 49 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 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塤）이 필요한 자로 한다．다만，제 2 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 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 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 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

한다）일 것
2．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 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3）법 제 50 조제 2 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 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 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 33 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1）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2조（비용 부담）（1）법 제 79 조에 따라 법 제 36 조제 1 항，법 제 38 조제 1 항，법 제 43조제 1 항，법 제 49 조제 1 항，법 제 50 조제 1 항 • 제 2 항，법 제 55 조제 1 항，법 제 66조제 1 항 및 법 제67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 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생계급여 장애인（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 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 법률（ ）시행령（O）시행규칙（ ） |
|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30 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1）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 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填）이 필요한 자로 한다．다만，제 2 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2）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 세 미만（해당 장애인이「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 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 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 한다）일 것
2．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 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3）법 제 50 조제 2 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 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 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 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 33 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1）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2조（비용 부담）（1）법 제 79 조에 따라 법 제 36 조제 1 항，법 제 38 조제 1 항，법 제 43 조제 1 항，법 제 49 조제 1 항，법 제 50 조제 1 항 • 제 2 항，법 제 55 조제 1 항，법 제 66조제 1 항 및 법 제67조제 1 항 • 제 2 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 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영유아보육료지원（보건복지부）
1）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지 원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참고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 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육은 저출산 극복 및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가장 효과적 사업이 다．미국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공공 보육서비스（daycare）지원이 2 배 상승할 때 $(\mathrm{GDP}$ 의 $0.37 \% \rightarrow 0.74 \%$ ）합계출산율이 $0.13 \%$ 가 상승하는 효 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8．6 美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91～계속 |
| 총사업비 ${ }_{1,}$, | 16,322 억원（＇10） |
| 사업규모 ${ }_{2,}$, | 61,210 천명 보육료 지원（＇10） |
| 지원조건 ${ }_{3,}$, | 지자체 보조， <br> 기초단치단체별 차등보조율 적용（서울 $10 \sim 30$, 다른 지방 $40 \sim 60)$ |
| 사업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

3）근거법령
（1）보육비용（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 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 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 원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bigcirc$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5 조（보육료 지원 대상）법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 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매년 정한다．
（2）무상보육특례（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 영유아보육법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1）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제 1 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3）제 12 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에 따른 무상보 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 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 법률（ ）시행령（O）시행규칙（ ） |
| :---: |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1）법 제35조제 1 항에 따른 초등학 교 취학 직전 1 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 일 현재 만 5 세에 도달 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유아
2．「도서 •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제 1 항 각 호 외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3）제 1 항에 따라 무상보육 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 을 받지 아니한다．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1）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보육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3）보육서비스이용권（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square$ 영유아보육법 |  |
|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 1 항，제34 |  |
| 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이용 |  |
| 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
| （2）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  |
| 또는 민간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3）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bigcirc$ ) |
| :--- | :---: |
| $\square$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 |  |
| 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 |  |
| 급하여야 한다. |  |
| (4) 제 1 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  |
|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6) 취업촉진수당(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 기 위한 사업이다.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95.7월~계속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09년 397,605백만원 <br> ' 10 년 156,176 백만원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br> 조기재취업수당 : 6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거나 6월 이 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한 경우, 재취업시점에 따라 잔여 급여 액의 $1 / 3,1 / 2,2 / 3$ 차등 지급 <br>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1 일 5,000 원 지급 |


| 구 분 | 내 용 |
| :---: | :---: |
|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관서의 소개로 편도 50 km 이상 떨어 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비 및 운임을 공무 원 수준에 준하여 지급 <br> 이주비 :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소요 비용 지원 |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고용지 원 센터) |

3) 근거법렁
(1) 조기재취업수당(의무지출)

| 지출의무 | 법률( O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 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 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출규모 $\quad$ 법률( ) ) 시행령( O ) 시행규칙 ( )

## 고용보험 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3)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 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5)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1)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 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 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2.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 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2) 법 제 6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 년을 말한다.

제85조(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 (1)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 액에 미지급일수의 2 분의 1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 분의 2 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취직한 때의 연령이 55 세 이상인 경 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의무지출)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 :--- | :--- |

##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1)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 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60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 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 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1) 법 제65조제 3 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 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 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으로 한다.
(3)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 75 조를 준용한다.
(4)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고용보험법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1) 광역 구직 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 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2)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 1 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출규모
법률 ( ) 시행령( O) 시행규칙 ( $\bigcirc$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 활동비는 수급자 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 액에 미달할 것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상일 것. 이 경우 거리는 거주지로 부터 사업장까지의 통상적인 거리에 따라 계산하되, 수로(水路)의 거리는 실제 거리의 2 배로 본다.
(2) 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 75 조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1) 영 제 89 조제 1 항제 2 호에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거리"란 50킬로미터를 말한다.
(2) 법 제 66 조제 1 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 한다.
(3) 제2항의 운임은 철도 • 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 • 자동차 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 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4) 제 2 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5)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4) 이주비(재량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1)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지급할 수 있다.
(2)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 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지출규모 $\quad$ 법률( ) 시행령(O) 시행규칙(O)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이주비) (1) 법 제67조제 1 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 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2)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 차에 관하여는 제 75 조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 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2)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 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7)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국가보훈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면학에 정진하도록 교육비 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62 년~계속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45,884 명에 대한 교육비 지급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민간보조 ( $50 \%$ 국고보조)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3) 근거법령
(1) 수업료면제 국고보조(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 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 \cdot 19$ 혁 명부상자, $4 \cdot 19$ 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 \cdot 19$ 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 녀, 미성년 제매 및 제 1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 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이하＂대학＂이라 한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다만，같은 법 제29조의 2 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 30 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1）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수업료등＂이라 한 다）를 면제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2）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2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 게 수업료등을 면 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다만，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 관（이하＂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3）사립인 대학등이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 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 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4）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고보조（國庫補助）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5)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 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 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1)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 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 25 조제 1 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 • 기성회비와 중 학교 •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2)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다.

1. 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 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 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 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 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 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 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3) 법 제 25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 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 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 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 22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법 제 22 조제 2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 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법 제 22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 기관
（2）학습보조비（재량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등）（1）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 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寄宿施設）을 제공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1）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 급한다．다만，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나 은행 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 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다만，법 제 6 조의 2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이나 학습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제 2 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3) 특수교육지원(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 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 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학습보조비의 지급) (1)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표 7 의 지급 구분에 따라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 적이나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2. 법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 22 조제 2 항제 1 호 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항 제 3 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이나 같은 항 제 5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제45조(특수교육의 실시) 법 제27조에 따른 특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실시한다.
3. 장애인: 신체적조건에 적합한 특수교육
4. 학업성적 불량자 - 취학연령초과자 등: 적성과 능력 등에 적합한 특수기술 교육
(8) 보훈병원진료(국비진료)(국가보훈처)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부상)을 입은 자와 월남전 등 에서 고엽제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 등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신체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창설('61년)부터 시행되 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편리 하고 질 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분들의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61 년~계속 |
| 총사업비 | '09년 158,200백만원 <br>  <br>  <br> 사업규모 189,000 <br> 백만원(2,337,582명) |
| 국가유공상이자 등 2,338천명 진료 |  |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br> 지원조건 :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등급판정자 등은 진료비 <br> 전액, 등외판정자는 상이처 또는 인정질환에 대해 지원 |
| 사업시행주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3) 법적근거
(1) 독립유공자 국비진료(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1)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 을 한다.
(2)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 7 조에 따른 보훈병 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3）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 할 수 있다．
（4）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6）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1）법 제 17 조제 4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 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3 항을 준용한다．
（2）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 를 준용한다．
（2）국가유공자 국비진료（의무지출）

| 지출의무 | 법률（ $\bigcirc$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의료지원）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42조（진료）（1）전상군경 •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 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다만，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가는 제 1 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 할 수 있다．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O ）시행규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진료）（1）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 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입 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 훈병원에서 한다．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 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1）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 42 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 20 조에 따 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2）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3）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국비진료（의무지출）

지출의무
법률（ $\bigcirc$ ）시행령（ ）시행규칙（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33 조（의료지원）국가는 $5 \cdot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 34 조（진료）（1）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 훈병원을 포함한다）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다만，본 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가는 제 1 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 할 수 있다．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O ）시행규칙（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 조（진료의 종류 등）（1）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하되，입원진료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제 1 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응급진료：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 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 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의료시설에 입 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면서 하는 진료 제33조（의료시설 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1）～（3）（생 략）
（4）보훈병원의 장은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관할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 킬 수 있다．
제 35 조（약제비용의 부담）（1） $5 \cdot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 34 조 제 1 항 •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r약 사법」 제 20 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약제비용의 전액
（2）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법」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지 급하여야 하며，공단은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특수임무수행자 국비진료（의무지출）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료지원）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제33조（진료）（1）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 7 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 다）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다만，본인의 고의에 의하 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가는 제 1 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 할 수 있다．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 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지출규모 <br> 법률（ ）시행령（ ${ }^{(1)}$ ）시행규칙（ ）

## 특수임무수행자 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진료의 종류 등）（1）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한 진 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입원진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보훈병 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응급진료：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처치를 즉시 하 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 되는 특수임무부상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특수임무부상자를 의료시설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고 왕래를 하 면서 하는 진료
제35조（의료시설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1）～（3）（생 략）
（4）보훈병원의 장은 특수임무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 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특수질환자의 주소지 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 의 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제 37 조（약제비용의 부담）（1）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이 법 제 33 조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 20 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1．특수임무부상자 ：약제비용 전액
（2）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법」제 3 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여야 하며，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1）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 7 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로 결 정 • 등록된 자 중 제 7 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 병（부상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하 지 아니한다．
1．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유전（고엽제후유증 2 세 환자는 제외한다）
4．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것
（2）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다만，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6）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10）제 1 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 3 조에도 불구하고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 지출규모 | 법률（ ）시행령（O）시행규칙（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 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 를 준용한다．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1）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 42 조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 20 조에 따 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2）제 1 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6）제대군인 국비진료（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square$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20조（의료 지원）（1）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 |  |
| 인으로서 그 상이（傷痍）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
| 에는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 |  |
| 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 |  |
| 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5조의2（약제비용의 청구 및 지급）（1）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2 또는 「5 $\cdot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 조에 따라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 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제 55 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 내 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약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square$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규칙（시행 2009．7．1．총리령 제905호）

제 5 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1）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 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또 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 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상급병실（입원실에 5 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이하 같다） 이용 비용
2．치과의 보철재료대（기공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 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bigcirc$ ）

##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규칙（시행 2009．7．1．총리령 제905호）

제 7 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국가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예방진료등＂ 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 6 조제 1 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처장이 100 분의 60 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 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 9 조（전상군경 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 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 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 여 대상［진통 • 진양（鎭痒）• 수렴（收斂）• 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
（外用藥劑）（이하＂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 방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제 10 조（진료비용의 산정 등）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 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 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산정 및 진료 비용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1）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 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 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개정 2009．12．7．국가보훈처 훈령 제928호）

제 8 조（진료의 종류）전상군경 등에 대한 진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훈병원 진료
2．위탁병원 진료
3．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 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 되는 환자에 게 하는 진료
4．통원진료 ：예우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의료법」제 3 조에 의 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
5．전문 위탁진료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4항과 규칙 제17조에 따라 특수질 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의료법」제3조에 따 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
제 9 조（제대군인 지원 등）（1）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전상군경등은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를 진 료 받은 경우에만 그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1．규칙 제 2 조 제 3 호 라목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 세 환 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

2．규칙 제 2 조제 3 호 사목에 따른 제대군인
（2）보훈병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 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3）제 2 항에 따라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 1 항에 따른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4）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방보 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상이처를 조회 • 확인하고＂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제비용의 지원 등）（1）전상군경등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 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규 칙 제9조 각 호의 범위 안의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9）보철구지급（국가보훈처）

1）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 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철구를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 가유공상이자의 신체장애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고품질의 보철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지급 요구와 함께 보철구 지급시 품질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2）사업내용
$\square$ 사업기간 ：1964년부터 계속
－총사업비（최근 5 개년도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 년도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 :---: | :---: | :---: | :---: | :---: | :---: |
| 금 액 | 4,544 | 4,544 | 4,544 | 4,681 | 4,821 | 5,004 |

$\square$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현물지급
－지원비율 ：국고 $100 \%$
3）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비（의무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 （보철구의 지급）전상군경，공상군경， $4 \cdot 19$ 혁명부상자，공상공무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보철구）（1）보철구는 진료대상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서 그 종류별 사용연한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다．
（2）제 1 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磨耗）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지급비（재량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5 조（보철구 지급） $5 \cdot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지출규모 $\quad$ 법률（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보철구의 지급）（1）법 제 35 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 할 수 있다．
（3）특수임무수행자 보철구지급비（재량지출）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square$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보철구 지급）특수임무수행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보철구의 지급）（1）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 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 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나서 수리 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0）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국가보훈처）

1）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애국지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를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공훈에 상 응한 예우금 및 제수비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지급시에는 타 보

훈계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출사업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생존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나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가계비 지원 등은 기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국가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본 사업이 기 여할 수 있겠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 ' 09 년 5,989 백만원(예우금 229 명, 사망조위금 159 명, 생 계부 조금 25 명 가계지 원비 500 명, 제수비 6,130 명) <br> ○ ' 10 년 5,787 백만원(예우금 197 명, 사망조위금 159 명, 생 계부 조금 23 명 가계지 원비 500 명, 제수비 6,434 명)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br> ㅇ 세사업 내역 <br>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생존애국지사 본인에게 매월 예우 금 지급 <br> - 애국지사 사망조위금 : 독립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조위 금 지급 <br> - 단순수급권자 생계부조금 :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 나 ' 73 년 이전부터 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부조금을 수급 해 오던 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지급 <br> - 손자녀 가계지원비 :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에 대하여 매월 가계비 지급 <br> - 독립유공자 제수비 :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지급 - 지원수준 <br> - 예우금 : 매월 100~60만원, 사망조위금 : 100~20만원 생계부조금 90~78천원, 가계지원비 : 매월 35 만원 제수비 : 25 만원 지원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 |

3）근거법령
（1）보상금（의무지출）

## 지출의무

법률（O）시행령（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보상금）（1）보상금은 월 액（月額）으로 지급한다．
（2）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 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 다．다만，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 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4）제 3 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 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 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다만，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 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5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한다．
1．사망한 경우
2．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 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보상금의 지급 수준은「통계법」제 3 조제 2 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ㅁ）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 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br> 제 6 조(보상금) 법 제 12 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 과 같다. 보상금 지급 구분표 |  |  |
| 구 분 | 지급대상 | 월 지급액 <br> (천원) |
|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 등급부터 3 등급까지 서훈자 <br> 2. 건국훈장 4 등급 서훈자 <br> 3. 건국훈장 5 등급 서훈자 <br> 4. 건국포장 서훈자 <br> 5. 대통령표창자 | $\begin{gathered} 4,216 \\ 2,245 \\ 1,775 \\ 1,272 \\ 836 \end{gathered}$ |
| $\begin{gathered} \text { 독립유공자의 } \\ \text { 유족 } \end{gathered}$ | 1. 건국훈장 1 등급부터 3 등급까지 서훈자의 유족 가. 배우자 <br> 나. 배우자 외의 유족 <br> 2. 건국훈장 4 등급 서훈자의 유족 <br> 가. 배우자 <br> 나. 배우자 외의 유족 <br> 3. 건국훈장 5 등급 서훈자의 유족 <br> 가. 배우자 <br> 나. 배우자 외의 유족 <br>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br> 가. 배우자 <br> 나. 배우자 외의 유족 <br> 5. 대통령표창자의 유족 <br> 가. 배우자 <br> 나. 배우자 외의 유족 | $\begin{aligned} & 1,866 \\ & 1,616 \\ & 1,376 \\ & 1,347 \\ & 1,120 \\ & 1,094 \\ & 787 \\ & 781 \\ & 458 \\ & 448 \end{aligned}$ |

(2) 사망일시금(의무지출)

| 지출의무 | 법률( O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square$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
| 제13조(사망일시금) (1)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  |
|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 |  |

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 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 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 산상속인에 게 지급한다.
(3) 제 1 항과 제 2 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출규모

##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8 조(사망일시금) (1) 법 제 13 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 와 같다.
(2) 제 1 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사망일시금 지급구분표(제8조 관련)

| 구 분 | 지급대상 | 지급액(천원) |
| :---: | :--- | :---: |
| 애국지사 | 1. 건국훈장 $1 \cdot 2 \cdot 3$ 등급 서훈자 | 3,068 |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 | 3,008 |
|  | 3. 건국훈장 5 등급 서훈자 | 1,504 |
|  | 4. 건국포장 서훈자 | 1,008 |
|  |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927 |
| 독립유공자의 | 1. 건국훈장 $1 \cdot 2 \cdot 3$ 등급 서훈자의 유족 | 가. 배우자 |
|  | 나. 배우자외의 유족 | 2,061 |
|  | 2. 건국훈장 4등급 서훈자의 유족 | 2,000 |
|  | 3. 건국훈장 5 등급 서훈자의 유족 | 1,789 |
|  | 4.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927 |
|  | 5.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7 |
|  |  | 927 |

（3）생활조정수당（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자 1 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출규모 $\quad$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1）보훈급여금은 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 로 구분한다．
（2）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다만，제 18 조에 따라 대부（貸付）하는 경우와 제 35 조에 따라 보훈급 여금 등을 환수（還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 12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 1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5）보훈급여금의 지급액，지급방법，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9 조（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1）법 제 11 조제 3 항에 따라 양로 •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 의 2 와 같다．
（2）법 제 11 조제 5 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지급방법，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4 조，제 24 조의 2 ，제 25 조，제 29 조，제 30 조， 제 32 조의 2 ，제 32 조의 3 ，제 33 조 및 제 34 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가 선순위인 자 1 명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생활조정수당) (1)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5 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이 되는 생활 정 도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 훈처장이 정한다.
(2)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 1 항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0.12.31>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 25 조제 1 항 관련)

| 구 분 | 월 지급액 |
| :---: | :--- |
| 국가유공자와 |  |
| 그 유족 | 1. 기본급 <br> 가.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150,000 원 <br> 나.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200,000 원 <br> 2. 가산금 <br> 50,000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보훈 <br> 처장이 정하는 금액 |

(4) 교육지원(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5조(교육지원) (1)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 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2）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지출규모

법률（〇）시행령（○）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5 조（교육지원）（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하여 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 조부터 제 27 조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1）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수업료등＂이라 한 다）를 면제한다．
（2）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 2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다만，교육기관 중 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대학등＂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 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3）사립인 대학등이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 상자에 대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 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4）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고보조（國庫補助）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5）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 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 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1)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 22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 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 • 기성회비와 중 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2)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른다.

1. 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 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 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 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 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 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 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3) 법 제 25 조제 2 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 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 는 자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 당 대학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2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 22 조제 2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 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법 제 22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 기관
（5）취업지원（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취업지원）（1）국가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 원을 한다．
（2）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순국선열의 유족
2．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 명．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 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0 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만점의 10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애국지사가 제6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만점의 5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애국지사의 가족
나．애국지사가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제 2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 조，제 31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제 31 조의 2 ，제 32 조，제 33 조，제 33 조의 2 ，제 33 조의 3 ，제 34 조，제 34 조의 2 ，제 35 조의 2 ，제 36 조，제 37 조，제 37 조의 2 ，제 38 조 제 2 항－제 3 항 및 제 39 조를 준용한다．

## 지출규모 <br> 법률（ $\bigcirc$ ）시행령（ $O$ ）시행규칙（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1）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 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만점의 10 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제 29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나．제 29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자
2．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제 29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나．제 29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 1 항의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 1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둘 이상 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 1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다만，점수가 만점의 4 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 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 $\cdot 18$ 민 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 24 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 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응시자의 수 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 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5）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 직급 • 직위와 그 밖 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1）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 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 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 정－고시된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단
3．그 밖에 제 30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3）제 30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 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 퍼센트 이상으 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38조（직업훈련）（2）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 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 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추천 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10 조에 따른 우선실시 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제 1 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 2 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은 국가가 부담한다．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1）법 제33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대상업체별 고용비 율은 별표 9 와 같다．다만，법 제 33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 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 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2）법 제 33 조의 2 제 2 항제 3 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 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자자인 정 부출자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 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호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 분의 20 이 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최다 출자자인 기업 체 또는 단체
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금액이 기업체나 단체 재산의 100 분의 20 이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다 출연자 또는 보조자인 기업체나 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승인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
(6) 생업지원(재량지출)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6 조의 2 (생업지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생활용 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6 조(등록 및 결정) (1)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 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을 신청하여야 한다.

## $\square$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3 조(등록신청) (1) 법 제6조제 1 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 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자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 12 조제 2 항부터 제 5 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 1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 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제 4 항에 따른 순위의 사람
（2）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 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다만，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 명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서＂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 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국가유공자등대부（국가보훈처）

1）사업목적 및 필요성
국가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그 노력의 일환으로써 본 사업은 그 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 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본 사업 은＇07．7월부터 국민은행에 대부를 위탁하고 은행대부가 곤란한 신용 관리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보훈처에서 직접 대부하고 있다．

2）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국가유공자 | 5•18민주 | 특수임무 | 제대군인 |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1962년도부터 실시） |  |  |  |  |
| 총사업비（＇10년） | 236억원 | 195억원 | 4억원 | 3억원 | 34억원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국가유공자 | 5－18민주 | 특수임무 | 제 대군인 |
| 사업규모 2 | 3，125가구 | 2，600가구 | 46가구 | 32가구 | 447가구 |
| 지원조건3， | 연 3～4\％，3～20년 상환，300～3，000만원 대부（신용관리 대상자） |  |  |  |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처（25개 지 방보훈 관서） |  |  |  |  |

※ 5－18민주유공자는 2004년도부터，특수임무수행자는 2006년도부터 대부실시

3）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장기저리대부（의무지출）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 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 47 조（대부 대상자）（1）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 5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2）제 1 항제 3 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 명 이상이면 제 13 조제 2 항 을 준용한다．
지출규모 $\quad$ 법률（ ））시행령（ O ）시행규칙（ ）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대부의 한도액）（1）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다．
（2）국가보훈처장은 제 49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 •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임차금액 이내
제51조（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렁령으로 정한다．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1）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据置）후 12 년
2．주택대부： 20 년
3．사업대부： 15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2）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squar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부터 12 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1．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담보재산＂이 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 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 부금에 대한 이율

3．법 제56조제 5 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 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4．천재지변 •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 70 조（대부금의 상환기간）법 제53조제 1 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 후 12 년
2．주택대부
가．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 년
나．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7년
3．사업대부： 10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2）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장기저리대부（재량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39 조（대부）국가는 $5 \cdot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 40 조（대부 대상자）（1）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18민주유공자
2． $5 \cdot 18$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 명．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자녀가 2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2）그 밖의 $5 \cdot 18$ 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 $5 \cdot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그 밖의 $5 \cdot 18$ 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대부）그 밖의 $5 \cdot 18$ 민주화운 동희생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부를 한다．

| 지출규모 | 법률 $(\bigcirc)$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
| :---: |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대부의 한도액）（1）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 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2）국가보훈처장은 제 42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 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 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임차금액 이내
제44조（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1）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据置）후 12 년
2．주택대부： 20 년
3．사업대부： 15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2）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이율은 연리（年利） 2 퍼센트부터 12 퍼센트까 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 퍼센트 이하로 한다．

1．법 제 49 조제 2 항 및 제 5 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담보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법 제 4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법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据置）후 12 년
2．주택대부
가．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20 년
나．주택개량 또는 주택임차대부：7년
3．사업대부： 10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 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 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1）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 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 일 현재「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 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2）제 1 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 41 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 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특수임무수행자 장기저리대부（재량지출）
지출의무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 조（대부）국가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 39 조（대부 대상자）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수행자
2．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중 1 명．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 4 조제 1 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자녀가 2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제41조（대부의 종류）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토구입대부
2．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대부，주택신축대부，주택개량대부，주 택임차대부를 말한다．이하 같다）
3．사업대부
4．생활안정대부

## 지출규모

법률（〇）시행령（○）시행규칙（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2조（대부의 한도액）

（1）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2）국가보훈처장은 제 41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대지구입 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 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임차금액 이내
제43조（대부금의 이율）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1）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据置）후 12 년
2．주택대부： 20 년
3．사업대부： 15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2）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면 3 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부금의 이율）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年利）2퍼센트 부터 12 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 퍼센트 이하로 한다．

1．법 제 39 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하＂대부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 48 조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하＂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법 제 48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법 제 45 조제 1 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농토구입대부： 3 년 거치（据置）후 12 년
2．주택대부
가．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대부：20년
나．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7년

3．사업대부： 10 년
4．생활안정대부： 5 년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1）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 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 3 항에 따라 대부 원리 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1）법 제45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 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 월 1 일 현재「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 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2）제 1 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 44 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 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 이 이르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제대군인 장기저리대부（재량지출）

## 지출의무 <br>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대부 지원）（1）국가보훈처장은 중사 이상으로 1962년 3월 1일 이후에 전 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보훈기금법」 제 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조성 된 자금으로 한다．
（3）제 1 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 • 대지구입 • 주택신축 • 주택개량 • 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4)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 이율 - 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 처장이 정한다.

1. 농토구입대부 : 해당농토의 구입액
2.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구입액 또는 신축비용
3. 주택개량대부 : 소요비용액
4. 주택임차대부 : 임차금액
5. 사업대부: 3 천만원
6. 생활안정대부 : 5 백만원
7. 학자금대부 : 1 천만원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 4퍼센 트 이상 15 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2 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 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 부금
3.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 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제 27 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1) 법 제 21 조제 4 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1. 농토구입대부 : 3 년 거치 후 10 년 이상 12 년 이하
2. 주택대부

가. 주택구입 - 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 7년 이상 10 년 이하
3. 사업대부 : 7 년 이상 10 년 이하
4. 생활안정대부 : 3 년 이상 5 년 이하
5. 학자금대부 : 5 년
(2)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 1 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 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 조를 준용한다.

## 5. 법률상 임의지출이나 시행령에서 의무화된 사례

## (1)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 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 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의 ' 10 년 예산은 ' 09 년 예산의 약 $25 \%$ 인 103,583 백만원 정도 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초 ' 10 년도 국내 GDP 성장률이 $4.2 \%$ 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IMF가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5 \%$ 을 하향조정한 바 있어, 급격한 경기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8] IMF 세계경제전망(\%)

| 구 분 | '09 |  | '10 |  |
| :---: | :---: | :---: | :---: | :---: |
|  | 1월 | 4.22 | 1월 | 4.22 |
| 세 계 | -0.5 | -1.3 | 3.0 | 1.9 |
| 한 국 | -4.0 | -4.0 | 4.2 | 1.5 |

※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09.4) : ' 09 년 -2.4 $\rightarrow{ }^{\prime} 10$ 년 $3.5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저 조할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번 사업예산에서는 지원수준 인상, 지원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요증가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본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업 } \\ & \text { 기간 } \end{aligned}$ | 1995년~계속 |  |  |
| 총사 <br> 업비 | 4,461억 원(09년) |  |  |
| $\begin{aligned} & \text { 사업 } \\ & \text { 규모 } \end{aligned}$ | 254,262명(09년) |  |  |
| 지원 조건 | - 직접수행 <br>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통하여 계속고용을 유지한 경우 |  |  |
|  | 사업명 | 지 원대상 | 지 원수준 |
|  | 휴업 | 1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 / 15$ 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3 / 4$ (대규모기업 $2 / 3$ ) 지원 |
|  | 훈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 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과 훈련비 지원 |

제 3 장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사례분석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사업명 | 지 원대상 | 지원수준 |
|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 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 / 3$ ）을 지원（무급휴직의 경 우 1 인당 월 20 만원） |
|  | 인력 | 업종전환 후 종전 업종 종사근로자 의 $50 \%$ 이상을 새로운 업종으로 재 배치한 사업주 | 임금의 $3 / 4$ 지원 <br> （대규모기업 2／3） |
| 사업시 <br> 행주체 | 노동부（고용지 원 센터） |  |  |

## 3）근거법령

## 지출의무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1）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 련，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 32 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1）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 （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 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과 이후 1 개 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다만，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 년 이상 연 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개월을 단위（이하 이 조에서＂단위기간＂이라 한다）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그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 급하는 경우．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 방법과 1 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 연일수의 계산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1 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 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 하거나 정비하고，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 자의 100 분의 5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다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의 범주에서 다른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삭제＜2010．2．8＞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그 사업 의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합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3）제2항에 따른 연장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1）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 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 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상황,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출 것
(2) 제 1 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려는 자는 역월에 따른 1 개월 단위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 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 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 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 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 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 력 재배치를 끝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삭제 <2010.2.8>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주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된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달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 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2.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실시하는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지출규모 $\quad$ 법률( ) 시행령 ( O ) 시행규칙 ( O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1)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 - 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 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

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 19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 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 고,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휴직 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 지 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제 19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 자인 훈련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 용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3. 제 19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사업주가 추가 로 제19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4.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 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삭제<2010.2.8>
(2) 제 1 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9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 는 경우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 일 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 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 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 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제 19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용유지조치가 90 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 1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인력 재배치가 끝난 날(1년 6개월 이내에 인력 재배치를 끝내지 못한 경 우에는 1 년 6 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 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 을 지급하되, 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 원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3. 삭제<2010.2.8>
(3) 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는 그 고용유지지 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 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33 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1) 영 제 21 조제 1 항제 1 호 후단에 따른 무 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 급한 의료보험료 - 퇴직충당금 - 연차휴가수당과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 21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훈련수당은 1 명당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 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 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 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실시한다.

본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 이 있는 여성 실업자, 장기 구직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는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사업 } \\ & \text { 기간 } \end{aligned}$ | 2004년～계속 |  |  |
| 총사 <br> 업비 | 1，266억 원（09년） |  |  |
| 사업 <br> 규모 | 44천명（09년） |  |  |
| $\begin{aligned} & \text { 지원 } \\ & \text { 조건 } \end{aligned}$ | －직접수행 |  |  |
|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수준 |
|  | 청년 | 저학력，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29 세 이하의 자로서 3 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우선지 원 대상기업 사업주 | 최초 6월간 54 만원，이후 6월간 36 만원（제조업은 최초 6월간 72 만원，이후 6월간 36 만원） |
|  | $\begin{gathered} \text { 장기 } \\ \text { 구직자 } \end{gathered}$ | 취업대상자 또는 장기구직자（실업기 간 6월）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사업주 | 최초 6월간 72만원，이후 6월간 36 만원 |
|  | 고령자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3 월이상 실 업상태에 있던 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 한 사업주 | 최초 6월간 36 만원，이후 6월간 18 만원（ 500 인이하 제조업은 최초 72 만원，이 후 36 만원） |
|  | 여성 가장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 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 한다）로서 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령」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 5 조 및 제 5 조의 2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1월 이 상 실업상태에 있던 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사업주 | 최초 6월간 72 만원，이후 6월간 36 만원 |
|  | 장애인 | 장애인으로서 3월이상 실업상태에 있 던 자를 알선을 통해 고용한 사업주（중 증장애인은 1 월） | 최초 6월간 72 만원，이후 6월간 36 만원（중증장애 인은 12 월간 72 만원） |


3) 근거법령
지출의무 $\quad$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렁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삭제<2010.12.31>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 세 이상으로 1 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 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 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 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게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 개 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 28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 개월, 재고용 후 6 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 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2) 삭제 $<2010.12 .31>$
(3) 삭제 $<2010.12 .31>$
(4)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 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 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4.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 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5.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1 년
(5)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 개월(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 개월로 한다) 동안 지급한다.
(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 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 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 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 2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 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 법」제5조 및 제5조의 2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 고 1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도서지역（제65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을 말 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 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2）제 1 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 우
2．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이직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고용하는 경우

3．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 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 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 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6．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출규모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 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4）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게 지 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노동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 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 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 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1 년 (5)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제 28 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 개월(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 개월로 한다) 동안 지급한다.
(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3)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 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 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 분의 7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이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이면 6 개월분을 지급하고, 12 개월 이상이면 12 개월분을 지급한다.
(4) 제 1 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20 (우선지원 대상기 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30 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5)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3. 제 1 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 명 이상인 경우: 30 명
4.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 명 이상 10 명 미만인 경 우: 3 명
5.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 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30 (피보험자수가 1 명 이상 10 명 미만인 경우는 3 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 분의 30 이 30 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 명으로 한다)
(6)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 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관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나 직 업훈련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본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들의 경우 전직 등 이동이 잦아 고용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실업 급여 및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기 위 함이다.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하게 하고 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 용보험의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2004~계속 |
| 총사업비 | 180 억원('09년) |
| 사업규모 | 13,205 건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br>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근로 내 <br> 용확인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지원 |


| 구 분 | 내 용 |
| :---: | :--- |
|  | －근로내용확인 신고실적에 따라 월 30～90만원 지급（전자적 <br>  <br> 방법에 의한 신고시） |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 고용지원 센터 |

3）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1）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2）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 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 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 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 원）（1）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4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다만，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고의 또 는 과실로 신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신고 사항이 사 실과 다르게 신고된 달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30，2010．7．12，2010．12．31＞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주일 것
2．「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제 2 호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 7 조제 1 항에 따른 기한 내에 법 제 15 조제 5 항 에 따른 전자적 방 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할 것
（2）제 1 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 원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 험자격의 취득신고•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반기별로 지급한다．이 경우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제 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근 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건설고용보험카드리더기 등 장 비구입비용 및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3）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지출규모 $\quad$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 원금액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113호）

노동부고시 제2008－113 호
「고용보험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 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규모 및 지원금액 고시

1．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 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 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 산한 수로 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률」제 33 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 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 고용보험법 제 15 조제 5 항에 따른 전자적 방 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하여는 아 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 원금액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 월 지원금액 |
| :---: | :---: |
| 100 인 이상 200 인 미만 | 300,000 원 |
| 200 인 이상 400 인 미만 | 500,000 원 |
| 400 인 이상 700 인 미만 | 700,000 원 |
| 700 인 이상 | 900,000 원 |

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 원금액

| 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연인원) | 월 지원금액 |
| :---: | :---: |
| 200 인 이상 400 인 미만 | 300,000 원 |
| 400 인 이상 700 인 미만 | 500,000 원 |
| 700 인 이상 | 700,000 원 |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63호(2006.12.28)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

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 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 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 사업은 쌍용 자동차 문제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기 평택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이라 하겠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2009년~지원금기간 종료시 |
| 총사업비 | 30 억(~'09년)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업주을 아 딩핸 진또늑에 3 개일 이상 거주항설 있는 구직 자를 <br> 채용한 경우 지급 임금의 $1 / 2$ (대규모기업 $1 / 3)$ 을 1년간 지원 |
| 사업시행주체 |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

3) 근거법령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O)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 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 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1）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지 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을 이전，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에 게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 등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지정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의 이전，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2．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할 것
3．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 년 6 개월 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4．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이 조에서＂조업시 작일＂이라 한다）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 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고용정책 기본법」제 10 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 된 사업일 것
6．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적 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할 것
（2）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항제 3 호에 따른 조업을 시 작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 분의 1 （대규모기업 의 경우에는 3 분의 1 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제 21 조제 4 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부터 1 년간 지급한다．
（5）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에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된 피 보험자수가 200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100 분의 30 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6）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기간 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조업시작일 전 3 개월부터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게 지원한다．
（8）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노동부 고시 제2009－35호 ：지정 지역 사업주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휴업수당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100 분의 90 （대규모 기업 포함）， 1 명당 1 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 만원
－유급휴직수당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00 분 의 90 （대규모 기업 포함）， 1 명당 1 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 만원
－훈련참가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 분 의 90 （대규모 기업 포함）， 1 명당 1 일 지급금 액 상한액은 5 만원
－인력재배치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 분의 90 （대규모 기업 포함）， 1 명당 1 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 만원
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8 조제 3 항에 따른 전직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 준은 사업주가 부담한 소요비용 전 액（대규모기업 100 분의 90 ）을 지급하되， 1 명당 지급금액 상한액은 400 만원으로 한다．
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4 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에 3 개월 이상 거주 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 분의 1 （대규모기업 3 분의 1）을 1 년간 지 원한다．

## （5）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고용노동부）

1）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지원금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 년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

원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임신 또는 출 산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이나 업무공백으로 부담을 가짐으로써 재계 약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1 년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장려 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실질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이와 같 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2006. 7월~계속 |
| 총사업비 | 18억원 ('10년) |
| 사업규모 | 총 514명 (유기 계약 336명, 무기 계약 178 명) |

3）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1）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신－출산여성 고용안 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 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이나 임신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 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나목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가．근로계약기간이 1 년 이하인 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2．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30 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 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이상 허용하고 육아휴 직등이 끝난 후 30 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3．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 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 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가．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 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 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 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 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나.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 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 개 월부터 고용 후 6 개월까지 고용조정으 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지출규모 $\quad$ 법률( ) 시행령(O)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임신 •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임신 • 출산여 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6 개월 동안 지급한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주에게는 1 년 동안 지급한다.
(3)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임신 -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육아휴직등의 허 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 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신•출 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 분의 50 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 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4)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을 말한다)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 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제 1 항에 따른 임신 • 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장려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 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

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행에 대응하여 활력있는 경제사 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95년~계속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09년 50,135백만원 ( 64,499 명) <br> ' 10 년 36,907백만원 ( 40,490 명) |
| 지원조건 | 직 접수행 <br> 다수고용장려금 : 고용기간이 1 년 이상인 55 세이상 고령자 를 지원기준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고용 1 인당 분 기별 18 만원씩 5 년간 지원 <br> ※ 업종별 지원기준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br> ○ 정년연장장려금 : 정년을 56 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 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연장된 자를 계속 고용하 는 사업주 <br> - 1 인당 월 30 만원씩 최대 1년 지원 <br>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 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 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 업주 <br> - 계속고용 1 인당 월 30 만원을 6 개월간 지원 $(500$ 인 이하 제조 업은 12 개월) |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고용센터) |

3) 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제 23 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 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3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삭제<2010.12.31>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 세 이상으로 1 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 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 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정년을 57 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게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 개 월 이내에 고용(이하 이 조 및 제 28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고 재고용 전 3 개월, 재고용 후 6 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 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 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 ) 시행규칙(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 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 1 항제 2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 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이 경우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 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 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6 세 미만인 경우는 56 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날부터 1년
(5) 제 1 항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 는 금액에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제 28 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 개월(제 12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 개월로 한다) 동안 지급한다.
(6)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7)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고용노동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을 연장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령인력의 활용을 통 한 국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본 사업의 운영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비교적 그 성과가 높은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 효율성 지표인 사중손실 효과가 $15.3 \%$ 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효과성 지표는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4.1점(5점 척도)으로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648개 사업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 범위와 수

준 확대 필요" 응답이 $56.0 \%$,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지원 요건 절차상 개선" 응답이 $23.9 \%$, "폐지" 응답은 $7.6 \%$ (‘08.3월 한국노동연구원 실태 조사)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업주는 긍정적 인 것으로 보인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계속 / 2006년 |
| 총사업비 | 37억원('09년) |
| 사업규모 | 1,085 명('09년) |
| 지원조건 | 직접수행,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10 \%$ 이상 삭감된 54세 이상 근로자에 게 삭감된 임 <br> 금의 50\%를 최대 6년간 지 원(연 600만원 한도) |
| 사업시행주체 | 노동부(고용센터) |

3) 근거법령

| 지출의무 |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 |
| :--- |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 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1) 사업주가 제 12 조에 따른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 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 정 기간 지급하는 고 용 지원금

2．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 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 는 고용 지원금．이 경우＂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 편，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3）제 2 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1）법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고용 지원 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5 조 및 제 26 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2）법 제 14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 용보험법 시행령」 제 2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법 제 14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 용보험법 시행령」제 33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 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8 조（임금피크제 지원금）（1）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 23 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임금피크제＂라 한다）에는 근 로자에 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 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 세 이후부터 일 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 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 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 우
3. 정년을 57 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하면서 55 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4.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정년퇴직 후 3 개 월 이내에 고용(고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2) 제 1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 개월 이상 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수준 이상 낮아진 자(해당 연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는 제외한다)에 게 지급한다.
5.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경우: 100 분의 20
6. 제 1 항제 2 호의 경우: 100 분의 50
7. 제 1 항제 4 호의 경우: 100 분의 30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 (3) 제 1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 1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고용 기간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보다 더 짧은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을 말한다) 동안 지급한다.

1. 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재고용 또는 고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임 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부터 10년

2．제 1 항제 2 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 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들거나，제 1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경우：재고용 또는 고용된 날부터 5 년．다만，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제 1 항제 3 호 또 는 제4호에 따라 재고용 또는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지원 기간은 통산하여 10년으로 한다．
（5）제 1 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산정，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영 제 28 조제 2 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 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 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 2 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징 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질병이나 부상
3．사업장의 휴업
4．삭제＜2008．9．19＞
5．쟁의행위
6．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제28조 1．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8 조제 2 항 관련）：「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의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 을 제외한다）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액이 $57,6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 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 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 산한 금액）이상인 사람
2．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 28 조제 3 항 관련）
가．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에 100 분의 50 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지급액은 연간 $6,000,000$ 원（중간 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 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 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 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다만 해당연도 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57,6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 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지급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해당연도 중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 기 피크임금에 임금피크제의 적용 이후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금액과 해당 연도 분기임금과의 차액에 100 분의 50 을 곱한 금액으로 산 정하되, 지급액은 분기 $1,5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 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 산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해당연도 분기임금과 지급액의 합이 $14,400,000$ 원(중간퇴직 등으로 인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분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가목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함.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인상률 <br> $(\%)$ | 6.0 | 6.7 | 6.4 | 5.2 | 4.7 | 4.8 | 4.8 | 4.9 | 1.7 |

3.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시 임금피크제에 의한 임금 감액 으로 보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2조의 11 제 6 호 관련) : 질 병, 교육,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 휴가
4. 제 2 호가목에 의한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과다지급분이 발생한 사람이 이 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후 연도의 보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과다지급분 만큼 상계하고 지급함.

## (8) 경영이양직불(농림수산식품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보조금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 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

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히 10 년 이상 장기간 농업 을 경영하고 조기은퇴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 원할 필요가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1997 ~ 계속 |
| 총사업비 | - 억원 |
| 사업규모 | '09년 8,290ha, 32,429 백만원(직불금 26,888 , 사업운 영비 5,541 ) ' 10 년 $10,000 \mathrm{ha}, 69,884$ 백만원(직불금 63,564 , 사업운영비 6,320 ) |
| 지원조건 | 지원내용 <br>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 \sim 70$ 세 농업인 이 지급대상 전•답•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 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할 경우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지원단가 : 매도 - 임대 동일하게 ha당 연 300 만원(매월 25 만 원 지급) 지급기간 : 신청연령에 따라 6~10년(ha당 월 25 만원씩 분할 지급) 수혜자 : 농업경영 조기은퇴농업인과 전업농 등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3) 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

## $\square$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2)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 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4 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 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1) 공사는 제 11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양 보조금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한 전 • 답 • 과수원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8 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1) 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 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 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 1 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 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9) 조건불리지역직불(농림수산식품부)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 원함으로써 해당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지역은 낮은 농업생 산성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주민 스스로 특색있는 농 촌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이나 EU 에서도 농업생산 유지를 통한 토양침식 및 홍수방지 등 농업의 다 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 총사업비 | - |
| 사업규모 | '09년 33,581백만원 <br> (직불금 32,653 , 행정비 834 , 홍보•DB관리 94 ) ' 10 년 41,745 백만원 <br> (직불금 40,816 , 행정비 835 , 홍보•DB관리 94 ) |
| 지원조건 | ○ 지원대상 농업인 <br>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 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br> -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여야 하 며, 농지관리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 구 분 | 내 용 |
| :---: | :---: |
|  | 지원대상 농지 <br>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정리(경지율 $22 \%$ 이하, 경사도 $14 \%$ 이상 농지면적이 $50 \%$ 이상)의 농지(밭, 과수원 등) 및 초지 법에 의한 초지 <br>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읍•면은 경지율, 경사도에 관계없 이 모든 법정리 <br>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05년(3년 동안)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급요건 <br> - 농지관리의무와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의무이며, 마을 활성화 실천의무는 마을여건에 따라 1 개 이상 이행할 경우 직불금 지급 보조금 지원단가 <br> - 밭 - 과수원 500 천원/ha, 초지 250 천원/ha |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3) 근거법령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 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 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 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2)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 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 지를 경작하거나「초지법」제 5 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 라 한다)을 지급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3)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1)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 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bigcirc$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2) 제 1 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99호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지불제

- 재원 및 지원 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70 \%$, 지방비 $30 \%$
- 지급단가 : 밭 - 과수원 : 50 원 $/ \mathrm{m}^{2}$, 초지 : 25 원 $/ \mathrm{m}^{2}$


## (10) 경관보전직불(농림수산식품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은 유휴농지에다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여 아름다운 경 관을 보전하고 형성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실시한다.

본 사업의 결과로 형성된 경관은 국민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공공재 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관향 상을 위하여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참여하는 주민에 대 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 께 농촌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을 통해 도시민유치 및 지역축제 등 활 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05~'17 |
| 총사업비 | -억원 ('09까지 145억원) |
| 사업규모 | 연차적으로 경관보전지역 확대('17: 30천ha) |
| 지원조건 | 국고 $70 \%$, 지방비 $30 \%$ |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시 • 군과 농업인간 협약 체결) |

3) 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 $\square$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2)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 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square$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조(경 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2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지역에서 경관

을 형성 • 유지 •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 • 관리하는 농업인등에 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이하＂경관보전보조금＂이라 한 다）을 지급한다．

제39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 등）（1）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은 제 37 조제 5 항에 따라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 업인등에게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의 자연환 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농산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시 • 도지사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 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 조（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출규모 법률（ ）시행령（ $\bigcirc$ ）시행규칙（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농 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2．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 35 조 및 제 43 조에 따른 농 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3.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농지
제 39 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 등) (2) 제 1 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액은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 정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38 조제 1 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 활동, 비용 사용 방 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11) 친환경농업직불(농림수산식품부)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 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 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 사업 의 결과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양관리개선 등 환경친화 축산업발전을 유도하 면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농법은 실제로 관행농법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생산 량감소가 크기 때문에 소득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직불금 보조가 필 수적이라 하겠다. 또한 친환경 축산의 정책 강화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 로운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 :--- |
| 사업기간 | '99~계속 |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1,358 억 원) |
| 사업규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08년 기준 17만ha)에 대해 3년간 지급 <br> 친관축산생산 농가 ('09년 기준 50호)에 대해 3년간 지급 |
| 지원조건 | 민간 • 지자체 보조 $100 \%$ |

3) 근거법령

## 지출의무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 $\square$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1)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 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 를 확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 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 보조금（이하＂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2）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해당 연도 말까 지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친환경농업육성법」제 18 조 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친환경농업육성 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지원）（1）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생산자단체，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 라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농업환경의 유지 • 개량실적
2．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 훈련실적
5．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에 대한 지원）농림수산식품부장관，산림청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수매의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 지출규모

법률( ) 시행령( $\bigcirc$ ) 시행규칙 ( $\bigcirc$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9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1)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제 17 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7 조제 3 항에 따른 친환 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제 1 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업 이행 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 10 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영 제 19 조제 2 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의 농가당 지급면적 상한은 5 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3 회만 지급한다.

## 제 4 장 의무지출 입법에 대한 통제

##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의무지출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을 상기할 때, 의무지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규 입법의 통제 필요 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2010년 말 현 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9조 달러(GDP의 $62.1 \%$ )를 넘는다고 한다.43) 이 런 이유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바라보는 미국 정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의 축소이다. 2010년에 미국 의회는 수입지출균형법(PAYGO법)을 제정하였고, 오바 마 대통령은 초당적 성격의 대통령 소속 국가재정책임성•개혁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f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를 설립하 였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435.5 조원(GDP 대비 $35.1 \%$ )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에 따른 국가신인도 저하 및 재정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고 령화 추세 및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관리는 우리에게도 중 요한 현안이다. ${ }^{44)}$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축소 추진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고통 이 가중되고 너무 늦어지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고 려해 국회에서 재정준칙과 그 이행수단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할 시점이다.

[^11]이하에서는 미국의 예산준칙의 이행강제수단(특히, PAYGO rule)을 우 리나라에 맞게 수정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그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제 2 절 의무지출 입법과 수입지출균형 준칙

## 1.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의 의의

(1)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PAYGO 준칙의 의미

국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재량과 준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 느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재량은 국가경제 환경 및 재정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기에 매우 효율적 기재이고, 특 히 재정위기시에 그 역할이 더욱 확대•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법적 규율로서 준칙은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에 유리하며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운영기조의 수립이나 선심성 예산낭비의 저지를 위해 일응 효과적인 수단이라 평가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을 국 가재정운영의 중요 목표가치로 설정하면서도 경기부양의 필요성이나 복지지출의 수요 증대에 따라 재량에 좀 더 방점이 찍힌 정책을 유지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지출통제을 통제하기 위한 필요를 체감하게 되는 상황에서 준칙(Fiscal Rule) 중심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치가 수시로 대두되곤 했다.45)

국제통화기금(IMF)의 2010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보고 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출 상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목표 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
45) 재정준칙의 정책적•법적 함의에 대한 상세는 길준규, 「재정준칙론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 38 집제 3 호, 2010 참조.

안으로 IMF 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포함해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보다 공식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의 타당성을 보여주 는 실례가 바로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예산집행법(BEA)이며, 이 법 에 규정된 재정준칙의 이행강제수단은 1969년 이후의 재정적자에서 1998년 재정흑자로 돌아서게 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46)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은 수입과 직접지출(의무지출)입법의 고 려의 관점에서 예산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규칙 내지 절차인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재정적자를 유발하거나 증 대시키는 또는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입법을 좌절시키거나 막으려는 수단이다. 이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정건전성의 훼손방지와 재정적자의 감 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PAYGO 준칙은 재량지출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고 직접지출 혹은 의무지출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 에 예산집행에 있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수단은 아니다.

한편 PAYGO 준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예산제도상 의무지출 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의무지출은 정부의 의지 와 별개로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와 규모가 정해지는 경직성 지출로서 의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에 근거, 수권법(Authorization Act)에 의하 여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된다. 따라서 의무지출은 수권법에 따라 지 출이 결정되는 것으로 세출위원회의 세출승인법과는 관계가 없으며, 재량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증감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무지출은 법률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영 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재량지출에 비해 중장기 예측이 가능 하고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재량지출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46) 그 후 흑자가 커지면서 예산집행법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게 되었고, 한시 법이었던 해당 규정이 2002년 실효됨에 따라 2002년부터 다시 적자시대를 맞게 된 다. 김건오, 앞의 글, 2 면.

반면 의무지출은 일단 인정되면 그 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를 재정당 국이 조정하기가 어려운 성격을 지니는 바, 재정건전성이라는 측면에 서는 요주의 대상이 된다.
[표 9] 미국 재정법상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비교

| 구 분 | 재량지출 | 의무지출 |
| :---: | :---: | :---: |
| 수권입법의 예산상 영향 | 세출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허가 | 예산재원의 제공 |
| 세출위원회의 역할 | 예산재원의 제공 | 예산재원에 대한 통제력이 없거나 미약함 |
| 입법의 빈도 | 매년 | 불규칙적, 정해진 일정 없음 |
| 예산집행규칙 | Spending CAP <br> (지출상한) | PAYGO Rule <br> (수입지출균형 준칙) |
| 예산결정의 실행 | 제302조(b) 할당 | 조정과정 |
| 예산영향계산의 기초 | 당해연도 수준과 다음연도 대통령 요구액을 비교해 승인된 금액 | 기준선전망과 정책변경의 추정 |
| 경제적 민감도 | 낮음, 간접적 | 직접적, 때때로 자동적 |
| 정치적 민감도 | 다양함, 일부사업은 높지만 일부사업은 낮음 | 때때로 매우 높음 |
| 예산과 실제지출의 일치정도 | 대체로 높음 | 대체로 낮음 |

(출처 : 현성수 외, 미국연방예산론, 2005, 81 면의 표를 일부 수정)

한편 PAYGO 준칙은 회기 동안에 고려되는 예산입법에 대한 영향 만을 고려하는 원칙이지, 경제의 변동, 통계의 추이 기타 등을 고려하

여 이루어진 현재 적용 중인 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지출이나 수입의 수준을 변경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 는 무력한 한계를 지닌다.
(2) 법률상의 PAYGO와 의회규칙에 근거한 PAYGO

미국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예산통제를 목적으로 PAYGO준칙이 사 용되었는바, 기본적으로 법률상 준칙(statutory PAYGO requirement)과 의 회규칙(특히, 상원)에 의한 준칙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두 가지 형 식은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형식만 효력을 발생하기도 한다. ${ }^{47)}$

먼저, 법률(Statutory)에 근거를 두고 운용된 PAYGO 준칙은 예산집 행법(the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에서 근거를 두었는바, 동법 은 1985년의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의 수정법이다. 동법의 PAYGO요건 에 관한 규정은 1990년 종합예산균형법 제13장(Title XIII of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며 이는 다시 1993년 종합예산균형법과 1997년 예산집행법에서 PAYGO 준칙의 연장적용을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강제조정 (sequestration)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상의 PAYGO 준칙에 따라 적 자가 발생한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바로 자동적, 전반적 으로 발생하는 강제조정의 방법이다. 여기서 강제조정(sequestration)이 란 의회가 PAYGo 준칙을 지키지 못하여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경 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 영향만큼의 직접지출을 감소시키는 명령을 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법률상의 PAYGO 준칙에는 강제조 정이라는 강력한 실행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
47) 법률에 의한 PAYGO는 10 여년 넘게 존재하다가 2002년도에 기한만료로 폐지되 어 상원규칙 및 하원규칙에 따른 절차와 법령에 절차만이 존재하여 왔는데, 최근 2010년 2월 오바마 정부에 의해 영구법으로 부활하였다.

의 면에서는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의회 와 대통령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그 실행을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입법으로 그 실행이 번번히 무력화되었던 것이다.48) 이와 관련하여 의 회와 대통령은 6회에 걸쳐 PAYGO준칙의 정상적 작동을 금지하는 실 정법 조항을 제정하였으며,49) 동법률들에서는 관리예산처장이 예산절 감액(savings balances)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삭제함으로써 예산절감액이 다음번 회기에서 상쇄입법을 제정하는 데 근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놓거나, PAYGO 준칙 기록표상의 비용 항목을 삭 제하여 강제조정을 모두 회피하였다.50) 여기에 부시 행정부 초기 대대 적으로 감행되었던 의료보장 체계 변동과 대규모 감세조치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산집행법의 효력이 만료한 시점인 2002년 이후에 도 2006 회계연도까지 포괄적으로 강제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Public Law 107-312가 공포됨으로써 결정적으로 법률상의 PAYGO 준칙이 무력화되었고 이때부터 재정상황은 적자로 전환되었고 재정적자는 심 화되어 갔다.

한편 연방 상•하원은 의회규칙에 근거한 PAYGO 준칙을 별도로 도 입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법상의 PAYGO 준칙의 확장적용이라 평가 된다. 즉, 1993년에 상원은 내부적 PAYGO 준칙을 채택한 바 있고 이
48) 즉, 입법에 있어 PAYGO 강제조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였더라도 그것 이 법률상 PAYGO 준칙의 목표에 어긋나는 지출과 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확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로 의회와 대통령이 누리는 입법 절차상의 유연성이라는 이점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들이 "긴급 요건(emergency requirement)" 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다. Robert Keith, Budget Sequesters: A Brief Review, CRS Report for Congress RS20398, 2004, 1~2면.
49) 이들은 각각 1993년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6년의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1997, 1997년의 The Balanced Budget Act, 1999 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0, 2000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1, 그리고 2002년의 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for FY2002 등이다. 이상 법률들에 대한 상세는 Robert Keith, 앞의 글, 3~10면.
50) Robert Keith, 앞의 글, 12 면.

원칙 하에서는 조세감면이나 직접지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어떠한 조 치도 상쇄방법을 포함해야 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상원은 이 원칙에 중요한 수정을 가한 바 있다. 첫째는 현재 예산상의 흑자를 넘지 않 는 조세감면이나 직접지출의 증대를 허용하는 것이고, 그 후에 두 번 째로 예산결의안에 인수된 어떠한 조세감면이나 직접지출의 증대에 대해서는 PAYGO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면제를 허용하였다. 2007년에 연방하원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6~11년의 추계기간동안 직접지출과 수입입법에 적자중립적이어야 한다(즉, 재정적자를 유발해서는 안된 다)는 내부적 PAYGO준칙을 수립하였는데, 하원의 동 원칙 하에서는 어떠한 면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 상원의 동일한 내용으 로 PAYGO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51)

법률상의 PAYGO준칙은 1993년의 종합예산균형법에 의하여 그 효 력이 1998회계연도까지 연장되었으며 1997년의 예산집행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까지 다시 연장되었으나, PAYGO 준칙 기록표(scorecard) 상의 모든 잔액을 0으로 맞추는 Public Law 107-312를 통과됨으로써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52) 이에 반해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 준 칙은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라는 유력한 관행을 통해서 그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건전화를 논할 때 PAYGO 준칙 을 빼놓을 수 없으나, 이때 PAYGO 준칙은 사실상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가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 여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이 준칙을 법률상의 근거 형식 으로 그것도 영구법으로 도입하였는 바,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 하는 단체로서의 의회에서의 규칙과 함께 이 단체성이 가지는 한계를 보충할 법률상의 규칙이 함께 필요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51) Schick, The Federal Budget - Politics, Policy. Process, 3d. Ed., Brooking Institution Press, 2007, 171면.
52) Robert Keith, Termination of the "Pay-As-You-Go"(PAYGO) Requirement for FY2003 and Later Years, CRS Report RS21378, 2002, 1~2면.
(3) 2010년 PAYGO법의 제정

1998년에 미국은 30년만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4 \%$ 를 상 회하는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재정수지 흑자가 증가하자 PAYGO준칙 은 각종 예외를 통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1997년 연장 후 5년째인 2002 년이 되자 미 의회는 기간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PAYGO 준 칙을 폐지하였다. 그 이후 2010년 2월까지 법으로 명시된 재정준칙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2002년에 명문화된 재정준칙 소멸 이후 재정 적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의회는 재정적자를 억제하려 하였 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이라크 전쟁, 자연재해(허리케인 카트리 나), 금융위기 극복 등의 이유로 재정적자는 급증하여 2009년에는 GDP 대비 $11.0 \%$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적자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자 2003 년부터 PAYGO 준칙을 재도입하려는 논의가 의회에서 있어 왔다. 그 러나 민주당은 직접지출(의무지출)과 세입에 모두 이를 적용하려고 주 장한 반면, 공화당은 직접지출에만 이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입법화는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PAYGO 준칙은 의회 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하원과 상원은 내부적인 의사절차로서 PAYGO 를 유지하고 있었고,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 예산결의안에는 일 종의 부대의견으로서 직접지출입법 심사시에 PAYGO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량지출에 대해서도 예산결의안에서 한도 를 설정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재량지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규칙만으로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억제할 수 없었 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2009년 6월 하원에 PAYGO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고, 상원의 수정안을 2010년 2월 4일 하 원이 통과시키고, 2월 12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입법화되었다.

2010년 PAYGO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출과 수입 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에 따르는 수입감소의 상쇄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것과 중복적이거나 쓸데없는 예산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감시기구(Comptroller General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관한 것이다. 동법은 2010년 2월12일 이후에 세수, 세입, 또는 의무지출에 관한 사항을 변경시키는 입법 또는 법률개정 에 적용된다.

동법에 의하여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법안은 증가된 지출을 완전 히 상쇄시킬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PAYGO 준칙이 재확인되었다. 만일 의회가 PAYGO법을 위반한 결의를 한 경 우라도 해당 결의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이에 관하여 OMB 에서 충당 방안 없이 결의된 안건으로 인한 지출액을 계산한 후에 이를 보고하 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당 위원회의 의무지출 항목들의 예산안을 일정비율 강제삭감(Sequestration)시킴으로써 상쇄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 이다. 아래에서는 2010 PAYGO ACT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분설한다.
(1) PAYGO 준칙의 유효기간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전 PAYGO 근거법규정이 한시법의 형태 였으나, 2010 PAYGO 법은 별도의 시효규정이 없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재정흑자가 발생할 때도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2) 대 상

이 법에서는 PAYGO 입법(PAYGO legislation)을 "기준선에 대비하여 직접지출 또는 수입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나 공동결의안"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즉, 직접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주는 입법행위는 모두 PAYGO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직접지출이나 수입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안이 PAYGO 입법은 아니다.53) (1) 사회보장기금과 우체국기금 은 예산외('off budget')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on budget만이 PAYGO의 대상이 된다. (2) on budget 중 긴급입법은 PAYGO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그리고 특별히 분류된 네 가지 사업(의료보호사업 담 당의사의 보수, 재산•상속세, AMT(Alternative Minimum Tax), 그리고 2001년과 2003년에 입법화된 감세조치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3) 의회예산처 $(\mathrm{CBO})$ 의 비용추계와 PAYGO 기록표(scorecards)

PAYGO 입법의 예산영향, 즉 "PAYGO 입법에 따라 기준선에 대비 하여 지출액이나 수입이 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의회가 정하지 만 의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OMB 에서 결정한다. 의회에서 이 예산영 향을 측정하는 곳은 미국 의회예산처 $(\mathrm{CBO})$ 이다. 상원과 하원의 예산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예산처 $(\mathrm{CBO})$ 에 "PAYGO 입법의 예산영향"(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에 대하여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의회속기록에 기재한다. ${ }^{54)}$

이 추계에 근거하여 OMB 는 PAYGO 입법에 대하여 두 종류의 "PAYGO 점검표(PAYGO scorecards)"를 관리한다. 하나는 5 년 점검표이고, 다른 하나는 10 년 점검표이다. 이 두 개의 PAYGO 점검표는 각각 의 회예산처 $(\mathrm{CBO})$ 의 5 년 비용추계와 10 년 비용추계 결과의 평균값을 기 록한다. 어떤 PAYGO 입법의 5년 비용추계의 합계가 10 억달러이고,
53) 다음의 네 종류는 PAYGO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1)사회보장기금과 우체국 기금은 off budget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on budget 만이 PAYGO 의 대상이 된다. (2)on budget 중 긴급입법은 PAYGO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채무 에 대한 이자지급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그리고 특별히 분류된 네 가지 사업(의료보호사업 담당의사의 보수, 재산•상속세, AMT(Alternative Minimum Tax), 그리고 2001년과 2003년에 입법화된 감세조치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 기록표의 작성에 대하여는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section 252(d)(5)에 따른다.

10 년 비용추계의 합계가 60 억달러이면, 5 년점검표에는 매년 2 억달러 (10억/5년)로 기록되고, 10 년 점검표에는 매년 6억달러(60억/10년)로 기 록된다. PAYGO 대상은 이 두 기록표 중 금액이 많은 것이다. 기록표 는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section 308에 따라서 지속적인 업 데이트를 하도록 하고 있다.
(4) 강제삭감(Sequestration) 절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제정된 PAYGO법(The Statutoty Paygo Act of 2010)에 의하면, 소득이나 의무지출을 변동시키는 2010년 2월 이 후의 모든 입법에 있어 PAYGO 준칙이 적용된다. 즉, 소득을 감소시키 거나 의무지출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의무 지출 삭감이나 소득 창출을 통하여 전부 상쇄되어야 한다. 만일 의회가 의무지출, 소득에 관한 상쇄 대책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경우, 그러한 법안은 강제조정(sequestration)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55)

OMB 는 의회의 예산심의가 종료된 14 일(작업일 기준) 이내에 PAYGO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56) 이 보고 결과 의회가 PAYGO 준칙을 지 키지 못하여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으면 대통령은 영향을 받은 만큼 직접지출을 감소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삭감 (Sequestration)이라고 한다.
55) 구체적으로 PAYGO 준칙은 법안의 비용 추계를 PAYGO 스코어카드에 입력하는 형식으로 실행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별규정이 존재한다. 즉, 예산외(offbudget) 항목 비용이나 저축은 제외되고, 법이 인정하는 예산외 항목으로 사회보장신 탁(social security trust)과 우정기금(Postal Service fund)이 있다. 또한 긴급비용(emergency costs), 특정 timing shifts도 제외된다. CLASS법에 의한 저축기금도 제외되는데 건강보험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CLASS법은, advance funding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혜택의 가치와 함께, 자발적인 장기(long-term) 보장 혜택을 사전적으로 조 성하고 있다.
56) 의회의 회기가 끝난 후 14 일 이내에 OMB는 연례 PAYGO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PAYGO 보고서는 PAYGO 기록표, 2010 PAYGO법 Section4(c)에 따 라 동법의 예외로 긴급입법된 사항, 동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예산 삭감된 위원회의 예산항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2010 Pay As You Go Act Section5(a)).

강제삭감명령이 개시되면 직접지출 중 강제삭감대상인 사업들에 대 하여 무조건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지출을 삭감시킨다. 앞의 PAYGO 점검표의 예를 들면, 만약 의회가 해당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PAYGO 를 지키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예산에서 6억달러를 무조건 삭감하 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다시 6억달러를 PAYGO하지 못 하면 대통령은 다음해 예산에 대하여 다시 6억달러를 삭감하는 명령 을 내린다. 다만, 동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법의 적용 면제되는 분야 가 아닌 의무지출항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예산삭감이 $4 \%$ 이상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의료보장57)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은 $4 \%$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8) 이는 PAYGO 준칙으로 인한 무분별한 사 회보장의 후퇴를 경계하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우리가 PAYGO 준칙을 도입하기에 앞서 음미해야할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강제삭감 절차는 의회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서 1985년 GRH법에 도입된 절차로서 2002년까지 유 효한 절차였고, 이번에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강제삭감절차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의회가 PAYGO준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PAYGO 준칙의 성과와 한계

(1) PAYGO 준칙의 성과

PAYGO 준칙은 신규 직접지출 입법의 남발을 방지하고, 정부가 그 수입배당금에 집중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 재정적자의 해소에 기여했다. 1990년대의 세입급증 기간에 클린턴은 재정흑자의 도래와

[^12]GDP 대비 연방세입 비중의 급격한 증가에도 공화당의 세율인하 요구 PAYGO 준칙을 이용해 좌절시킨바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후임자 인 부시 대통령이 대규모 세금감축법안에 비준한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클린턴의 강력한 반대가 없었다면 PAYGO 준칙만으로 전반적 세율인하 요구를 막기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법령상의 PAYGO 준칙은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의회 의 행동과 세입입법 양자에 영향을 미쳤는바, 그것들 중 어떤 것은 절 차적인 것이었지만 상당수는 실체적인 것이었다. 즉, PAYGO 준칙은 조세입법에 있어서 상원이 보유하던 조항수정 권한을 크게 감소시켜, 매 단계마다 상원은 어떤 제안이 세입을 감소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반드시 재정적자 혹은 재정흑자 중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안의 목적에 비춰 의도한 것 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수입의 감소분은 반드시 상쇄되어야 했 다. 예를 들어 1998년 상원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이 세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몇 가지 관행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심사•보고했다. 비록 이 법률안이 연방세입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 지만 동 법안으로 말미암아 향후 5년간 180 억 달러의 세입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을 심사보고하기 전에 재정 위원회는 PAYGO 준칙을 충족시키면서도 세금인상으로 간주되지 않 는 상쇄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절반 가량의 상쇄액은 사업체들이 피 고용인들에게 지급하는 어떤 보전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의 변경에서부터 나왔다.59) PAYGO 준칙으로 말미암아 하원과 상 원 모두 상쇄게임을 해야 했는데 법률안의 목적이 감세를 위한 것인 경우에도 수입을 증가시키는 조항을 포함해야 했고, 상원이나 하원 그리고 어느 정당도 세금인상에 찬성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 기 때문에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도 세입을 증가
59) Schick, 앞의 책, 170 면.

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언제부터 세입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언제 종료하는지 가 비용추계를 필요로 하는 법률안(the score accorded legislation)에 영 향을 미친다. 또 하나의 기법은 비용추계가 5 년 또는 10 년이라는 일 정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기간 이전에 또는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추계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상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 }^{60)}$

1990년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PAYGO 준칙이 도입됨으로써 재정 수지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의 재 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지출 관리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를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PAYGO 준칙은 커다 란 부담이다. 의원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PAYGO 적용 입 법을 도모하는 경우 재정소요만큼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증가 시켜야 하는 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2) PAYGO 준칙의 한계

PAYGO 준칙은 보장적 지출(Entitlement Spending) ${ }^{61)}$ 에 대한 일정한 상한을 부과하는데는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비록 PAYGO 준칙이 적자중립적(적자상쇄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직접지출
60) 미국의 PAYGO법은 PAYGO 규칙의 위반여부를 한 해에 재정적자를 가져오는가 로 판단하지 않고, 5 년 또는 10 년의 기간 중 한 기간에서라도 그 합산액이 재정적 자를 가져오면 PAYGO 규칙의 위반으로 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Keith, Robert, 2010, "The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Summary and Legislative History", CRS Report for Congress, R41157, http://democrats.budget.house.gov/laws/CRS-stat-paygo.pdf, 14~15 참조.
61) 예컨대 " 65 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는 매월 5 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운용 된다. 이 경우 이는 자격이 주어지면 무조건 일정 금액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현존하는 지출계획에 대한 위축 효과는 전무한 것이다. ${ }^{62)}$ 직접지출에 대한 제한이라는 PAYGO 준칙의 이러한 한계는 보장적 지출분야의 급격한 확대를 설명해 주는 의미가 있다. 특별히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출의 증가와 더 유연한 경 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현존하는 민주•경제적 경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실패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만은 아닌 것이다. 비록 수혜자가 그들의 보장지출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현존 하는 지출계획으로부터 그들이 지급받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정치 적으로 볼 때 무척 어려운 일이다. ${ }^{63)}$

또한 PAYGO 준칙은 현존하는 지출계획에 대해 우호적일뿐 새로운 직접지출안에 대해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새로운 지출입법 또는 기 존의 지출안의 확대의 경우에만 PAYGO의 심사에 대상이 될 뿐, 현존 하는 지출계획은 심사에서 벗어나서 대통령 또는 의회의 예산범위에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된다. ${ }^{64)}$
PAYGO 조항은 비용추계메카니즘과 제한된 시계열평가 및 '긴급지 출'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PAYGO의 활자화된 요건에 부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준최적의 정책적 결과 (sub-optimal policy outcomes)를 초래하는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허락하게 된다. 나아가 PAYGO 준칙의 비용추계절차의 복잡성이 일반
62) Ellen Bradford, Matthew Scogin, PAYGO Rules and Sequestration Procedures, Harvard Law School, Federal Budget Policy Seminar Briefing Paper No.2, 14면.
63) Ellen Bradford et.al, 앞의 글, 15 면.
64) Richard Doyle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불활성의 문제라고 일컫는다. 만일 기존의 지출계획이 PAYGO 조항에 따르면 제거되었어야만 한다면 이러한 차별적인 취급 의 부정적인 결과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이를 두고 PAYGO준칙은 새로운 지출계 획을 죽이는데 사용되는 유효한 독약(effective poison pill)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PAYGO 조항은 현존하는 지출계획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심사'대상의 가능성 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출된 직접지출계획에 대한 옹호자 들은 적자상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Ellen Bradford et.al, 앞의 글, 16 면.

대중을 좌절케 하거나 혼란케 하는 불투명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비 용추계절차는 지출입법과 관련한 발생 비용손실을 결정하는데 쓰이는 데 이는 정책입안자들의 선호를 실제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입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순적자의 계산에서 '긴급지출'을 제외하고 있는데, '긴급지출' 의 정의는 대통령이 직접지출을 지정하거나, 의회가 긴급요건'으로서 지정한 지출입법을 말하므로 무엇이 긴급지출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재량은 특 히 경제불황의 상황에서 현재의 지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입이 부족한 경우 남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 제 3 절 PAYGO 준칙의 도입 가능성

## 1. PAYGO 준칙의 재정법적 의의

현대국가의 사회개입은 대략 두 가지 유형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하나는 규제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일 쏟아져 나오 는 입법들이 재정을 수반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 럼에도 현대국가는 재정에 대한 걱정 없이 입법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국채발행이라는 조세저항 없는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국채는 무한정 증가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미래세대로 이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현대 재정국가에서 재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세대와 미 래세대간 재원부담의 배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 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원의 배분과 부담의 배분을 결정할 때는 항상 어느 세대가 혜택을 누리고 누가 부담을 지는 것이

정당한지 고민하여야 한다. PAYGO 정신은 우리의 현행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1조 및 제 18 조 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 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 로 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적 자예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다(국가재정법 제1 조 및 제18조). ${ }^{65)}$

1990년대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PAYGO 준칙이 국내 도입됨 으로써 재정수지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은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이기도 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 율적인 재정지출 관리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 록 경제를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재정규율이 도입되고 있 다. 국가재정법에서는 2012년부터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정 부제출 입법안의 경우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준칙을 적용시키 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PAYGO 준칙 의 도입배경을 비롯한 그 운영현황은 향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1924 년에는 의회가 직접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가 안을 가져오면 이를 자료로 하여 의회가 결정하여 준다는 분업 관 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의 관계에서 공동 편성은 적합하 지 않지만, 정부 계획 제출, 국회 편성은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65) 임명현, 「미국 재정법상 세입세출 균형규칙 운용현황과 입법적 시사점 워크솝 자 료집」 토론문, 2010.10.22, 79면.

의 편성과 심의와 유사한 절차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 내지 최종 결정권은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국회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에서 국회도 예 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도 작성하고, 500 억 이상의 경우에는 예비타당 성 조사도 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오히려 국회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별다른 검증없이 갑자기 사업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이 점이 바로 국회가 제출하는 법률안 즉,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PAYGO 준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PAYGO 준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기관이익을 중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한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관 점이라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PAYGO 준칙과 복지재정

미국에서 도입한 PAYGO 준칙은 수입과 직접지출(의무지출) 법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직접지출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법률에 의해 지출규모가 직접 결정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반면 재량지출은 법률의 근거를 갖고 있으나 지출여부나 규모가 직접 법률에 의해 결정 되지는 않는다.66) 따라서 미국의 PAYGO 준칙도 근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현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하지 말고 현세대가 직접 그 재원을 마련하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PAYGO 준칙이 도입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미 의무지출 (복지지출)의 비중이 임계치에 달하여 더 이상 증가되는 것을 방치하

[^13]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려가 배경이 되었다. 즉, 미국은 의무지출에서 의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세입세 출의 균형을 위한 PAYGO 준칙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의무지출은 대부분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PAYGO 준칙은 복지관련지출 확대에 대해 일정한 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PAYGO 준칙상 세입 이 증가된다면 세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지지출의 확대 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경제규모 의 확대 등에 의한 세입증가는 미국과 같이 경제성장률이 개발도상국 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 선진국에서는 급격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세법의 개정을 통한 세입의 증가 역시 여러 한계로 인해 여의치 않는 것이 통상이다. 결국 PAYGO 준칙의 운영은 복지에 관한 더 이상의 지출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로의 당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매우 신중함이 요 구되는 대목이다. 적절한 복지수준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한 국적 상황에서는 PAYGO 준칙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 정적자를 줄여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복지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PAYGO 준칙의 국내 도입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균형•건전 재정의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PAYGO 준칙의 주된 통제영역 이 될 수 있는 복지분야의 지출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객관 적•규범적 조명이 요구된다. 이는 PAYGO 준칙의 적용을 받게 될 의 무지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관계된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의무지 출에 대하여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 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제4 의2호)"로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에 따른 재정규율에 대한 사항도 전무하 다. 따라서 PAYGO 준칙의 도입에 앞서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단순히 '법률상 직접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상 지출규모가 결정된다'는 형식요건 외에 의무지출로 삼는 지출항목의 특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이다.

## 제 4 절 PAYGO 준칙의 헌법적 한계

## 1.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수단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유력한 장치로 채택된 PAYGO 준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PAYGO 준칙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사회보장행정상에 있어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관련 법 률의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 의 구체화에 따른 사회보장관련 법률의 국가 구속으로부터 당연한 것 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실현을 국가재 정법은 의무지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보장청구권은 여타 다른 국가의 무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한 그 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가 변적임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의무실현도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의무지출에 근거한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PAYGO 준칙을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국가

의 사회보장의무실현에서의 입법부작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장은 필요한 경우에 여러 형태의 예산으 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엄격한 PAYGO 준칙의 채택에 따른 경직성으 로 인하여 사회보장체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PAYGO 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의무지출의 범 위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수단으로서 PAYGO 준칙을 채택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무이행의 부작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PAYGO 준칙의 적용상 예외 내지 한계에 대한 논의를 소홀할 수 없다. 이에 이하에서는 PAYGO 준칙이 미국의 제도임을 상 기하여 미국와 우리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현상과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PAYGO 준칙의 국내 도입을 위한 합헌적인 한계 설정을 시 도해 보기로 한다. ${ }^{67)}$

##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 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 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 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의 원리를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 31 조 내지 제 36 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
67) 이하의 헌법적 논의는 국립목포대학교 홍석한 교수의 자문의견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의 원리를 구체화하는 여러 표 현을 통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68)}$

사회국가의 원리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그 에 따른 책임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법상의 한계와 그 실현은 국가의 급부작용을 통해 실현되는 만큼 국가의 경제력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된다. ${ }^{69)}$ 즉, 사회국가의 원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복지의 계획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 회적 약자의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그에 반대되는 정책의 금지 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이라는 공통분모를 나타낼 뿐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을 통한 형성에 맡겨져 있다.70)

이처럼 사회국가의 원리는 사회적 기본권과는 달리 개별적인 근거 조항에서 추출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불확정성이 문제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불확정성과 형성과정의 역사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사회국가의 원리는 경제환경 의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이며,71)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위
68)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 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 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 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 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69) 사회국가원리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는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263 면 이하;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222 면 이하;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157면~ 159면 참조.
70)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공법연구 제 31 집 제 1 호, 2002 , 62면.
71) 김상겸,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고찰 -독일 기본법상의 전개과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1, 138면.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의 장점이 있다. 사회국가원 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만을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나 목표로 규정할 뿐이고 정의로운 사회 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방적이다. ${ }^{72)}$
(2)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국 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73) 인권의 활 성화를 위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을 창출해줄 것을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74)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 리75) 등으로 정의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 는데 그치는 자유권과 달리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한 다. 이에 사회적 기본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고 가변적이 기 때문에 그 실현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대해 입법에 의한 구체 화를 필요로 하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나 재정능력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 본권의 실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넓은 재량과 국가의 재 정능력에의 의존성이 강조된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인 권리 로 보장하고자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현이 국가
72) 김종보,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 심으로 -,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9, 98면.
7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644면.
7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532 면.
7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794면.

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회 적 기본권의 현실화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달려있다고 본다. ${ }^{76)}$

헌법재판소 역시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재원확보의 문제로 서 제한된 국가재정의 배분과 우선순위결정의 문제이며, 복지를 위하 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과 이행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다른 여러 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 정할 사안으로서, 그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국가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일차적 주 체인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로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강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 만 헌법이 스스로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 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국가기관이 특정한 행위를 하 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입법자의 재량과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위헌심사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 }^{77)}$
다만,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에 대하여는 사회적 기본권이 직 접적인 효력을 갖는 자유권과는 달리 입법자에 의한 구체화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 ${ }^{78)}$ 사회적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효 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사회적 기본권이 국 가작용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와 달리 직접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본권은
76) 김정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0, 40 면.
77) 헌재 2002.12.18, 2002 헌마 52.
78) 차진아,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학연구 제 15 권 제4호, 2009, 57 면~58면.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상 규정된 권 리가 국가의 재정정책에 의해 입법재량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은 헌 법에 구속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거나79)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구체적 권 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의 재정상의 문제는 그 권리가 차지하는 헌법상의 내용과 비중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80)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 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입법에 의한 구체화 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주관적 권리 성을 갖는지 여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만으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 입법이 제정되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둘 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크게 주관적 권리 성을 인정하지 않는 객관설과 이를 인정하는 주관설로 나누어진다.

1) 객관설

객관설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국민에게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객 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79)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803면.
80) 이호용,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한국학술정보, 2007, 106면, 김정환, 사회 복지시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0, 41면.
(1) 프로그램규정설: 프로그램규정설 또는 입법방침규정설은 바이마 르헌법하의 독일의 통설로서 사회적 기본권은 사법적 청구나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 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방침규정일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청구권이 아니며, 이에 대 응하는 국가의 의무도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이고 도의적 인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또는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입법태만에 대해 서도 위헌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프로 그램규정설에 대하여 프로그램규정설이 모두 사회적 기본권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에 기 초하여 직접 국가에 대해 급부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지만 입법자 에 대한 일정한 구속은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81)
(2) 국가목표규정설: 국가목표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목표규정 으로서 모든 국가활동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명령과 지시를 통하 여 특정한 방향으로 국가활동을 정향시키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라고 한다.82) 이 견해는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입법만이 아니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다고 보지만,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가의 객관적인 의무 규정 으로 보면서 그 의무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정하는 것이다.83)
(3) 입법위임규정설: 입법위임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에게 특정한 내용의 입법활동을 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지
8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789 면.
8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903면.
83) 김종보,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 심으로 -,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9, 115면.

시를 말한다고 본다. 국가목표규정설과 입법위임규정설은 양자 모두 헌법이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활동에 의해 정 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구체화에 관하여 국가기관에게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전자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 가작용을 구속하는데 반해 후자는 입법자만을 구속한다고 하며, 입 법 위임규정설은 헌법은 입법자에게 특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입법의무를 부과한다고 보는데 비하여 국가목표규정설은 헌법이 입법 부에 대해 일반적인 형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 법자에 대한 구속력의 측면에서 전자가 더 강하다고 본다.84)
(4) 헌법위임규정설: 헌법위임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게 일정한 방향으로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명령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헌법위임은 입법위임의 의미로 이해되 는 것이 보통이다. ${ }^{85)}$
2) 주관설(법적 권리설)

주관설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로서 주관적 권리라고 본다. 다만, 권리의 직접성 내지 구체성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되 그 권리성은 추상적인 정도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86) 즉,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이며, 국가 의 의무이행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국가적 의무는 헌법에 근거하는 법적 의무로
84) 계희열, 헌법학(중), 2007, 709면. 이에 비해 입법위임규정과 헌법위임규정의 차이 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장영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범위와 실현구조, 미 봉 김운용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410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541면.
85)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542 면.
86) 정만희,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 1995년 10월호, 27면.

본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권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오늘날 사회국가이념에 비추어 사 회적 기본권이 권리로서 중요하다는 점, 기본권 실현에 국가의 관여 가 필요한 것은 다른 기본권도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그 권 리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적 능력 등 현 실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곤 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을 독특한 형태로 주 장하는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한 권리와 그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추 상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률에 의해 구체 적으로 형성되고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전 화된다고 한다. 추상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구체적인 입 법이 없는 한 행정청에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고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객관설과 다를 바 없 다. 다만,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 개인이 갖는 급부청구권을 반사적 이익이 아닌 주관적 권리로 본다는 점에서 객관설과 다르다.
(2)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 권은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헌 법규정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는 아니라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 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 }^{87)}$ 이 견해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모든 헌법 규정은 재판규범이라는 점,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나 정치적 기본권보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더 절실하다는 점, 사 회국가원리를 채택한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국가의 과제
8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648면~649면.

가 중점이 있다는 점,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불합치나 입법촉구결정 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직접적인 급부청구권 으로서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객관설 또는 추 상적 권리설과 동일하지만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소구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자체로서 이미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고 본다. 즉, 사회적 기본권 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직접 소구(訴求)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것이 다.88) 따라서 국민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적 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며, 사회적 기본권도 권리인 이상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행위가 있고 그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국민이 국가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은 당연하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 적•구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입법을 태만히 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위헌이 된다.
(4) Alexy의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이 견해는 모든 사회적 기본권 은 일단 잠정적으로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원칙규범으 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최적화되어야 할 규범이기 때문에 형량을 거 친 후에야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89) 즉, 사회적

[^14]89) R. Alexy/이준일 역, 기본권 이론, 한길사, 2007, 580 면 이하.

기본권을 개인에게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규범인가 아니면 국가에 게 객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인가, 구속적 규범인가 아니면 비 구속적 규범인가, 권리와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여하는가 아니면 잠정 적으로 부여하는가에 따라 8 가지로 구분한 다음, 형량을 거쳐 최적화 된 후에야 사회적 기본권은 비로소 확정적 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본 다. 이는 기본권 규범을 원칙과 규칙으로 굽려하여 모든 기본권은 잠 정적으로 주관적 권리인 것이 원칙이지만 그 효력과 보장의 방법은 형량의 결과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 이 학설은 동일하지 않은 연원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들의 법적 성격을 각각 구별해서 판단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구체 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을 통하여 융통성 있게 실현하는 경우 종래의 학설들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 된다.90)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정도를 상대화한 것으로서 해석자마 다 달리 해석할 여지를 준다는 점이나 3 가지 기준이 어떠한 이유로 채택되었는가, 그 기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91)
3)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별기본권마다 각각 다르게 보고 있다. 개괄해보면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 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 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이 담고 있는 국 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92), "헌법 제34조
90)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628 면.
9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792 면;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541 면.
92)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제2항, 제6항을 보더라도 이들 규정은 단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 진 등과 같은 국가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 만을 국가에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국가에 대하여 사회보장•사 회복지 또는 재해 예방 등과 관련한 적극적 급부의 청구권을 부여하 고 있다거나 그것에 관한 입법적 위임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93) 라고 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대체로 국가목표규정설에 가까운 입 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 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9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질 에 비추어 볼 때 그 법규범력이 미치는 범위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 존'의 보장에 필요한 급부에의 요구권으로 한정될 뿐, 그것으로부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가 직접 도출되어 나오 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95) 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 34 조 제 1 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
93) 헌재 2003.07.24, 2002헌바51.
94) 헌재 1995. 7. 21. 93헌가 14.
95) 헌재 2003.07.24, 2002헌바51.

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회 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포섭하는 이념적 지표로서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권을 행사하여 제 정하는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 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 하다. 산재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 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96)라고 하여 아예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기본권성을 부인하면서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헌법 제 34 조 제 1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보장수급 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이와 같 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 }^{97), ~ " ㅇ ㅢ ㄹ ㅛ ㅂ ㅗ ㅎ ㅓ ㅁ ㅅ ㅜ ㄱ ㅡ ㅂ ㄱ ㅝ ㄴ ㅇ ㅡ ㄴ ~ ㅇ ㅣ ㄹ ㅡ ㄴ ㅂ ㅏ ~ ㅅ ㅏ ㅎ ㅚ ㅂ ㅗ ㅈ ㅏ ㅇ ㅅ ㅜ ㄱ ㅡ ㅂ ㄱ ㅝ ㄴ ㅇ ㅢ ~ ㅎ ㅏ ~}$ 나에 속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 34 조 제 1 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고 의료보험 수급권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 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구 국민의료보험법은 제4장에 서 보험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 및 피부 양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
96) 헌재 2003.07.24, 2002헌바51.
97) 헌재 2001.09.27, 2000헌마342.

용, 의료보험의 개시시기, 비용의 일부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권리 라고 할 것이다."98)라고 하면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이지 만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에 의 해 보장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는 판시를 하기도 한다.

한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와 관 련하여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 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 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 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 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 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 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 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 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

[^15]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 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계보호 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 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 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 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99)라고 하여 입법자 의 광범위한 재량과 완화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제한적 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국가목표규정설 내지 추상적 권리 설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록 입법 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여 명백성 통제에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 만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경우라도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국가의 의무이행에 대한 사법심사 자체를 긍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 3. 미국의 사회적 기본권

(1) 연방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1787년 연방헌법은 권리장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1791년 10 개의 권리장전 규정이 연방헌법에 포함되었다. 이후 1868년 수정헌

[^16]법 제 14 조의 적법절차조항이 보장하는 자유로서 주정부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장전에 관한 규정들에는 명시적으로 사회 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즉, 미국연방헌법은 18 세기 정치사상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헌법이기 때문에 20세기 복지국 가 사상이 헌법조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학설도 헌 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다. 다만, 일부의 경우 '새 로운 재산(New Property)'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복지수급의 자격에 관하여 전통적인 은혜로 보는 관념을 배격하고 복지국가의 실상에 맞 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생존의 보장은 반 대의견을 주장할 권리, 표현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이 며, 생존의 권리는 그러한 전통적인 자유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복지수급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의 존재를 검토하기도 한다.100) 미국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려는 입장은 1776 년 독립선언문의 행복추구권(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규정, 헌 법전문의 일반적 복지의 촉진(promote the general welfare)이라는 문구,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수정헌법 제9조 등을 근거로 하지만, 미 국의 주류법학은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권리성이나 헌법전문의 규범성 을 부정하며, 사회적 기본권의 추론가능성도 일축한다.101)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수정헌법 제 14 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적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존에 관한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2) 연방대법원의 태도

미국에서 사회복지문제가 헌법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 건은 극히 드물다. ${ }^{102)}$ 다만, 대부분의 관련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17]입법재량론을 통해 복지 수급자격의 박탈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국민이 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헌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적극적 의무 부인론(no affirmative duty doctrine)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복지편익은 국민의 근 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가 아니며, 연방정부든 주정부든 최저수준 을 제공해야 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 }^{103)}$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수정헌법 제 14 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적 법절차의 원리에 의하여 우회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평등권에 의한 기본권 보장의 결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을 확 보한 대표적인 판례로는 Shapiro v. Thompson 사건104)이 있다. 사례에 서 톰슨은 임신 중이며 한 아이가 딸린 19살 어머니로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코네트컷주로 이주한 다음 부양아동가족부조(AFDC)에 의거한 지원을 신청했다. 톰슨이 1 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 에 코네티컷주가 이를 거절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주법 규정의 유효 성을 다툰 사건이다. 여기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사회보장급여를 위 한 대기기간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거주기간이라는 수단에 의해 주간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확인한 후 "제약받는 권리가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므로 불가피한 주의 이 익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을 인정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원칙이라는 별도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한 것이다. 동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대표한 Marshall 판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거절하는 것은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심 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5)
103)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제 38 호, 2008, 106면.
104) Shapiro v. Thompson 394 U.S. 618(1969).
105) 정명례,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09, 108면.

한편,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복지급부청구권이 인 정된 예도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Goldberg v. Kelly 사건106)에서는 복 지수급자에게 사전의 고지 또는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복지급 부의 정지가 가능하도록 한 주법 규정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며, Cleaveland Board of Education v. LaFleur 사건107)에서는 임신한 교사에 대하여 출산 전 수개월간의 무급휴직을 명하는 클리블랜드 교육위원회의 규칙에 대하여 교사의 출산에 의한 수업의 중단을 방지한다는 교육위원회의 정당화사유를 배격하고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위의 규칙이 적법절차조항 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 }^{108)}$

## 4. 검 토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수단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서 미국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유력한 장치로 채택된 PAYGO 준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PAYGO 준칙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 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사회보장행정상에 있어서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관련 법 률의 영역에서 거의 대부분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 의 구체화에 따른 사회보장관련 법률의 국가 구속으로부터 당연한 것 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실현을 국가재 정법은 의무지출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8]그러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에 따른 보장청구권은 여타 다른 국가의 무와 달리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한 그 수요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가 변적임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의무실현도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의무지출에 근거한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PAYGO 준칙을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칫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실현에서의 입법부작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경 계하여야 한다. 즉, 사회보장은 필요한 경우에 여러 형태의 예산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엄격한 PAYGO 준칙의 채택에 따른 경직성으로 인 하여 사회보장체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PAYGO 준칙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의무지출의 범 위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수단으로서 PAYGO 준 칙을 채택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무이행의 부작위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PAYGO 준칙의 적용상 예외 내지 한계에 대한 논의를 소 홀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만을 선언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이나 사 회국가적 요청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미연방헌법과 달리 "권 리를 가진다"는 형태로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목록을 갖추고 있다. 물론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가 요구되고 따라서 국가의 재정적 여건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렇다고 하여 그 기본권성이나 소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며, 사회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미국에서도 이를 헌법상의 권 리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평등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평등의 원 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연방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기본권을 매개로 하고, 적법절차 역시 사회보 장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 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의 위헌성 판단을 위 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는 미국에서 조차 사회보장 관련 소송의 사법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PAYGO 준칙을 도입하더라도 사회 적 기본권의 헌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PAYGO 적용 예외사항 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 5 장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 제 1 절 논의의 필요성

2009년도 복지재정지출은 74조 6996억원 규모로，2000년대 들어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복지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수행은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등 10 여개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며，재원으로는 일반회계，5개 특별회계 및 17 개 기금이 관련된다．부처별 재정규모는 주택부분（국토해양부 소 관）을 제외할 경우，보건복지부 $38 \%$ ，노동부 $15.7 \%$ ，행정안전부（공무원 연금） $14 \%$ 등으로 배분된다．복지재정은 건강보험，연금급여，실업급 여，산재급여 등 6종의 사회보험성 기금을 포함시키므로 복지재정에 서 기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3 \%$ 에 이르고 있어 예산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9)}$

복지재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구고령화 및 저 출산 등 경제•사회•인구학적 여건 변동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 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기하는 문제이다．저출산•고령사회에서 대두되는 국 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해 나가자면，현행 제도에 따른 지출뿐 아니라 새로운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복지재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보훈관련 급여 등 의무적인 자격급여，즉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나 저출산 고령사회 진전 에 따라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여 경직성을 띠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110）

109）향후 노령화，사회취약계층의 증대 그리고 보육의 사회책임의 증대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증대는 필연적이다． 지은구，「사회복지재정 연구」，집문당，2010，288～289면．
110）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재정」，2009，242～246면．

의무지출의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무지출의 대부분이 이른 바 복지지출이며,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관리 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적정 관리의 문제로 제기되는 양상이다. 의무지출입법을 통제하여 재정적자 중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정규율인 '수입지출균 형준칙(PAYGO)'은 미래 신규 지출을 억제할 수 있으나 기존 의무지출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의무지출사업, 특히, 그 주 요유형인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적정 관리 내지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가재정법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그런 데 동법은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 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았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 13 조제 2 항제8호). 때문에 상당 부분의 복지지출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지원 수혜계층의 행태변화와 같은 별도의 정 책목표를 갖는 사업은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태의 변화가 일어 나는가와 같은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 분야 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 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111)"은 엄격 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규정한 국가 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복지지출에 대한 예비타 당성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111)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은 비투자재정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지침(2009)상 공적부 조의 단순지원형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복지지출과 예비타당성 조사

## 1. 예비타당성 조사의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이다. 이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 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2003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 용계획안 수립에 있어 기금관리주체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근 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의 기 본운영 틀이 법제화(국가재정법 제 38 조, 동법 시행령 제 13 조에 규정) 되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근거를 규정하고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와 분야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 [그림 4]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식


※ 다만,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 리(총괄수행)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 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얼마나 중 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인 1994~1998년 각 부처가 수행한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 성 조사결과를 보면(표 10) 총 33 건 중 울릉도 공항건설 단 1 건만 타 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사업들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업기획을 한 부 처가 타당성조사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즉 이해당사자인 각 부처의 타당성조사만으로는 정치 권 요구에 의한 사업선정, 의도적인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타당 성의 합리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제어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재원 의 낭비와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팽배했다.112)
[표 10] 1994 ~ 1998년 대규모 재정사업의 자체타당성 조사결과

자료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 7, 건설교통부.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즉 [표 11]에서 보듯이 1999~2008년말까지 총 378건(총사업비 규모 178.9 조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43 \%$ 인 162 개 사업, 금 액으로는 $49 \%$ 인 88.2 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결과 절반 가까이 되

[^19]는 대규모 재정사업들이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무 분별한 재정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113)
[표 1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단위 : 건, 조원)

| 연도 | 조사대상 |  | 타당성 있음 |  |  |  | 타당성 낮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사업비 | 건수 | 비율 | 사업비 | 비율 | 건수 | 비율 | 사업비 | 비율 |
| 1999 | 19 | 27.2 | 12 | 63 | 7.4 | 27 | 7 | 37 | 19.8 | 73 |
| 2000 | 30 | 14.0 | 15 | 50 | 6.1 | 44 | 15 | 50 | 7.9 | 56 |
| 2001 | 41 | 19.8 | 14 | 34 | 6.5 | 33 | 27 | 66 | 13.3 | 67 |
| 2002 | 30 | 16.2 | 13 | 43 | 6.2 | 38 | 17 | 57 | 10.0 | 62 |
| 2003 | 33 | 21.5 | 20 | 61 | 17.5 | 81 | 13 | 39 | 4.0 | 19 |
| 2004 | 55 | 18.6 | 41 | 76 | 13.3 | 72 | 14 | 25 | 5.3 | 28 |
| 2005 | 30 | 12.4 | 19 | 63 | 8.4 | 68 | 11 | 37 | 4.0 | 32 |
| 2006 | 52 | 20.5 | 28 | 54 | 9.3 | 48 | 24 | 46 | 11.2 | 52 |
| 2007 | 45 | 16.8 | 26 | 58 | 10.6 | 63 | 19 | 42 | 6.2 | 37 |
| 2008 | 43 | 11.9 | 28 | 65 | 5.4 | 45 | 15 | 35 | 6.5 | 55 |
| 계 | 378 | 178.9 | 216 | 57 | 90.7 | 51 | 162 | 43 | 88.2 | 49 |

(자료: 기획재정부, 2009. 1)
2. 대상요건
(1)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는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 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기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인 사회복
113) 조영철, 앞의 글, 42~43면.

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하 '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사업이라 한다)이 면서 신규사업인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이다. 예컨대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은 신규 사업에 해 당된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 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구분할 것 없이 재정지원 이 포함되는 사업이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투자관리센 터에서 수행하는 적격성조사로 대체한다. 적격성 조사란 일반적인 재 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 합한지 여부도 분석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것으로 국 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 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 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진행중 총사업비가 500 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 재검증 절차를 거 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중기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인 '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사업

중기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 28 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 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로서 신규 사업 착수 이후 5년간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합한 국가 부담분을 의미한다. 다만, 10 년 이내로 사업기 간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동안 소요되는 재정지출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사업기간이 7년이면서 재정지출 금액

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3) 대상사업의 단위
(1) 원 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 의 과목구조상 114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 적인 하위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사업을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실례로(2008년) 단위사업이 미래기반기술개 발사업이고 세부사업이 신약개발사업이면서 하위사업이 질환후보물질 발굴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약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되겠지만, 질환후보물질발굴사업이 독립적이면서 대상사업의 요 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 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사업이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사업을 예비타당성조 사대상으로 한다. 한편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의 도 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집단사업(Package Project)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여러 개의 개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집 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단위사업별로 예

[^20]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단위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제외 사업

1) 면제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 조 제 2 항 각호)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 공공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의미한다.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 보수사업
(6) 재해예방 -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 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법정시설 또는 필수 설치시설에는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 설, 공동구115) 설치 등이 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 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1]- 이는 사업의 목적이 수혜자의 소득보전이여서 해당 급여 등 을 수혜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사 업으로써,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농가 화학 비 료 구입비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 업 등을 의미하고,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 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2)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 할 수 있다.
(3) 경과조치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 4. 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 09 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 되지 않은 사업은 예외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예컨 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던 국도대 체우회도로 사업시행계획(1996~2026)과 국가지원지방도 중장기사업계 획(1996~ 2026)에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 업에 해당하나 동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09년 1월 현재까지 설계가 추진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사업 추 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3. 선정방법 및 절차

(1) 선정시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 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 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 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 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 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 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 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

적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2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 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 당성조사 요구서116)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의 직권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 한 총사업비가 500 억원 미만이나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 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선정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시 I. 사업계획의 구체성, ㅍ. 사업 추진의 시급성, III. 국고지원의 요건, IV. 지역균형발전 요인(R\&D 사 업의 경우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선정기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는 사 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일정 여부 등을 고려하 여 파악하고, 사업추진이 시급한지 여부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 자우선순위와 정부 정책방향 등과의 부합 여부,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국고지원의 요건은 국고지 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요인이 되는 사업인지는 지역간 불균형 상 태의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이 지역경제 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을 분석 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관련 기술 분야의 국 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해야 한다.
(3) 선정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 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117)를 거쳐 대 상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조사 대상 선정 이후 해당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어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된 사업에 해당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 구시 각 중앙관서 장의 총사업비 추정 오류 등으로 인해 500 억원 미
117)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용규정」('08.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 30호)에 따라 설치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영역별 위원회

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조사 수행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장의 요청이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조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림 5] 대상사업 선정과정


## 4.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순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 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 춰 PM (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연구진 구성은 총괄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 부 전문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위부 위탁과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부과제의 연구진은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지만, 외 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 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KOTI, KMI,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에 대해 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이지만, 대상사업의 성 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대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예비타당성조 사 기간 내에 조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 의 장은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의뢰


## 5. 분석방법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이 외에도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제성분석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 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 다. 일반적으로 $\mathrm{B} / \mathrm{C}$ 비율이 1 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2)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 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정책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문화•생태 등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 선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4) 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기 존 기술 및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분석한다.
(5) 종합평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 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 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사업유형별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범위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 로 AHP 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건설사업 : 경제성( $40 \sim 50 \%$ ), 정책성( $25 \sim 35 \%$ ), 지역균형발전( $15 \sim 30 \%$ )
- $\mathrm{R} \mathrm{\& D}$, 정보화 사업 : 경제성 $(30 \sim 50 \%)$, 기술성 • 정책성 분석 $(50 \sim 70 \%)$
-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 : 경제성(25~50\%), 정책성 분석(50~75\%)
[표 12]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AHP 구조

(6) 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을 결정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 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제 3 절 의무지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 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판단

(1) 논의의 배경

의무지출의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무지출의 대부분이 이른 바 복지지출이며, 의무지출에 대한 적정 관리를 현실적으로 복지지출 에 대한 적정 관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국가재정법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도 예 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 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 현물급여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받았 다. 때문에 상당 부분의 복지지출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며, 기존 복지지출의 적정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이에 대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의 해석 및 입법론

지원 수혜계층의 행태변화와 같은 별도의 정책목표를 갖는 사업은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와 같은 사업효 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서 배제되 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 인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118)"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 예비 타당성조사운용지침(2009)은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란 사업의 목적이 수혜자의 소득보전이여서 해당 급여 등을 수혜자에 게 전달함과 동시에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사업을 의미하여 기초생 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을 위한 직불금 지원, 농가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 사업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따라서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란 사업의 시행(단순히 현금 등의 지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 한 사업으로 한정적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향후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사업의 시행(단순한 현금 등의 지원)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더 이상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한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법령에 따라 추 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2항 제8호).
118)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은 비투자재정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지침(2009)상 공적부 조의 단순지원형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해당사업의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 는 경우를 포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은 대부분 법률에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 는 바, 이러한 포괄적 규정을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 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이 법령에 구체화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 는 것이 국가재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바, 예컨대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포괄적 규정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 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법령"을 "법률"로 개정하자는 의견있으나 이는 행정입법에 대 한 오해에서 비롯된 의견으로 보인다. 동 규정의 해석문제에서 법률 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입법(대통령령. 부령 등)은 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지니므로 법률과 행정입법의 차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부가 행정입법의 효력을 스스 로 약화시키거나 부정하는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한 측면도 있다.
2.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사업규모 등 적정성 검증 위해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여 부를 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만,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특성,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 거에 대한 시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여부 해석의 주체 및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판단
```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 부에 대한 일차적 해석기관은 기획재정부이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사업 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여부를 판단하여 왔으며, 이에 대 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여부 및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 행여부 판단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 상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119 )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 한 사항을 건의하는 기구이므로120)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및 간 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이 라는 차원에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 상정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 상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타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의 처리절차와의 일관성 여부 등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4.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타당성 재조사 시행

국가재정법령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가 500 억원 이상인 사업(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 억원 이
119)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는 국가재정법 제 10 조제 1 항("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에 의 거한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 운용규정"(2008.07.31, 기획재정부 훈령 제30호)에 따라 설치된 재정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영역별 위원회이다.
120)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운영세칙 제 1 조 참조.

상인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 업유형을 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경우 지원조건 변경 등으로 중기 재정지출 규모가 대폭 증액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 등 검증이 불가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여 사회복지분야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 틀안으로 포섭,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기 타

최소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은 "비 투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의 수정이 핋 요하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은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등 분야"를 통칭하여 "기타 비투자재정부문"이라 약칭하고 있는데, 건 설공사,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은 투자대상에 속하나 사회복지 분야 등 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용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규정의 문구에 충실하여 "기타 사업", "그 밖의 사업" 혹은 "그 밖의 사회개발분야사업"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 6 장 결 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의무지출의 무분별한 확대가 가지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과정에 있어 예산준칙의 이행강제수단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상한 설정과 함께 수 입지출균형 준칙(PAYGO rule)을 통한 의무지출 입법 통제 방안을 적 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PAYGO 준칙을 통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의무지출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감소로 적자가 발생하면 다른 의무지 출을 감소시키거나 수입을 증가시켜 상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예결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를 반영해 PAYGO 준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에 송부하여 심사보 고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본회의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21)}$ 다만, 국회는 PAYGO 준칙 적용의 예외 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법률로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때 앞서 논의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입법부작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헌법적 차원에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도 PAYGO 적용 예외로서, (1)예산외(off-budget) 항목에 대한 법안, (2) 긴급비용으로 구분되는 프로그램, (3)농업가격보조, Food Stamp,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등과 관련한 법안, (4)일몰시한이 있는 대체 최저한도세(AMT), 메디케어 수가, 유산세와 증여세 등에 있어 현행법 의 개정법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121) 미국 PAYGO법의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은 신규 의무지출이나 재정수입 법률에 따른 재정적자의 발생에 적용되며, 기존 의무지출이나 재정수입 법률에 따 라 재정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예산법의 조정절차가 적용된다. 우리의 경우, 해당 의무지출 및 재정수입 법률의 소관 상임위명과 변경되어야 할 금액 및 개정 시한을 적시한 조정지침을 담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해당 상임위가 본회 의의 뜻에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법도 위원회가 조정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가 조정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회가 의회 지도부와 협조하여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침을 관철시키고 있다. 김건오, 앞의 글, 4~5면.

한편 PAYGO 준칙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측에서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요지는 PAYGO 준칙으로 인해 지출의 감소 보다는 지출의 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세금의 증가만을 가져왰다는 비판이다. 또한 2011년 발 표된 관리예산처(OMB)의 보고서122)에 따르면 예산점검표에는 640 억달 러의 감소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8840 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증가항 목들이 PAYGO 적용 제외 항목인 것에 따른 것으로 PAYGO 준칙의 재정적자 억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허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PAYGO 준칙이 존재함으로 인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간의 의무지출 확대를 둘러싼 강력한 긴장구조가 형성 되고, 그것이 무분별한 의무지출 입법의 생산을 억제하는 장치로 기 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미국의 PAYGO 준칙이 주는 시사점 은 여전히 크다고 본다.

또한 PAYGO 준칙이 미래 의무지출 입법의 통제장치로만 기능할 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 기존 의무지출사업 중 복지지출사업에 대한 관행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 여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사업의 시행(단순히 현금 등의 지원) 으로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효과의 측정이 무의미한 사업으로 한 정적 해석하여야 하며,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 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사업규모 등 적정성 검증 위해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여부 및 간이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여부 판단을 위해 재정사 업평가자문회의에 상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과 유사한 체계로 구성하여 사회복지분야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 틀안으로 포섭,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무지출의 특성상 향후 중장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전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바,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보다 근본 적으로는 재정수반 입법안에 대해 입법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토대로 의무지출의 부적절한 확장을 제한하는 법적 검토가 보다 강화될 필요 가 있다.

## 참 고 문 헌

## $\square$ 해외 자료

○ 논 문

AGRAWAL (DAVID R.), "Declining Presidential Budgetary and Economic Power: A Result of Rising Mandatory Spending in the Budget".

DAVIS (Edward), "The Evolution of Federal Spending Controls: A Brief Overview", Public Budgeting \& Finance, Fall 1977, pp. 10-24.

WILLIAM (C. Fay), RODGERS (Michelle D.), "Appropriations for Mandatory Expenditures", Harvard Law School, Federal Budget Policy Seminar, Briefing Paper No. 17.

PENNER (Rudolph G.), KOCH (Julianna), "How Much Federal Spending Is Uncontrollable?", TAX NOTES, July 16, 2007, p. 195.

QUADAGNO (Jill), "Social Security and the Myth of the Entitlement ‘Crisis’", The Gerontologist, Vol. 36, No. 3, 391-399.

TRUE (James L.), "AVALACHES AND INCREMENTALISM, Making Policy and Budgets in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00 30: 3, pp. 3-18.

## ○ 정부 보고서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Reducing the Deficit: Spending and Revenue Options", March, 2011.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1 to 2021", January 201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Mandatory Spending Since", 1962, September 15,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Mandatory Spending: Evolution and Growth Since 1962", September 13, 200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Trends in Discretionary Spending", September 10,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OMB Controls on Agency Mandatory, Spending Programs: Administrative PAYGO and Related Issues for Congress", August 19, 20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Reductions in Mandatory Agriculture Program Spending", May 19, 2010.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U.S. Government Budget, Discretionary and Mandatory Outlays by Department for 2010",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11.

NASA,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External Reports-Budget, NPR 9311.1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MANDATORY SPENDING Using Budget Triggers to Constrain Growt", Report to Congress, January 2006.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Budget Process: Use of PAYGO and Discretionary Offsets", July 14, 1998.

## $\square$ 국내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헌법과 재정, 2010.12.
한국조세연구원,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2010.12.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2004.12.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적용방안 연구, 2011.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0.11.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중심으로 -, 2010.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2010.
한국법제연구원, 사후적 재정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 안, 2007.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지은구, 사회복지재정연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285 집, 집문당, 2009.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강태혁, 한국예산제도론, 율곡출판사, 2010.


[^0]:    1) 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하여는 R.A. Musgrave, The Theory of Public Finance(McGraw-Hill, 1959)와 R.A. Musgrave and P.B.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ition(McGraw-Hill, 1989)참조.
    2)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07, 31면.
[^1]:    국가채무의 확대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 지지출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는 바, 미래의 사회보장지출에 대비해 현재의 재정 구조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 입으로 장기적인 세수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9, 29~30면.
    4) 국가재정법 제 7 조제 2 항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

[^2]:    7) 임명현,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 방안 연구 - 2005년도 예산안을 중심 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현안분석 제2호, 2004.12, 5면.
[^3]:    다．이같은 재정소요점검제도는 예산안을 재정수반법안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재 정소요를 파악하고 신규 입법된 재정수반법률이 향후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이 국회심의 중 수정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장치로 활 용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예산 309조 537억（총지출 기준）은 기존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308조 5570억원과 2010년 통과된 법률 51건에 근거 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4967억을 합산한 것이다．재정소요점검제도에 대한 상세는 국회예산정책처，「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도입방안 연구」，2010． 3 ；국회예 산정책처，「재정소요점검제도（Scorekeeping）적용방안 연구」，2011． 4 등 참조
    11）정문종，미국 기준선전망의 의의와 우리 예산과정에 대한 시사점，국회예산정책 처，2007．6，경제현안분석 제15호，3면．${ }^{「} 1985$ 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 통제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250조（c）（5）정의에 따르면＂기 준선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예산권한，지출，수입，그리고 흑자 또는 적자의 현재연 도의 수준의 예산연도와 그 후속연도에 대한（257조에 기술된）추계를 의미한다．＂

[^4]:    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에 대한 증가율 및 산출내역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 록 함으로써 중기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자 하는 취지로 국가재정법에서 도입되었다.
    16)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자체에 소 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일정기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한다.

[^5]:    한이 있기 때문에 상원에 있는 가장 강력한 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무지 출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8) 이자지출은 국가채무의 크기와 구성 및 재정적자 또는 흑자 그리고 시장 이자율 에 의해 결정된다.
    19) 1990년 미국의 예산집행법은 감세나 의무지출 입법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세입

[^6]:    증가나 의무지출 감소 입법도 동시에 수반(PAYGO)되도록 의무화하였는 바, 이것 이 PAYGO 준칙이다. PAYGO 준칙은 예산집행법(BEA)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반 입법에 대해 대통령은 지출의 강제조정(sequestration) 절차를 통해 적자중립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한편, 의회도 의회규칙에 근거한 PAYGO 준칙을 별도로 운용하였 는데 위반시 의원의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가중된 정족수하에서만 의결하였다. PAYGO 준칙은 1990년 당시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 후 경기호황을 누리자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2년 한시법인 해당 조항의 만료로 법률상 PAYGO가 소멸되고 재정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영구법의 형식으로 2011년 재도입하였다. 상세는 김도승 외, 미국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참조.

[^7]:    제도를 1975년에 도입한 바 있다.

[^8]:    23) Rudolph G. Penner, Julianna Koch, "How Much Federal Spending Is Uncontrollable?", TAX NOTES, July 16, 2007; GAO, Mandatory Spending - Using Budget Triggers to Constrain Growth-, January 2006, 5면.
[^9]:    같이 적극적 의사표시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명시적 지출대상이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명시되고，지출의 구체적 대상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명시적 지출규모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명시되고，법령에서 지출대상이 열거되고，법령에서 예산규모 산정을 위한 단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국회입법조사처，‘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mathrm{II}_{\mathrm{J}}, 2010.11,18$ 면．

[^10]:    40) 11 개 금융성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가장학기금,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 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 금이다.
[^11]:    43) 미국 공화당은 2010년 의회 선거에서 내건 '미국에의 서약(Pledge to America)'에 서 ‘우리가 쓰는 1달러 중 41 센트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그 대부분을 빌 린 것이고, 3 년 내로 하루에 10 억 달러 이상을 이자로만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 고 있다.
    44) 김건오, "재정건전화와 예산개혁의 과제", 국회보, 2011.3, 1~2면.
[^12]:    57) BBEDCA section 256(d)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보장항목을 말한다.
    58) 2010 Pay As You Go Act Section6(a)(1).
[^13]:    66) 물론 재량지출은 직접 세출법안의 조정을 통해 지출통제가 가능하나 의무지출은 세출법안의 조정으로 그 규모를 통제할 수 없고 직접 수권법률의 입법방식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려에 따라 생겨난 제도이다.
[^14]:    88)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803면.
[^15]:    98) 헌재 2003.12.18, 2002헌바 1.
[^16]:    99) 헌재 1997. 5. 29. 94헌마33; 헌재 2004. 10. 28. 2002헌마 328
[^17]:    100) 김정환,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0,39 면 40 면.
    101) 이재승, 행복추구권의 기원과 본질, 민주법학 제 38 호, 2008,105 면 이하.
    102) 이호용,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한국학술정보, 2007, 147면.
[^18]:    106) Goldberg v. Kelly 397 U.S. 254(1970).
    107) Cleaveland Board of Education v. LaFleur 414 U.S. 632(1974).
    108) 김정환,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0, 164면.
[^19]:    112) 조영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춘추, 통권 제 14 호, 국 회예산정책처, 2009, 42면.
[^20]:    114)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21]:    115) 생활필수시설(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을 공동수용 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22]:    116)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I.사업계획(안), II. 사업 추진의 필요성, II.국고지원의 적합성, IV.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V.지 역균형발전 요인(R\&D 사업의 경우는 기술개발 필요성‘), VI.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과 대응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